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1. 사족의 향촌지배조직 정비
- 2.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 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 4. 사족지배체제하의 신분질서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1. 사족의 향촌지배조직 정비

1) 난후의 향촌실정

임진왜란은 승패에 관계없이 조선왕조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요약될 수 있다. 왜적은 주요 거점을 장악하여 북상하면서 주위의 지역을 분탕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창고를 약탈하며 관아와 각종 시설물을 불태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더욱이 전황이 교착되면서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거점을 중심으로 먼 지역에 이르기까지 노략질하여 그 피해는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오는 인명의 손실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명의 손실은 왜적의 침략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못지않게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난초부터 계속된 흉년으로 인한 기근과 선조 26년 (1593) 초부터 크게 번진 전염병에 의해 영남의 경우 문경 이하부터 밀양에이르기까지 수백 리가 텅비었다고 표현되기도 하였다.1)

여기에 明軍의 주둔과 이에 따른 군량미의 공급, 그리고 이들의 침탈은 이러한 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당시의 향촌사회를 극도로 피폐하게 하였다.²⁾ 이러한 사정에서 왜적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였던 지역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곳에서조차 난리를 당한 지역과 마찬가지 모습이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생존의 문제는 사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하층민

¹⁾ 柳成龍,《懲毖錄》, 辰巳錄.

²⁾ 趙 靖, 《壬亂日記》 권 3, 계사 7월 28일 · 8월 23일.

에게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하층민은 생존을 위하여 倭賊化하거나, 土賊이 되었다. 하층민은 난초부터 적의 嚮徒가 되거나 왜적화하여 지배층에 저항하고 있었다. 의병의 조직은 한편에서는 바로 이들에 대한 방어이기도 하였다. 토적은 왜적화한 백성들과는 달리 왜적이 물러가고 명군이 진주한 이후에 주로 그들의 생활거주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군의 침학과 이들에 대한 군량공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민중적 저항이기도 하였다.

명군의 침학과 그들에 대한 군량공급 문제는 심각하여 굶주려 죽는 자가속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병 역시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³⁾ 의병에 가담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생계를 개별적인 차원에서해결해야만 했다. 그러나 하층민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의병에 참여하였던 많은 하층민은 토적으로 재편성되기도 하였다. 곧, "군량미가 없어서 군사가 한 번 흩어지면 강자는 敵中에 투신하고, 약자는 구렁에서 죽거나 아니면 흩어져 토적이 된다"4) 거나, "토적은 의병활동을 하던 자가 기근을 이기지 못해서 된 것이다"5)라는 것은 그구체적인 예가 된다. 이러한 토적은 곳곳에서 봉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이 극심하였다.

조정에서는 토적의 괴수를 잡는 자에게는 堂上·守令이면 嘉善을, 士人이면 6品敍用을, 雜人私賤에게도 禁軍을 제수하는 剿捕事目을 반포하는 등60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토적은 날마다 끊이지 않아 감옥에 가득하여 백성들은 결국 왜적에 죽고, 질병에 죽고, 감옥에서 죽는 처참한 상황이었다. 柳成龍은 이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굶주림이 심하고 군량을 운반하는데 피곤하여 늙은 이는 쓰러져 죽고, 장정들은 도적이 되었으며, 더욱이 거듭되는 전염병으로 인 하여 거의 다 죽어 없어졌다. 심지어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³⁾ 鄭震英,〈壬亂前後 尚州地方 士族의 動向〉(《民族文化論叢》8, 嶺南大, 1987).

^{4) 《}宣祖實錄》 권 59, 선조 28년 정월 정유.

^{5) 《}宣祖實錄》 권 59, 선조 28년 정월 을해.

^{6) 《}宣祖實錄》 권 58, 선조 27년 12월 을사.

(柳成龍,《懲毖錄》1593년 10월 車駕還都).

이러한 임란 중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이 난 이후의 인구감소라는 현상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난 직후에 편찬된 《咸州誌》의 편찬자는 함안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 고을은 비록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져 있기는 하지만 인물이 풍성하였다. 우리 山翼 한 마을을 예로 들어 말하면 당시 호구에 등재된 자가 850여 명이나 되었는데 지금 한 사람도 돌아오는 자가 없다. 한 모퉁이가 이러니 전국을 알만하다"기라 하여 난 이후 인구이산 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난 이후의 인구가 전국적인 규모 에서는 난전의 6,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도 하였다.8)

이런 상황에서 전답 또한 제대로 경작될 리 없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난 10 여 년 뒤 조사된 전국의 田結數에서도 확인된다. 곧 임란전 전결수는 1,608,000 결이었던 것이 광해군 3년(1611)에는 541,000결에 불과하여 6, 70%나 감소하였 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가 가장 극심하여 난전의 43만 결에서 7만 결로 격감 하였고, 전란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던 전라도 또한 75%나 감소하였 다.9) 전라도의 경우는 전란의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募兵과 군량 의 독촉이 상대적으로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수백 명의 노비를 소 유하였던 사족의 경우에도 난후 피난에서 돌아왔을 때는 집터에는 쑥대만 무성하고 노복은 모두 죽어 겨우 몇 명만이 살아남아 있을 뿐이었다.10)

수백 명의 노비 중 몇 명만이 남게 된 것은 물론 전란으로 인한 노비의 사망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에서는 노비의 도망에서 오는 것이었다. 16 세기에 있어서도 노비들은 도망을 통해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임란 을 통해서 그들의 저항은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한 것이어서 재지사족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 있었다.

재지사족은 이제 노비를 不忠・不勤한 존재로 표현하거나, 또는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토지 경영을 주로 노비노동에 의존하고 있

^{7) 《}咸州誌》.

^{8) 《}仁祖實錄》 권 13, 인조 4년 윤6월 정미.

^{9) 《}增補文獻備考》권 148, 田賦考 8 (광해군 3년).

¹⁰⁾ 趙 靖, 《壬亂日記》 권 3, 계사 8월 22일.

던 재지사족에 있어서 노비의 사망·도망은 그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파악마져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임란 후에 작성된 사족가문의 分財記에 여실히 반영되고 있었다.

난후 막대한 인명의 상실과 전답의 황폐화는 사족 또는 사족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결국 국가적인 문제였으나, 촌락을 단위로한 공동체적인 삶을 오랫동안 영위하여 왔던 향촌사회에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삶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었다.

辰巳(1592~1593) 이후 인물이 소진하여 한 고을의 사람이 수 십 명도 채되지 않으며, 한 마을의 사람 또한 2, 3인에 불과하여 외롭고 쓸쓸하기 그지 없다. 族親 중에 재력이 있다 하여도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만약 疎遠함을 친밀하게 하고 마을을 합하여 한 洞으로 하여 서로 돕지 않는다면 외롭고 쓸쓸하여 살아서는 누구와 더불어 노래하며 죽어서는 어느 누가 곡하리오(徐思遠、《樂齋先生文集》권 7, 河東里社契約序).

이러한 사정에서 洞里간의 合洞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현이 통폐합되기도 하였다. 가령 진주의 경우에는 난전 112개 里坊이 난후에 53개 리방으로 통폐합되었으며,¹¹⁾ 단성현의 경우에는 산청에 합속되기도 하였다.

임란은 이렇듯 인구의 감소와 전답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향촌지배세력인 재지사족에게는 또다른 문제를 안겨주었다. 즉, 향촌사회의 피폐와 함께 그들의 향촌지배 근간이었던 留鄕所(鄕廳)와 鄕案이 임란의 와중에 소실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사족 역시 생명의 보존조차 어려웠던 상황은 그들의 향혼지배의 기반을 일시에 와해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임란의 극복은 도리어 재지사족의 영향력을 향촌사회에서 증대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임란으로 인한 피폐는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재지사족 또한 그 참화를 모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전국적인 범위에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중앙관료였다. 토지의 황폐화와 노비의 사망 또는 도망에서 오는 경제적인 몰락은 더

¹¹⁾ 李海濬、〈17世紀初 晉州地方 里坊再編과 士族〉(《奎章閣》6, 1982).

이상 그들을 정치주도세력으로 존재할 수 없게 하였다. 재지사족 역시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였지만, 난중에는 의병활동을 난후에는 신속한 복구작업을 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임란 의병의 활동은 거의 전국적인 것이었고, 의병을 주도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재지사족이었다. 의병은 재지사족이 그들의 난전 향촌지배조직과 상호간의 혈연적·지연적 연대를 바탕으로 官兵과 일반농민, 弓手 등 하층민과연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재지사족은 의병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향촌사회 하층민을 직접 지배함과 아울러 중앙권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재지사족의 이러한 영향력의 확대는 곧바로 관직의 제수라는 형태로 현실화하고 있었다.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인 선조 25년(1592) 10월에는 군공이 많아서 軍器侍正 30, 副正 50, 舍正·判官·主簿 각 80, 禮賓侍直長·奉事·參奉 각 100 등 일거에 620여 職宦이 가설되고 있었고,12) 난후의 宣武原從功臣錄의 9,000여 명에 달하는 숫자 중 상당수는 재지사족에 대한 논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작성되는 각 읍지의 인물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무튼 임란을 통해 지방 사족은 자기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것은 결국 난후의 향혼질서를 그들 중심으로 재확립할 수 있게 한 배경이 되었다.13)

임란을 경과한 향촌사회는 막대한 인명의 손실, 전답의 상실, 토적의 봉기, 노비의 도망 등에서 온 사회·경제적 혼란에 대한 전후 복구와 향촌질서의 재확립이 절실한 문제였고, 그리고 새로운 향촌질서의 확립은 향촌지배라는 차원에서 재지사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향사당·향안의 중수, 동계·동약의 실시 등 난전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조직의 정비와 서원의 건립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2) 《}宣祖實錄》 권 32, 선조 25년 11월 경신.

¹³⁾ 정진영,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역사와 현실》 3, 1990).

2) 향촌지배조직의 복구와 정비

(1) 경재소의 혁파와 향촌지배조직의 정비

난전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구는 향청 또는 향사당이라고 불리던 留鄕所였다. 유향소는 고려시대의 事審官제도가 여말선초에 경제소와 분화되어 발전되어 온 것으로 선진지역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구성되어 치폐를 거듭하고 있었다.14) 유향소는 위로는 표리관계를 이루던 경재소의견제와 보호를 받으면서, 자체적으로는 향리의 壇案에 대신하여 향안을 작성하였고, 향안의 입록과 운영 등 향촌지배의 전반적인 운영원리를 규정한 향규를 마련하여 향촌지배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향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유향소를 규제하는 것이다. 향규가 향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규제하는 주체는 바로 유향소이다. 고을의 풍속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못한가는 향규가 행해지느냐 행해지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고, 향규가 행해지느냐 행해지지 못하느냐는 유향소 임원이 현명한가 현명하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李民瘼,〈題鄉規後〉,《영남향약자료집성》, 87쪽).

고을에 향안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世族을 변별하기 위함이다. 세족을 변별하여 무엇에 쓸 것인가. 장차 그로 하여금 한 고을에 기강을 세우고 민속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鄭經世,《愚伏集》권 15. 尚州鄉射堂題名錄序).

이러한 인식은 유향소·향안·향규의 관계와 나아가 이것이 재지사족 향 촌지배의 핵심적인 조직과 규약임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향안을 작성하고 향규를 제정하여 유향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체는 일향 사족의 모임인 鄉會였다. 향회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郷中公論이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촌지배가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공론의 형성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여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조직과 규약은 사족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특히 향안은 지

¹⁴⁾ 이태진, 〈士林派 유향소 복립운동〉(상, 하)(《震檀學報》34・35, 1972・1973).

배집단으로서의 사족의 실체를 확인하게 해 준다. 따라서 향안의 존재는 재 지사족의 향촌지배를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안은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그 기본적인 성격은 재지사족의 공론에 따라 작성 된 사족의 명단이며, 부·모·처족에 신분적 하자가 없어야 입록될 수 있었 던 신분적 패쇄성을 가지고 있었다.15) 이러한 향안은 사족세력이 일찍부터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오다가 대체로 17세기 초에는 각 군현마 다 보편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향안이 작성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영남이 35개 지역. 전라도가 22개 지역. 충청도가 6개 지역, 강원도 4개 지역, 황해도ㆍ평안도ㆍ함경도가 각 3개 지역 등 76개 지 역이다.16) 그리고 인조 5년(1627)에 작성된 안동의 《鄕錄草案》에 기재되어 있 는 父‧妻鄕의 향안 참여 여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경북 대부분의 지역 에 향안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향안의 대부분은 17세기 에 작성된 것이고, 17세기에 작성된 향안의 대부분은 임란 이후 불타거나 훼 손된 난전 향안의 중수를 표방하고 있어서 17세기 향안을 중심으로 한 사족 의 향촌지배는 16세기의 유향소 체제를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란 후 향안의 중수와 작성은 곧 재지사족이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를 복구해 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안의 작성이 지배집단으로서의 사족의 결집과 이를 통해 유향소의 운영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향안의 중수를 통한 임란 후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질서의 복구는 각 지 역의 사정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지만, 대체로 영남과 호남 등지에서 임란 직후인 17세기 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임란 후 향안의 중수를 통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조직의 복구는 단순히 난전 지배조직의 복구라는 차원을 넘어 사실상의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를 확립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유향소를 보호 ㆍ

¹⁵⁾ 金仁杰、〈조선후기 郷案의 성격변화와 在地士族〉(《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¹⁶⁾ 金炫榮,《朝鮮後期 南原地方士族의 鄕村支配에 관한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 文, 1993).

전제하고 있던 경재소의 혁파에서 오는 것이다. 재지사족의 향혼지배는 우선은 왕조교체에 따른 신분의 재편과정에서, 그리고 향혼사회에서 유향소가 조직되면서부터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지사족의 향혼지배는 안으로는 사족 자신의 결속과 지주적 기반의 안정·강화를 꾀하는 한편 밖으로는 기존의 향혼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향리세력과 경재소의 보호·견제를 배제하여 하층민을 그들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17)

재지사족과 마찬가지로 여말선초 토착세력의 후예이며, 같은 土姓의 姓貫에서 분화되어 호장층을 세습해 온 在地吏族은 비록 군현지배자의 지위에서 지방관아의 행정사역인으로 전략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 행정실무를 매개로 수령과 사족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吏族案인 壇案과 집무소인 府・郡司를 중심으로 독자적이고도 엄격한 조직과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향리들은 전체적으로는 조선왕조의 신분체제가 확립되어 가면서, 향촌의 개별 단위에서는 사족안인 향안이 작성되고, 그리고 사족이 중앙의 경제소의 힘을 빌려 이들을 억압함으로써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점차 향촌사회에서 지배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사족의 세력이 형성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향리가 여전히 향촌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 경재소는 여말선초 군현의 사족이 在京官人과 留鄉品官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재경세력이 각기 경재소를 설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재경관인으로 하여금 제각기 연고지별로 경재소를 조직하여 각 지방의유향소를 지배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지방을 통제하려 하였다. 이로써 군현토성에서 상경종사한 재경관료는 관품에 따라 최고 8개 鄕에서 최하2개 향의 경재소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경재소와 유향소의 사정을 "주·부·군·현에는 각기 토성이 있는데, 그들 중 在京從仕하는 자를 경재소라 하고, 경재소가 다시 居鄕土姓 가운데 강명한 品官을 선정하여 유향소 유사를삼는다"18)고 하였다. 이렇듯 경재소는 각기 소관 군현의 유향소와 긴밀한 중적 유대를 가지고 유향소 임원의 임면권, 향리규찰, 향중인사의 천거와 보증, 항풍교화, 貢賦·진상의 독촉, 경저리 사역, 공물방납 및 소관 군현의 요구사

¹⁷⁾ 鄭震英,〈朝鮮前期 安東府 在地士族의 鄉村支配〉(《大丘史學》27, 1987).

^{18) 《}成宗實錄》 권 137, 성종 13년 정월 신유.

항의 건의 등 실로 광범한 활동을 하였다.19)

경재소는 관주도 향촌지배체제를 수립하려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나 유향 소를 통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있어서도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왕조의 집권체제가 일단락된 뒤, 그리고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던 16세기부터는 그 폐단이 많았다. 재지사족의 세력이 미약하던 초기에는 사족의 향촌지배에 힘이 될 수 있었지만, 16세기 이후 재지사족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중앙정계에 등장하여 훈척세력과 대립하면서부터는 도리 어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를 크게 제약하고 있었다. 훈척세력은 경재소를 장악 하고 수령권과 결탁하여 유향소를 견제하고 향촌사회에 그들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수탈적인 농민지배가 행해 지고 있었다. 경재소는 유향소와 함께 향리규찰과 향풍규정에 1차적인 목표 가 있었으나, 오히려 경재소가 경저리와 읍리를 침학하고 田民을 影占하거나 공물을 방납하는 등 민폐를 유발하는 사례가 문제되어 그것의 혁파를 주장 하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재지사족은 중앙정계의 진출과 더불어 사창법ㆍ 유향소·향약 등의 실시 건의와 아울러 이 시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향촌피폐를 훈척세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었다.20) 경재소의 혁 파 주장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여기에 임란으로 인해 향촌사회가 피폐하고 경중의 경재소가 오랜 전란으 로 인원과 시설이 모두 유산되고 분탕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일시 정지되 고 말았다. 그러다가 선조 36년(1603)에 일체 혁파되고,21) 광해군 3년(1611)과 4년에 그 복설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끝내 복설되지 못하였다.22) 이렇 듯 경재소의 혁파는 한편에서는 전란으로 인하여 없어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시기에 이르러 재지사족의 향촌지배가 일정하게 정착되었고, 또 원악향리와 같은 향리들의 횡포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¹⁹⁾ 李樹健、〈地方自治的인 諸機構와 郷村統制體制〉(《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 사, 1989).

²⁰⁾ 정진영, 〈16세기 향촌문제와 재지사족의 동향〉(《민족문화논총》 7, 1986).

^{21) 《}宣祖實錄》 권 158, 선조 36년 정월 갑신.

^{22) 《}光海君日記》 권 58, 광해군 4년 10월 경인.

경재소의 혁파는 재지사족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었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임란으로 소실되거나 탕폐된 향안의 중수를 통한 난전 향촌지배조직의 복구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초의 향안 중수는 시기적으로나 그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일향의 사족이유향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의 향안에 새로운 인원만을 추록함으로써 경재소의 혁파에도 불구하고 재지사족의 향촌지배가 보다 확고하게 정착될수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재소 혁파 후 재지사족이 유향소 운영을 기피함으로써 일정 시기 기존 구성원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향안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향안을 둘러싼 신구 향원간의 쟁단이 야기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말미암은 향론의 분열은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의 호남 남원에서 향안을 둘러싼 쟁단은 이같은 사정을 잘 보여준다.

난을 겪고난 후에 경재소가 폐지되므로 사대부가 향권을 잡는 것을 천하게 여겨 꺼리게 되고, 모든 논의가 가부를 정할 수 없게 된 까닭에, 무식하고 염치를 모르는 자들이 방자하게 행동하며 鄕籍을 개인이 발신하는 사사로운 쪽지로 알고 향임이 되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돈방석에 앉게 될 줄로 알아온갖 쟁단이 극에 달하였다(《龍城誌》권 3, 完議).

남원과 같은 상황은 호남의 여타 읍에서도 비슷하였다. 즉 17세기 전반 광주를 제외한 3대 읍인 전주·나주·영광에서도 향론이 분열되고 향적이 파치되는 등 일읍이 마치 전장터와 같았다고 한다. 이같은 사정에서 鄕先生 이 아닌 사대부가 향론을 주도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²³⁾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향론의 분열을 일단 사족이 중심이 되어 수습하고자 한 것이었다. 위의 남원의 사정은 순천·창평·장성등과 같이 광주의 약조를 모범으로 하여 향회를 운영하고 파치된 기존의 향안을 사족이 주도하여 복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인조 17년(1639)에 마련된 〈約束條目〉은 그것의 구체적인 노력의 일단이었다. 남원의 〈약속조목〉은 향중의 모든 권한 즉, 향안입록, 향임의 선출과 규찰 등을 사족인 主論之員(鄉老

^{23) 《}龍城誌》권 3, 完議 1639년.

・鄕長・鄕有司)에게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주론지원은 스스로 향임 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사족이 유향소를 그들의 지배하에 두 어 일향의 모든 일들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유향소의 직임인 향임층 과 사족 사이의 괴리현상이 심화되어 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儒鄕分岐로 인 식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유향의 의미는 사족과 성장하는 새로운 계층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족 내부의 前朝官을 중심으로 한 사족과 향임층을 주로 담 당하였던 토착세력으로 구분된다.24) 이같은 체제는 율곡의〈海州一鄉約束〉 에서의 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유향의 분기가 보이는 지역에서 실시되기에 적당한 것이었다. 이들 주론지원은 향안의 복구뿐만 아니라 향약도 그들 중 심으로 실시하고자 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향촌지배는 17세기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25)

경재소 혁파 후에도 사족이 유향소에 적극 참여한 경우에는 그들의 향촌 지배체제를 보다 용이하게 정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己丑年(1589) 향안이 병화로 더러워지고 혹은 파열낙장되어 후세에 전할 수 없게 되었다. 前鄕所 등이 비록 改書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기록된 것을 보니 前案에 따르지 않고 사사로운 뜻이 개재되어 本案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이 엄연히 쓰여져서 鄕議가 격발하였다. 그런 까닭에 전인이 쓴 안을 파기하고, 본안에 의거하여 改錄한다(《安東鄕錄》, 1604).

위의 내용은 임란 후 안동향안의 상태와 향중쟁단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다시 쓰여짐으로써 수습되고 있었다. 향안이 다시 쓰여진 것은 선조 37년 (1604)이었다. 여기서 '본안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나 남원의 '무식하고 염치를 모르는 자들'과 대비된다. 남원의 경우가 향임층을 주로 담당하였던 토착세력을 지칭하는 것 이라면, 안동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사정을 보여준다. 안동의 경우에는 좌

²⁴⁾ 김현영. 〈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사족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역 사와 현실》 2, 1989).

²⁵⁾ 金仁杰, 앞의 글.

수·별감 등 향임층과 前朝官 등의 사족이 구분되지 않았고, 따라서 전조관이라도 향임을 역임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²⁶⁾ 향안과 향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임란 후 안동향안이 다시 쓰여진 문제를 향규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동의 향규는〈舊規〉와〈新定十條〉가 있다. 전자는 선조 21년(1588)에 좌수가 경재소에, 후자는 경재소 혁파 뒤인 선조 38년에 향선생에게 여쭈어서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향안과 향규가 경재소 혁파에 뒤이어 비슷한 시기에다시 쓰여지고 재작성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것은 향안이 병화로 더러워지고 본안에 입록되지 않았던 자가 등재되어 있었고, 또〈구규〉의 미비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재소의 혁파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규가 향안의 입록과 운영 등 향촌지배의 전반적인 운영원리를 규정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향안의 개록과 향규의 재작성은 경재소를 통한 중앙권력의 간섭에서 재지사족의 독자적인 향혼지배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이해된다. 따라서 안동에서의 쟁단이란 경재소와 연결된 향원을 삭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27)

남원과 안동의 사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임란 후의 향혼질서를 누가 어떻게 확립해 가는가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이것은 재지사족층의 존재형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었다. 선초 향혼사회의 지배세력은 대체로 고려말에 첨설직·동정직·군공·과거 등을 통하여 土姓吏族에서 사족화한 계층으로, 이들 土姓士族은 또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타읍 출신의 사족과 통혼관계를 맺었다가 왕조교체기와 이후 수차의 정변에 本鄕 또는 妻鄕·外鄕을 따라 낙향하여 재지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재지사족이었다. 영남에서는 이러한 토성사족과 이주사족이 상호 구별되지 않았지만, 호남의 경우에는 여말 이래 재지세력의 토착적 기반이 미약하였던 관계로 대부분이 새롭게 이주해온 가문들을 중심으로 사족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28) 따라서 호남에서는 토착사족세력과 이주사족세력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보인다. 율곡의 〈해

²⁶⁾ 金龍德,〈安東座首考〉(《震檀學報》46·47, 1979).

²⁷⁾ 鄭震英, 앞의 글(1987).

²⁸⁾ 李海濬,〈朝鮮後期 靈巖地方 洞契의 成立背景과 性格〉(《全南史學》2, 1988).

주일향약속〉에서 보이는 儒鄉은 바로 이들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호남의 이같은 사정은 이들 지역이 여말선초 왜구의 창궐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였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는 유향소의 운영과 임란 후 향안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임란 후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조직은 그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지역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난전의 조직이 복구·정비되고 있었다. 이것은 한 편으로는 난전의 향촌지배를 계승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 재소의 혁과에 따른 조직과 규약의 재정비였던 것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이 시기에 이르러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조직이 비로소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제 향규의 내용을 통해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있어서 향리에 대한 통제는 엄격하였다. 그것은 이들이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통제 여하에 따라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의 성패가 달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향리에 대한 규제는 '元惡鄉吏'라는 포괄적인 것에서부터 공물징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작폐에 이르기까지 명시되고 있었다.

鄕所가 吏民의 풍속을 도맡아서 살핀다. 鄕吏・書員 등이 品官을 능욕하면 향소에 알려 죄를 다스린다. 향리 중에서 청렴하고 부지런한 자를 택해서 上戶長・吏房으로 임명한다(李珥,《栗谷全書》권 16, 海州一鄕約束).

治吏胥는 민간에 출입하면서 마구 거두어 들이는 자. 각 色吏와 결탁해서 폐단을 일으키는 자. 관을 속여서 政令을 어지럽게 하는자. 공물을 받을 때 함부로 더 많이 거두는 자. 향중에서 무례하여 풍속을 손상시키는 자. 冒占한 良民을 숨겨서 부리는 자. 권력에 아부하여 本役을 피하고자 하는 자. 양민의 여자나 관비를 첩으로 삼는 자. 書員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자(《永嘉誌》권 5, 新定十條).

이상은 사족이 군현의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향리의 임면권과 활동 전반을 장악·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향리에 대한 통제는 다름아 난 향리 자체에 대한 통제이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결국 재지사족의 민에 대한 지배와 수령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이기도 하였다.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부세운영이다. 이를 17세기 초반 안동의 〈신정십조〉와 현풍의 〈향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均徭役는 府의 戶口와 토지는 별도의 한 책으로 만들어 賦役 마련시에 향소에서 다과와 허실을 참고할 것. 모든 잡역 등은 八結法에 따르고 그것의 경중을 비교하여 각 면에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할 것. 豪悍함을 믿고 토지를 모점하여 세금(租賦)을 등한시하는 자와 토지를 숨기거나 누락하여 요역에 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청에 보고하여 죄를 다스릴 것(《永嘉誌》권 5. 新定十條).

모든 貢賦徭役을 分定할 때에는 향소가 온 고을에 알려 여럿이 의논하여 定奪하고, 힘들고 헐한 것을 분간하여 균일하게 할 것. 人吏民夫 등의 戶役은 옛 규약에 따르고, 모든 대소 民瘼은 향소가 수소문하여 온 고을의 회의에 붙여모두 없앨 것(《鄕案設立初定規謄草》1621년, 玄風).

이것은 유향소가 부세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세운영의 대원칙은 균등한 부담에 기초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민막까지도 혁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사족 자신에 대한 규정이다. 이것의 내용은 가족·향당 구성원간의 윤리규범과 사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솔선수범함으로써 농민을 교화하고 동시에 농민에 대한 침학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향규가 다름아닌 사족 자신들의 규약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족의 자기규제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농민에 대한 직접적 또는 공권력을 통한 침탈이나, 환곡을 갚지 않고, 부역에 임하지 않는 무단토호적인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족의 자기규제는 농민의 저항과 국가권력과의 이중적인 대립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서 오는 것이었다. 자기규제라는 점에서 재지 사족의 향혼지배는 역사적으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기규제란 일차적으로 사족의 신분적·경제적인 이해를 바탕한 위에서의 하층 민에 대한 양보였다.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는 원칙적으로 향촌사회에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개개 사족의 사적 인 이해에서가 아니라 일향 단위에서의 사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었다.

(2) 동계ㆍ동약의 중수와 상하합계

임란 후 일향 범위에서의 향사당·향안 등의 재건과는 별도로 사족의 거주 촌락을 단위로 한 동계·동약이 적극 중수되거나 실시되고 있었다. 임란전후에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계·동약에 관한 자료는 다음〈표 1〉과 같다.²⁹⁾

〈표 1〉 임란 전후 동계·동약의 실시

제 목	연 도	지역	출 전	비고
洞約	16~19세기	봉화	李弘準《訥齋集》	
溫溪洞規	1548	예안	고문서	
西湖契案	1565	영암	고문서	임란 후 및 1646년 중
永保亭洞契	16~18세기	영암	고문서	수族契(1550)를 1649년
				에동계로 중수
社倉契約束	1580	해주	李 珥《栗谷集》	
洞中鄉約契序	1590	합천	李 霙《雲團逸稿》上	
族契立議後識	1565	예안	琴瀾秀《惺齋集》2	
洞中約條小識	1599	예안	琴蘭秀《惺齋集》2	임란 후 중수
洞規後識	1598(?)	예안	金富倫《雪月堂集》3	임란 후 중수
洛社合契序	1599	상주	鄭經世《愚伏集》15	임란 후 합계
缶契洞憲序	1600	군위	孫起陽《鰲漢集》3	
正明里社立議	1601	평해	黄中允《東溟集》5	合洞, 임란 후 중수
高坪洞契更定	1601	예천	鄭 琢《藥圃集》3	임란 후 중수
約文序				
洞中約規	1601	나주	鄭 詳《金鞍洞誌》	
三隱洞約	1601	임실	吳天民《養靜集》1	上下人 참여
族契重修序	1601	인동	張顯光《旅軒集》	임란 전의 족계중수
白也洞案跋	1603	진주	金大鳴《白巖集》1	1552년의 洞憲 중수
龜齡洞案	1604	밀양	고문서(연세대)	
洞約序	1605	진주	河受一《松亭文集》4	임란 전 동약 중수
洞契更定約文	1610	영주	朴善長《水西集》3	임란 후 중수
元塘洞約文	1613(?)	진주	李 靜《茅村集》3	

²⁹⁾ 이 표는 박경하, 〈朝鮮時代 鄕村社會史 資料目錄〉(《역사민속학》1, 1991)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제 목	연 도	지역	출 전	비고
洞中修契序	1615(?)		張經世《沙村集》3	古契 重修
河東里社契約序	1615	달성	徐思遠《樂齋集》7	賤隷까지 포함
沙村洞契序	1619	성주	鄭 逑《寒岡集》10	
愚巷洞契約文	1616(?)		鄭四震《守庵集》5	流傳之古例 중수
琴山洞約序	1616	진주	成汝信《晉陽誌》上	
洛社契條約序	1618(?)	상주	宋 亮《愚谷集》1	
洞約序	1618	상주	金 蕙《松彎逸稿》1	
洞中立約序	1619	예안	金 涌《雲川集》3	
洞中立議	1625	영해	고문서	
內外子孫及洞	1628	달성	金忠善《慕夏堂集》3	
里人條約				
龜齡洞案序	1628(?)	밀양	金守訒《九峰集》1	임란 후 중수
洞案跋	1629	거창	林眞怤《林谷集》5	1599년에 동안 완성
洞中約文	1635	나주	《金鞍洞誌》	
鳴山洞案跋	1636		鄭好仁《暘契集》2	
洞約序	1637		鄭 栻《愚川集》7	
洞契後序	1638	나주	羅海鳳《南磵集》1	
洞中立議序	1638	선산	郭 鉉《三安堂集》1	
上枝鄉約序	1638	칠곡	李道長《洛村集》	1602년에 修契한것을중수
洞內立議	1641	목천	黃宗海《朽淺集》8	

- 비고 1) 연도는 동계·동약의 실시 또는 그 序·跋文이 작성된 연도이다.
 - 2) 연도(?)는 실시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자료가 수록된 문집의 저자 몰년을 기록한 것이다.

위의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임란 후의 동계·동약은 대부분 난 이전의 것을 중수라는 형태로 복구한 것이다. 따라서 임란 후의 동계·동약 은 난 이전 것의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임란 전 즉 16세기 동계·동약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族契로 표현되듯이 촌락내 양반들의 족적인 기반 위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촌락 하층민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의 동계가 족적인 기반 위에서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후기의 동성동본의 동성과는 다른 다양한 성씨가 참여하고 있었다. 각 족계·동계의 다양한 성씨는 특정 양반가문과 이들의 여서·외손 등이었다. 족계·동계의 지역적인 범위는 몇 개의 자연촌락을 하나의 동으로 결합한 사족중심의 인위적인 동 또는 이들의 생활영역권을 단위로 하여 실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족계·동계는 각 지역의 인적 구성과 이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

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30)

동계의 기능은 촌락내 또는 사족 상호간 吉凶에의 상부상조가 주된 것이었다. 동계에서의 부조 내용을 경북 예안의〈溫溪洞契〉의 예를 통해서 보면다음의〈표 2〉와 같다.

〈표 2〉 〈온계동계〉의 길흉사 부조 내용

연 도	구 분	부 조 내 용				
	길 사	쌀 5되, 꿩·닭 중 1마리씩 수합				
1554	흉 사	쌀·콩 각 5되, 종이 1권 수합, 장정 각 2명 2일 부역,				
	가마니 3장, 새끼[藁素] 40발, 이엉 20발씩 수합					
1615 (更定)	길 사	쌀 10말 지급(不收合), 꿩ㆍ닭 중 1마리 수합				
	흉 사	쌀 10말, 콩 5말, 종이값 10말, 새끼 40발, 초석 5장, 포 3필				
		가마니 2장, 새끼 20발, 이엉 10발				
		役奴 : 각 장노 2명 1일 부역				
		회굽기(燔灰): 洞員 각기 사람과 소를 내어 운반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상부상조 가운데서도 흉사, 즉 喪事에 대한 부조가 가장 중요시되었고, 부조의 내용은 곡물과 노동력의 제공이었다. 부조를 위한 곡물은 洞員(契員)으로부터 유사시에 수합하였으나 점차 동중의 公穀에서 지급되고 있었다. 동중의 공곡은 일정한 곡물을 수합하여 이를 取 息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취식으로 마련된 공곡은 18, 19세기와 같이 公稅의 대납이나 洞內補役을 충당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동계원의 길 흉사에 대한 부조에 국한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동계에서의 상호부조는 동계의 구성원이 대체로 사족에 국한되었듯이 사족 상호간의 부조였고, 하층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하민 간에 차등이 있었다. 사족은 이러한 상호부조를 통하여 촌락사회에서 그들 상호간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계의 또다른 기능은 이러한 사족층의 결속력을 바탕한 하층민의 통제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동약의 규약 속에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었다. 가령 앞의 〈온계동계〉의 '洞令'은 동민의

³⁰⁾ 金仁杰, 〈조선후기 鄕村社會統制策의 위기-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震檀學報》58, 1984).

대부분을 차지하는 家門奴婢를 통제하기 위한 것³¹⁾으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洞 令〉

- 1. 本主와 他主에게 무례불손한 자는 笞 50에 倍까지 더한다.
- 1.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도 위와 같다.
- 1.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 자는 태 50에 3을 더한다.
- 1. 간음한 자, 도적질한 자는 위와 같다.
- 1. 구타하여 서로 상처를 입힌 자는 태 50에 2를 더한다.
- 1. 친척과 이웃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는 위와 같다.
- 1. 墓山에 방화한 자와 개간한 자는 위와 같다.
- 1. 먼 곳에 거주하는 자를 끌어들인 자는 위와 같다.
- 1. 경작지를 빼앗은 자, 천방을 굽게 한 자, 곡식을 베어서 취한 자는 위와 같다.
- 1. 묘산에 벌목한 자, 근거가 불명확한 자를 머무르게 한 자는 태 50에 1을 더한다.
- 1. 무리를 지어 술마시고 취해서 난동을 부린 자, 천방에 벌목한 자, 토지에 모래를 흘려보낸 자는 태 50에 처한다.
- 1. 牛馬를 방목한 자는 태 30에 처한다.

위의 내용은 가족간 또는 촌락 내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과 함께 농촌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노비의 주인에 대한 무례불손을 가장 엄하게 다스린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기 上典뿐만 아니라 다른 주인을 포함한 것으로 사족과 노비의 상하신분적 지배예속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적인 상하관계를 유교적 윤리규범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등치시킴으로써 노비의 奴主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노비는 노주와 신분적으로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地主・佃戶관계를 가지는 것이었다.

당시의 재지사족은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노비는 조상전래의 노비도 많았지만, 良賤交婚을 통하거나 몰락농민을 전호로 편입함으로써형성된 것이었다. 양천교혼은 재지사족이 소유노비를 양민층과 결혼시키는

^{31) 《}溫溪洞契》, 洞令, 1560년(정진영 외, 《영남향약자료집성》).

것으로, 사족층이 노비 증식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또한 당시의 농민은 각종 부세와 공물 등 봉건수탈로 말미암아 몰락함으로 써 결국 "부자는 날로 兼倂이 늘고 貧者는 立錐의 땅도 없게"32)되어 지주가 의 전호로 편입되고 있었다. 양민의 전호로의 편성은 노비신분을 매개로 하 여 성립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노비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한편에서는 상하 신분질서를 이완시키고 있었다.33) 따라서 재지사족은 이들 전호노비에 대한 신분적 · 경제적 지배예속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당시 사족거 주 마을은 대부분 노비호로 구성되었고, 사족은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가사노 동의 대부분을 노비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사족은 노비와 함께 그 리고 이들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셈이다. 따라서 노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은 더욱 절실하였을 것이다. 동계·동약은 바로 이같은 절실함을 반영하고 있다.

동계・동약은 상하 신분질서의 확립을 위해 情으로는 가히 용서할 수 있 는 것이라도 개별적인 통제가 아닌 동계ㆍ동약의 공론으로 처리하고 있었 다.34) 또한 노비가 통제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촌락내 여타의 농 민들이 이같은 통제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재지사족층은 일방적으로 그들의 계급적인 이해만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양반지주층의 경제적, 경제외적 착취에서 하층민의 소농경제 는 극히 불안정하였고, 여기에 따른 저항 또한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재지사족은 그들 자신의 무단행위를 스스로 금 지함으로써 하층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하층민의 소농경제는 양반층의 봉 건적 수탈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로부터도 위협당하고 있었다. 따라 서 상하인을 막론하고 질병이나 水火 등의 재앙을 당했을 때 인력과 물자 를 동원하여 부조하거나, 경작과 제초를 도움으로써 失農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35)

^{32) 《}成宗實錄》 권 130, 성종 12년 6월 임자.

³³⁾ 李景植、〈16世紀 地主層의 動向〉(《歷史教育》19, 1974).

^{34) 《}溫溪洞契》, 洞令(1560년). 《河回洞契》, 契約.

^{35)《}河回洞契》, 患難相救.

재지사족의 동계·동약의 실시는 기본적으로 상호부조를 통하여 그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하층민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하층민의 통제는 향촌사회에서 양반 중심의 경제적·신분적인 질서의 일방적인 강요만이 아닌 하층민의 안정 즉, 소농경제의 보호라는 양반층의 최소한의 양보가 모색되고 있었다.36)

이러한 사족의 동계·동약과는 그 기원과 계통을 달리하고 있던 하층민의 생활공동체 조직이 있었다. 이런 조직은 주로 香徒와 契로 표현되고 있었다. 향도와 계는 별개의 것이 아닌 동일의 것으로도 이해되거나 향도계라는 결 합된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향도는 오랜 기원을 가지는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주로 군현을 단위로 한 佛敎信仰結社體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향도는 여말선초에 이르러 한편에서는 지배층과 지배이념의 교체, 지방제도의 정비 등에 따라 기존의 존립기반이 위협당하면서 크게 변질되거나 억제되었을 것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불의 교체라는 과도기로 지배이념의 강요가 아직 불철저하였고. 농업경제의 발달에 따른 촌락공동체의 성장 등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여말선 초의 향도는 그 규모가 군현 단위가 아닌 촌락 단위로 축소되면서 관권이나 이념 또는 신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촌락사회의 민중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이 시기 향도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불교신앙결사체로서 뿐만 아니라 자연촌 단위 에서 거행되던 소위 淫祀와 祀神의 주체로서 또는 상호부조적인 洞隣契로서, 그리고 일정한 정착처가 없이 公役과 雜務에 동원되고 사역되는 有閑輩들의 조직 등으로 나타난다.37) 그러면서도 변화의 주된 양상은 불교적인 이념의 퇴색과 상호부조적인 촌락공동체 조직으로의 발전이었다. 이에 따라 향도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여말선초에는 향리ㆍ농민ㆍ부녀자 등 다 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향도의 다양한 성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향도가 촌락공동체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향촌사회에서도 신분

金忠善,《慕夏堂集》〈內外子孫及同里人約條〉.

³⁶⁾ 鄭震英, 〈16世紀 安東地方의 洞契〉(《嶠南史學》1, 1985).

³⁷⁾ 李海濬, 〈朝鮮時代 香徒와 村契類 村落組織〉(《역사민속학》1, 1991).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족층은 이탈하고 촌락내의 자영농민층이 주된 구성 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향도계는 당시의 빈발하던 자연재해와 질병에 대한 농민의 대응 조직이었으며, 마을 수호신에 대한 신앙으로 결집되고 喪 葬의 일을 중요 소관사로 하며, 그 자체가 공동 노동조직의 단위가 되거나 그 태두리 속에 몇 개가 조직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38)

농민의 공동체 조직인 향도계는 "안으로는 都下로부터 밖으로는 鄕曲에 이르기까지 동린계나 香徒會가 있다"39)거나, 또는 "中外의 방방곡곡에 모두 계를 만들어 서로 糾儉"40)한다는 것처럼 사족의 동계와 병존하고 있었다.

동계와 향도계와의 병존은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정착되어 가는 과 정과 자영농민층의 광범위한 몰락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 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는 다름아닌 농민에 대한 신분과 경제적인 지배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양반과 상천민으로서의 상하신분질서의 확립과 지주제의 안정적인 유지였다. 이것은 사족이 한편에서는 병존하고 있던 농민조직의 억 제를 통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농민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소농경영의 안정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농민의 조직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농민조직을 통해서 일정하게 확보 하고 있던 재생산 기반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었다. 지주제의 안정은 소농경 영의 안정 위에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16세기 이후 사족 중심이 향촌지배질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족의 족계는 점차 농민조직인 향도계를 해체 또는 흡수하여 나갔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촌락사회에는 여전히 사족의 족계류와 하층민의 향도계가 병존하 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족 자신의 결속만으로도 하층민의 지배가 가능하였음 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란을 거친 이후에 '舊規' 또는 '流傳之古例'의 중수를 통해서 실 시되는 동계 · 동약은 난 이전의 것을 단순히 복구하는 차원은 아니었다. 여 기에는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고 있었다. 변화의 내용은 첫째, 족의 혈연적인

³⁸⁾ 李泰鎭、〈17・18세기 香徒組織의 分化와 두레 발생〉(《震檀學報》67, 1989).

^{39) 《}宣祖實錄》 권 7, 선조 6년 8월 갑자.

⁴⁰⁾ 李睟光,《芝峰類說》 권 2, 風俗.

범위에서 동이라는 지연적인 범위로의 전환이고, 둘째는 사족의 족계와 하층 민의 향도계가 상하합계의 형태로 결합한 것이었다.41)

임란 후 상하합계로서의 동계·동약의 보편화는 우선은 난의 와중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상실로 인한 향촌사회의 피폐에서 난 이전과 같이 사족만의 상호부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와 더불어 전후 복구를 위해서도 하층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였기 때문이었다. 난 이후 동약을실시하기 위해 몇 개의 촌락을 合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사정을잘 보여준다.

琴山과 代如村을 합한 것은 병화 후에 人烟이 肅瑟하여 10집에 9는 빈 까닭에 두 마을을 합하여 하나로 하였다. 月牙 한 모퉁이는 경계가 서로 연해 있어서 또 하나로 합하여 모두 금산이라 하였다(《晉陽誌》권 상, 琴山洞約序, 1616).

그러나 상하합계로의 전환은 한편에서는 하층민의 동향 때문이기도 하였다. 난 이전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던 재지사족조차 그들의 소유노비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하층민의 저항은 임란을 겪으면서 토적 등의 활동으로 더욱 적극화되고 있었고, 이러한 토적을 방어하기 위한 義軍이 조직될 정도였다. 이러한 하층민의 동향을 염두에 둘 때상하합계로의 전환은 전란의 피해에서 오는 단순한 문제만은 아님을 알 수있다. 임란 후에 하층민을 포함하는 동계를 실시하였던 다음의 경우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퇴계의) 鄉立約條와 洞中族契가 모두 좋은 법이나 변란 이후 인심이 날로 사나워져서 刑杖笞罰로는 勸懲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내가 夫浦洞에서 별도로 약조를 세워 인정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下人賤隷가 명분은 비록 다르나 천명을 함께 받았으니 어찌 비천한 무리라 하여 권유하여 至善의 경지로함께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琴蘭秀,《惺齋先生文集》,洞中約條立議小職).

⁴¹⁾ 鄭震英. 앞의 글(1985).

朴京夏,〈壬亂直後의 鄕約에 대한 硏究-高坪洞洞契를 중심으로-〉(《中央史論》 5. 1987).

병화의 혹심함 속에서 또는 난후 인심의 변화에서 이제 사족들만의 족계 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었고, 또한 농민을 촌락의 구성원으로 적극적 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사족은 몇 개의 마을을 합하여 하나의 동으로 만들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상계와 하계를 하나로 합하였던 것이다.42) 이러한 경향은 임란의 피해가 혹심하였던 곳에서 보편적으로 행해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족의 족계와 하층민의 향도계는 이제 상하합계의 형태로 발전하 게 되었는데, 이것은 혈연적인 것이 아니라 동리가 실시의 주체가 됨으로써 족계가 아닌 동약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약은 점차 성 리학의 명분으로 수식되거나, 군현 단위의 향규와 결합하여 향약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동계ㆍ동약을 향약으로 인식하거나, 약조를 주자향약의 四綱 目 체제에 맞추어 작성하였던 것이 전자의 예라면, 17세기 초반 예안에서 작 성된〈金圻鄕約〉은 후자의 좋은 예가 된다. 金圻는 향약 조문의 제정을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퇴계 향약의) 法令이 아름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근래에 행하지 않음이 애 석하지 않는가. 다만 古今이 같지 않고 상세하고 소략함이 다르니 비열함을 생 각지 않고 망령되어 덧붙이고 빼고 하였는데, 四約은 대략 呂氏鄕約을 모방하 였고, 罰條는 퇴계선생의 향약을 오로지 사용하였다. … 기타 길흉에 부조하고 환난에 서로 구함과 춘추의 모임은 우리 나라 인민의 풍속에 통행되던 것이니 常人을 경계하고 상하인이 함께 약속하여 실로 風敎를 먼저하는 바인데, 아울 러 加參定하는 본뜻은 인심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두터이 하고자 함이다(金 圻,《北厓集》, 鄉約).

즉, 인심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두터이 하고자 향약조목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서 비로소 17세기 이후 일반적인 추세이던 주자의 4강목을 기초로 하여 **퇴계의〈禮安郷立約條〉過罰條와 고유 동계・동약의 吉凶弔慶・患難相救・** 春秋講信이 결합된 향약을 보게 된다. 國俗의 동계와 주자향약과의 결합의 노력은 임란 이후에 비로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선조대의 좌의정 朴淳이

⁴²⁾ 徐思遠、《樂齋集》 권7, 河東里社契約序.

당시 널리 행해지고 있던 洞隣契와 香徒會를 기초 조직으로 활용하여 향약을 실시하고자 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³⁾

상하계의 합계나 이를 바탕으로 한 향약의 출현은 임란 이후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이것은 임란 후 변화된 인심 속에서 사족의 결속만으로는 하층 민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하층민을 향촌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계·동약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향약은 군현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동 단위의 동약으로도 그대로 이용되었다. 이로써 17세기 이후의 동약은 그 내용에 있어서 향약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임란 후 사족에 의해서 난 이전의 동계·동약이 중수되고 정비되어 갔다는 것은 다름아닌 임란 후에도 여전히 사족의 향촌지배가 복구되어 관철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鄭震英〉

2.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1)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

선조대 이후 士林勢力의 중앙정치무대에서의 우세확립은 향촌사회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훈척세력과 연결되어 사림활동을 방해하고 갈등을 일으키던 品官層(世族)이 우세하던 지역에서 사림세가 보다 강화되었 기 때문이다.

향촌에서 품관층이나 사림과의 대립은 훈척계의 장악하에 복설된 유향소에 대항해 사림세력이 세운 司馬所의 혁파를 요구한 연산군 4년(1498)의 柳子光의 상소1)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만, 특히 서원문제와 관련해서는 명종 11년(1556)에 일어났던 소수서원에서의 퇴계 이황 문인들과 有司 金仲文을

^{43) 《}宣祖實錄》 권 7, 선조 6년 8월 갑자.

^{1) 《}燕山君日記》 권 31, 연산군 4년 8월 계유.

앞세운 順興安氏 一門과의 갈등과 空院事,2) 그리고 역시 명종 13~14년경의 星州 迎鳳書院 건립을 둘러싼 이황 문인과 星州李氏 집안과의 분쟁3)에서 그 구체적인 實例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품관층과 사림과의 대립은 위의 소수서원 공원사와 영봉서원 문제가 결국 사림측의 주장대로 결말이 난 데서보듯이 이미 선조 이전부터 사림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선조 이후 명실상부한 사람출신 관료인 사류의 집권이 실현됨으로써 이제 확실해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유향소와 경재소의 연결 조직을 통해 훈척세력을 등에 업고 사람의 향촌주도를 방해해오던 품관층 내지 세족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 안동지역 같은 곳은 세족과 신흥 사람계가 처음부터 상호 인척관계를 맺고 있어 큰 분쟁 없이 사람측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세족들은 사람에 용해·흡수되었거나 사람으로 전환됨에 의해 종전의 지위를 유지할 수있었으나,4) 같은 경상도라도 진주지역의 경우는 판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17세기 초에 편찬된《晋陽誌》에는 선조대에 들어와 사람계 인사들에의해 세족의 근거지이던 유향소가 크게 약화되고 그 소속의 전지 100여 결이 屬公되었으며, 세족계 인물들이 사람계 관료에 의해 토호로서 박해를 받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5) 그리고 진주지역 세족의 하나이던 晋陽河氏

²⁾ 順興安氏一族은 고려 말에 安珦을 배출한 名門으로서 안항의 在京從仕로 그 직계 후손은 開城과 서울에 거주하였지만, 순흥에 世居하던 安氏들은 이들과 계속적인 연결을 맺고 그들을 배경으로 순흥 일대에 世族으로서 위세를 누리고 있었다.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창건시 그들이 여기에 깊이 관여했음은 물론이고 당시 경상도 관찰사이던 安玹이 서원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나 서울로부터 안향의 영정을 가져와 奉安케 한 것 등은 在京 관료세력인 安珦 후손들과 순흥에 세거하던 안씨 일문의 밀접한 관계를 잘 말해준다(鄭萬祚,〈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역할〉,《韓國史學》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92~93쪽).

³⁾ 처음 영봉서원 건립 때는 목사 盧景麟과 星州李氏 一門이 힘을 합쳐 성주 이 씨의 顯祖인 李兆年과 李仁復을 제향하려 했으나 뒤에 金宏弼의 入享이 논의되면서 퇴계 문인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끝내 程子를 主享으로, 김굉필만 配享하며 명칭도 川谷書院으로 고치는 것으로 낙착되자 성주 이씨 집안은 따로 安峰影堂을 세워 이조년·이인복을 제향하였다(鄭萬祚, 위의 글, 94쪽).

⁴⁾ 李樹健, 〈17~18세기 安東地方 儒林의 政治社會的 機能〉(《嶺南學派의 形成과展開》, 一潮閣, 1995), 558~565等.

⁵⁾ 成汝信,《晋陽誌》권 4, 叢談. 이 시기 진주지역 사족간의 이러한 동향에 대해

一門은 재빨리 사림계의 유현이던 曺植의 문하에 인연을 맺음에 의해 사림 세력으로 전환하여 그 사회적 지위와 기반을 상실하지 않고 있었음도 아울 러 서술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선조대 이후에 향촌에서도 사림계의 우 위가 점차 확립되어 가는 양상의 일단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족의 향촌지배에 있어 큰 전기를 마런하였던 것은 임진왜란이었다. 임 란은 조선왕조의 지배질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것은 향촌에서의 사족지배구조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郡縣의 하부조직인 面里制의 재편으로 나타난다. 경상도 진주지방의 里坊재편의 예로 보건대 전란으로 인한 人的·物的자원의 감소와 경작지의 황폐로 종전의 면리는 일부가 복구·존속되는 외에 대부분통·폐합되어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것은 대개 면리 숫자의 대폭적인 축소와 里예하의 평균 屬坊敷의 증가로 특징지워지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各里가 존속·폐합·복구되는 기준으로서 종전과 같은 戶口·田地의 많고 적음보다도 해당되는 里에 사족이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크게 상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사족세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경제력이 양호한 平民集居지역을 흡수·편입하여 그들의 관할로 삼는다던가,한때 다른 리에 폐합되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독립적인 리로복구되는 경우도 대부분이 사족의 거주지였으며, 재편된 후 각 里坊의 경제적 여건 역시 사족거주의 이방이 평민거주 이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상황을 보인다는 분석결과로 확인된다.6) 이는 전란 후의 이방편성이 사족의주도하에, 그들에 유리하도록 수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당연히 지방관인 진주목사의 반응이 문제가 되겠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수령권에 대한 침해로 비칠 수도 있는 이런 미묘한 事案에 대해 목사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당시의 쇠약해진 행정력으로서는 어차피 전란피해의 수습에 큰 힘을 미치기는 어려울 터이므로 사족이 주동이 된 향촌 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는 하였겠지만, 한편으

서는 李海濬, 〈17世紀初 晋州地方의 里坊編成과 土族〉(《奎章閣》5, 1982)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⁶⁾ 李海濬, 위의 글, 100~103쪽.

로는 전란 전의 향촌지배력을 바탕으로 난중에 의병활동을 벌임으로써 자신 들의 세력기반을 어느 정도 보호함은 물론, 하층민의 동요를 제어하여 민심 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로부터 在地세력으로서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당시 사족들의 일반적 성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주목사로서 는 사족을 협조집단으로 인정하여 회유하지 않을 수 없기도 했을 것이다.

향촌에서의 사족 주도력은 비단 里坊편성을 그들 위주로 관철시킨데서 그 치지는 않았다. 사족 거주지역 위주의 이방편성은 곧 그렇게 편성된 이방 단 위의 향촌사회가 사족의 주도하에 운영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 므로 진주지방의 경우 이방 재편성이 이루어지면서 뒤이어 鄕射堂이 중건되 고 鄕校가 수리되는 외에도 德川書院 사액, 大覺書院 창건, 上寺里約 중수, 琴山洞約 증보, 南・北面書齋 중창 등의 사족 사이의 결속과 그들에 의한 향 촌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향촌조직이 속속 재건되었다.

임진왜란 후 진주지방에서 보이는 이러한 사족세력의 성장과 향촌지배력 의 행사는 安東과 尙州. 그리고 南原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 으로 보아,8) 난후의 향촌질서가 난전과 마찬가지로 사족 위주로 일단 복구 되고 있으며, 단순한 복구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강화된 사족권의 성장을 수 반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전란이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은 선조 36년 (1603)에 단행된 京在所의 혁파도 이런 상황과 관련지워 이해되어야 할 것이 다. 즉 경재소의 혁파를 단순한 하나의 제도의 소멸로서보다는, 그 동안 사 림세력이 계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수령 내지 이와 밀착된 官人주도형의 향 촌통제나 경재소를 통한 훈척세력의 향촌관여의 배격과, 사족 위주의 향촌질 서 수립운동의 구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 사족은 완전한 향촌지배세력으로서 지위를 확보하여 종전부터 그들 이 마련해 시행해 왔던, 留鄕所・鄕案・鄕規・鄕約・洞契・洞約・族契・鄕會

⁷⁾ 鄭震英, 〈壬亂전후 尚州지방 사족의 동향〉(《民族文化論叢》8, 嶺南大, 1988).

⁸⁾ 鄭震英, 위의 글.

^{——,〈}朝鮮前期 安東府 在地士族의 鄕村支配〉(《大丘史學》27, 1985).

金炫榮,《朝鮮後期 南原地方 士族의 郷村支配에 관한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 文, 1993).

金仁杰, 〈朝鮮後期 鄕權의 추이와 지배층 동향〉(《韓國文化》2, 서울大, 1981).

·鄉校·書院 등의 각종 향촌조직을 통해 향촌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각종의 향촌조직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상세히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향회의 존재가 사족의 향촌운영에서 주체였음만 지적하고자 한다. 재지사족의 공동 관심사가여기에서 논의되어 이른바 鄕中公論이 형성되었고 鄕中大小事의 결정 역시여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회는 향촌조직의 상부구조로서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논의될 事案과 개최되는 장소에 따라 다양하였다. 예컨대 賦稅 문제와 관련된 향중대소사는 대개 유향소에서, 그리고 문묘종사나服制論議와 같은 斯文과 관련된 문제는 향교나 서원에서, 그리고 서원의 신설이나 제향인물의 추가 선정 문제 또한 서원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향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중공론의 주체는 동일하였으며, 각각기능을 달리하며 존재하였던 것이다.의 公論의 형성은 곧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여부를 가능하는 근거가 되며 17세기 후반부터 현저해지는 이른바 鄕戰이란 바로 이 鄕論의 분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족지배하의 향촌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관권 특히 수령권과의 관계였다. 사족간의 결속으로 인해 향촌에서 사족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아무리 강화되었다고 하여도 임금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권에 대한 도전이나 침해는 용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은 관권과의 일정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율곡의〈海州一鄕約束〉에 鄕員(鄕案入籍者인 사족)이 억울하게 죄를입었을 때 사족들이 함께 수령에게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할 수 있는 집단적인 행동권은 규정되어 있으나,100 일반적으로 수령의 통치에 대한시비는 처벌조항을 두어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바로 이것이 "분수를 지켜 몸

⁹⁾ 정진영,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¹⁰⁾ 정진영은 이를 수령의 부당한 조처에 대한 한정적인 저항권의 명시로 보고 있으나(정진영, 위의 책, 245쪽), 原文이 "鄕員以非罪 將受刑戮者 僉議立庭 呈單子救解之 如有民冤關重者 亦僉議立庭"으로 되어 있어 '저항권'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하의 서술은 이 논문에 주로 의거하였음을 밝힌다.

을 보존하는"(守分保身) 사족의 도리라고 규정되고 있었다. 이것은 사족이 관 권 또는 수령권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나아가 상호 이해를 일치시킴으로 써 향촌지배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제였다.

이와 아울러 재지사족들은 향리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향리층의 통제 여하에 따라 사족의 향촌지배의 성패가 달려있었기 때문이었다. 李珥가 작성한 〈해주일향약속〉에는 향리에 관한 규제가'元惡鄕吏'라는 포괄적인 것에서부터 공물징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작폐에이르기까지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上戶房・吏房 등의 차정과 같은 향리의천거나 作弊鄕吏에 대한 처벌까지 鄕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향리에 대한사족의 장악력을 보장하고 있다. 사족에 의한 향리장악과 이러한 통제는 그들이 농민과 수령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사족의농민에 대한 지배와 수령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를 의도한 것이었다.

양민과 노비로 구성된 농민층은 재지사족의 직접적인 교화와 지배의 대상이었다. 사족의 향촌지배는 교화를 통한 간접 지배와 통제에 의한 직접 지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족의 일차적인 관심은 소유노비의 통제였는데, 이는 主와 奴의 개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족 또는 촌락구성원간의 '공동체적'인 관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재지사족은 촌락과그 확대로서의 一鄉의 범위에서 농민을 공동체적인 규제의 틀 속에 묶어두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재지사족이 理想으로 생각하였던 '공동체적'인 일향 지배를 담보하고, 보완해준 실질적인 내용은 교화와 부세운영이었다. 교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향당 구성원 상호간에 있어서의 윤리규범과 길흉부조의 강조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행위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자타에 관계없이 상전(本主·地主)에 대해 무례 불손한 노비는 유교적 윤리규범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모-자식'의 관계로 병치시켜 엄하게 다스리고 있었다.

재지사족의, 교화라는 명분론적인 지배를 보완하면서 농민을 지배 대상으로 묶어 둘 수 있었던 것은, 부세운영에 있어서의 일정한 참여였다. 즉 부세운영은 교화의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다. 이시기 농민 몰락의 원인을 중앙권

력의 과도한 부세수탈에서 찾고 있던 사족은 부세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소농 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세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은 유향소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부세운영의 원칙은 균등한 부담에 기초하였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농민의 民瘼까지도 혁파하는 모습을 띠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족의 향촌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교화와 부세운영은 별개로서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호 통일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한편 사족들에 의한 부세운영은 단순히 농민의 부담을 균등히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를 통해 사족 자신의 부세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었다. 국가의 모든 부세에서 사족이 원칙적으로 면제되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족은 이렇듯 부세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점차 양반층으로서의 신분적 특권을 관철시켜갔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대로 난중의 의병활동을 기반으로 전란 후의 향촌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강화된 사족권은 관권과의 일정한 협력하에 그들 위주의 지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유향소·향약·향회 등의 각종 향촌조직을 통하여그들 중심으로 향촌사회를 운영해 갈 수 있었다. 이 시기 향촌사회의 이런 실상은 인조 2년(1624) 사헌부에서 올린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영남의 습속에 마을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임의로 毀家黜鄕 하였습니다. 이 습속은 曹植이 악을 지나치게 미워한데서 말미암았는데 그 폐단이 지금에 와서는 더욱 널리 퍼져서 심지어 다른 道에서도 이를 본받아 꺼리는 바가 없습니다(《仁祖實錄》권 6, 인조 2년 5월 병진).

향촌에서 가하는 형벌 중 가장 무겁다는 훼가출향은 선조 초 진주에서 사 족부녀의 음행이 문제되었을 때 조식이 문인을 시켜 음행한 여자의 집을 헐고 가족을 동네에서 몰아내면서 처음으로 표면화되었다. 중앙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弊風일지 모르나 사족이 풍기단속을 앞세워 土族家까지 규제하고 있는 사족 중심 향촌지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훼가출향이 이제는 영남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헌부의 지적은 이 시기의 향촌사회가 사족에 의해 통제되며 사실상 운영되어 나가고 있음을 反證하여 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은 얼마가지 않은 17세기 후반11)에 이르러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견제 와 사족 내부의 여건변화로 인한 분열 때문이었다.

외부로부터의 견제란 국가의 對鄕村정책이 재지사족을 매개로 하던 간접 적인 방식에서 소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형태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12) 경재소의 혁파로 유향소의 座首에 대한 選任權이 일단 향회의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守令에게 귀속되었고, 수령권이 서서히 강화되는 속 에 좌수가 수령의 보좌역으로 격하되고 유향소마저 향청으로 바뀌어 수령 예하에 놓이게 되자 결국 사족의 手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사족의 향촌지 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향촌기구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이며 그만큼 그 영향력은 위축되고, 반면 향리를 장악한 수령의 직접적 농민지배가 강화된 것이다.

나아가 국가는 〈五家統事目〉과 里定法의 시행을 통해 賦稅 행정실무를 面 里任과 향리의 연결 조직을 이용해 수령에게 귀속시키고 사족에게는 교화의 책무만 맡게 함으로써, 종래 사족세력이 유향소를 통해 지녔던 부세운영권을 무력화하여 小民에 대한 지배권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사족의 향촌지배에 대한 견제는 신향으로 불리는 새로이 성장한 향촌세력 의 도전으로부터도 주어졌다. 효종 5년(1654)의〈營將事目〉반포로 향청의 鄕 任職을 세습하는 鄕族層이 등장, 鄕案의 入錄을 요구하며, 鄕權을 놓고 기존 의 사족세력(舊鄕)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小民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추구 하는 국가의 향촌정책과 신향의 도전은 사족세력의 향촌운영을 크게 위협하 는 요소였고, 결국 18세기 이후 향안의 작성이 중단되고 끝내 罷置되는 데서 보듯이 사족영향력의 감소와 유명무실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¹¹⁾ 李海濬은 임진·병자의 두 차례 전란을 거치면서 농민과 토지를 중심으로 한 사족의 물질적 토대가 붕괴되는 반면 새로운 이향세력이 등장하여 국가-수령 -사족의 연결구도가 국가-수령-이향으로 바뀌어가면서 사족지배체제가 동요 된다고 하여 시기를 좀더 앞당기고 있다(李海濬, 〈조선후기 書院研究와 鄕村社 會史〉,《韓國史論》21,國史編纂委員會,10~13\).

¹²⁾ 이하의 서술은 朴京夏, 〈朝鮮中期 鄕村支配組織에 관한 研究-鄕規・洞契를 中 心으로->(《國史館論叢》59, 1994), 197~199쪽의 서술을 주로 참고하였다.

위와 같은 외부의 견제와 함께 17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사족세력의 내부분열이 심화되어 더 이상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것은 우선 촌락형태의 변화에서부터 비롯한다. 男歸女家婚・子女均分制・輪回奉祀를 특징으로 하는 조선 초 이래의 가족 및 상속제도가 17세기에 이르러 가례의 보급에 따라 親迎禮와 長子相續制・長子奉祀制로 바뀌면서 종래의 父・母・妻系의 異姓三族이 동거하던 同族村 형태로부터, 父系親 중심의 동성동본의 친족이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同姓村이 형성되어 발달한다. 그런데 이런 촌락형태의 변화는 촌락 안에 있던 家舍・家垈・田番・墓山을 둘러싸고 옛날에는 같은 동족으로 간주하던 씨족・문중・촌민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17세기부터 점차 심각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는 향촌사족간의 山訟과 재산분쟁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일향 사족 전체의 공동 관심사보다는 동성촌락을 단위로 한 족적 결속과 門中勢의 확산에 주력하게 된다.13)

이 시기에 사족간의 분열을 불러온 요인에는 중앙정계에서의 붕당간 대립의 심화도 포함된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본질적일 수 있다. 조선 붕당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당론의 세습성에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先代의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것은 중앙에서는 정쟁으로 나타나지만 향촌에서는 중앙의 정치문제나 향촌사회의 주도권 문제를 놓고 당해 후손간에는 물론, 각기 이들과 학연 및 혼인관계로 연결되는 사족간의 지지와 상호 배척으로 인해, 심지어는 一道가 휩쓸리고 여러 개의문중이 총동원되다시피 하는 향전이 벌어졌다. 효종 6년(1655) 전라도 나주의 景賢書院 운영을 놓고 벌어진 서인계 및 북인계 지지 사족간의 대립과, 숙종년간 전라도 무안의 紫山書院의 훼철과 복구를 놓고 노론과 남인계 사족간에 벌어진 서원향전은14) 그것의 저명한 사례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와 같이 사족의 향촌지배권이 약화되는 속에 사족 내부의 분열까지 겹

¹³⁾ 이상의 서술에서는 李樹健, 〈嶺南學派의 鄕村支配體制〉(앞의 책), 435~444쪽을 주로 참고하였다.

¹⁴⁾ 金文澤,〈16~17세기 羅州地方의 士族動向과 書院鄉戰〉(《淸溪史學》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金東洙, 〈16~17세기 湖南士林의 존재형태〉(《歷史學硏究》7, 全南大, 1977).

치게 되면서 18세기 이후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는 점차 후퇴하고, 새로이 형성되는 동성촌락을 중심으로 한 족적 결속과 문중조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향촌사회의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2) 서원의 증설과 역할의 증대

중종 38년(1543) 주세붕에 의해 백운동서원이 창건되면서 처음 출현하였고, 명종 4년(1549) 이황에 의해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그존재를 공인받아 사림의 양성을 위한 학교로서 정착되며, 다시 그와 그 문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보급되었던 서원은, 사림 출신 관료의 정국주도가 실현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향촌에서의 士林勢가 강화되어 향권주도가 가능하게 되자, 향안・향규・향약・동계 등 사족세력이 마련해 왔던 기존 향촌조직과 함께, 사족 내에서도 古道를 익히며그것의 실천을 통해 三代至治의 재현을 추구하는 儒子집단인 사림만의 장수처이며 동시에 향촌에서의 그 활동기반으로서 본격적 발전을 보게 된다.

그 발전의 구체적 양상은 양적·질적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양적인 측면으로서 선조 이후 경종 때까지를 중심으로 서원과, 뒤에 가면 서원과 구별이 없어져 같이 섞어 부르게 되는 사우의 건립상황을 통계로 표시하면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서원은 선조대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63개소가 건립되어 앞선 시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적으로도 명종대의 경상도 일변도에서 벗어나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며 특히 충청·전라·경기·황해에는 각기 6개소 이상의 서원 설립을 보이고 있다. 인조 22년 경상감사 林墰이 도내의 서원 실정을 보고하면서 "萬曆 이후 서원을 세우는 것이 해가 갈수록 많아져서 고을마다 서로 잇다을 정도가 되었다"15)고 하여 선조 이후서원이 증설되었다고 한 말이 정확한 지적임을 알 수 있다.

^{15) 《}仁祖實錄》 권 45, 인조 22년 8월 기미.

〈표 1〉 조선 중기 서원(사우)의 시대별 건립 수

시 대	서원(사우)	연평균 건립 수(사우 포함)	누 계	
명종 이전	19(1)	0.83(0.04)	19(1)	
선조	63(22)	1.58(2.1)	82(23)	
광해군	29(9)	2.23(2.9)	111(32)	
인조	28(25)	1.08(2.0)	139(57)	
효종	27(10)	3.00(4.1)	166(67)	
현종	46(23)	3.29(4.9)	212(90)	
숙종	166(174)	3.69(7.6)	378(264)	
경종	8(20)	2.67(9.3)	386(284)	
영조	18(145)	0.35(3.2)	404(429)*	
정조 이후	3(8)**			
미상	7(43)			

- * 이 속에는 영조 17년의 서원훼철시 철거된 19개소의 서원과 154개소의 사우 가 포함되어 있다.
- ** 정조 이후는 이른바 門中書院(祠宇)이 곳곳에 건립되었으나 국가에서 파악한 통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통계가 갖는 의미가 적다.

〈표 2〉 조선 중기 서원(사우)의 시대별ㆍ지역별 건립 수

	경 상	전 라	충 청	경 기	황 해	강 원	평 안	함 경	계
선조	25(3)	13(9)	7(3)	6	8(1)		3(4)	1(2)	63(22)
광해군	12(3)	5(4)	6(1)	2	1	2		1(1)	29(9)
인조	11(9)	6(7)	5(1)	2(2)	(1)	2(2)	1(2)	1(1)	28(25)
효종	10(2)	5(3)	2(1)	4	3	2(3)	1	1(1)	27(10)
현종	14(6)	8(4)	8(3)	5(2)	2	(4)	4(1)	5(3)	46(23)
숙종	76(61)	27(40)	27(25)	19(8)	5(8)	4(8)	6(15)	2(9)	166(174)
경종	2(5)	3(4)	3(2)		(1)	(2)	(4)	(2)	8(20)
계	150(89)	67(71)	58(36)	38(12)	19(11)	10(19)	15(26)	10(19)	367(283)

* 鄭萬祚, 〈17~18세기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韓國史論》2, 서울大, 1975), 263쪽에 의거하여 작성함.

.

선조년간의 이러한 서원 증설은 말할 것도 없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사림 계 관료가 정치적 우세를 확립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된 정세변화의 결과라 할 것이다. 훈척세력 및 선조 초의 舊臣세력과의 오랜 기간에 걸친 정치적 투쟁에서 승리한 사림계는, 舊弊의 혁신과 함께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道統說을 앞세워 사림계의 대표적 유학자들을 孔子 를 제향하는 文廟에 入享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문묘종사운동이라 하거니와 이는 도학의 계승자로서 사림의 집권 명분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함 께 내외에 사림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16) 이러한 경 우 사림계 유학자를 제향하는 서원 건립 역시 문묘종사운동의 지방적 호응 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에서의 정치적 우세를 배경으로 삼아 향촌의 사림들 은 서원을 건립, 사림계 유학자를 제향함으로써 향촌사회에서 사림의 존재를 확립하는 한편, 이곳을 터전으로 講學과 藏修의 활동을 활발히 벌여 새로운 사림세력을 계속 양성, 배출함으로써 사림세의 확산을 꾀하였던 것이다. 율 곡 李珥가 海州의 石潭에 은거하며 조광조와 이황을 제향하는 靜退書院(石潭 서원)을 세워 사림을 양성한 데서부터17) 황해도 일대에 선조년간에만 8개소 의 서원 건립을 보게 했던 것이 그 하나의 예라 하겠다.

선조년간 서원의 역할은 위와 같이 강학과 장수를 통한 사림의 양성소로서 사림세력의 지방적 확산을 위한 거점이었다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18) 이시기 사림의 東人・西人으로의 분열은 어떤 형태로든 서원에 영향을 미치지않을 수 없었다. 임진왜란 후 북인 鄭仁弘이 남인으로서 영의정이던 유성룡을 主和誤國으로 탄핵할 때 그 영향력하에 있는 경상우도의 서원조직을 통해 土論을 규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 그 사례가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후대에서 보듯이 서원이 향촌사림의 여론을 수렴해 중앙정치의 갈등과 대립에 참여할 정도나, 더 나아가 아예 黨論의 소굴이 될 만큼 역할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향촌사회에서의 서원 역할 역시 사림의 취회소라는데 머물 뿐

¹⁶⁾ 金鎔坤,《朝鮮前期 道學政治思想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4), 217~254쪽.

¹⁷⁾ 鄭萬祚、〈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韓國史論》2, 서울大, 1975), 270等.

¹⁸⁾ 이하의 서술은 鄭萬祚, 앞의 글(1989)에 주로 의거하였다.

사족의 향촌사회운영을 위한 조직으로까지 나아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율 곡 이이가 서원을 향약 시행과 운영의 기반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향촌기 구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한 적은 있다. 즉 율곡은 〈海州鄕約〉에서 향약의 立 案, 임원의 선출, 향약의 조직, 의식의 거행, 慶弔자금의 운영·관리 등을 모 두 서원의 인적 자원과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한마디로 향 약으로 대변되고 있는 향촌 사림의 사회적 활동을 모두 서원을 기반으로 수 행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율곡이 서원으로 하여금 단순한 사림 양 성소로서의 학교에만 머물지 않고 留鄕所나 鄕會所・公會堂과 같은 사림의 향촌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다고 해서 막상 그것이 실혂에 옮겨졌다거나 널리 보급되었다고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다.19) 기본적으로 학교적 성격을 지닌 서원에 사림은 물론 鄕民까지 취합하여 鄕射・飮禮나 讀會를 개최하여 주위 환경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서원의 본질인 士子藏 修에 크게 방해가 된 터임은 분명하므로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굳이 서워조직이나 건물을 활용하지 않아도 아직은 향사당이나 유향소ㆍ향 안ㆍ향회 등의 자치조직이 제 기능를 발휘하고 있어 서원까지 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20) 이는 율곡 자신조차 〈坡州鄕約〉이나 〈西原鄕 約〉 등에서 서원과의 연관을 맺고 있지 않았던 데서도 확인된다. 생각건대 율곡은 같은 교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취합을 위한 향사당 등의 기존 건물이 미비한 해주에 있어서, 이미 설립되어 있던 文憲書院의 건물과 인적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그 하나의 시안으로써 해주향약 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16세기 말의 선조일대는 물론 이 후의 17세기에서도 서원과 향약조직과의 직접적인 긴밀한 연관관계가 쉽게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는 해도 향촌사회에서의 사림

¹⁹⁾ 渡部學 역시 서원에서의 향약실시를 규정한 해주향약이 汎身分的인 Community school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율곡의 이상론에서 나왔을 뿐 다른 곳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는 없고 또 그의 학통을 잇는 서원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渡部學,〈16세기 朝鮮朝 書院의 三類型〉,《제1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337쪽).

²⁰⁾ 鄭震英에 의하면 선조 36년의 경재소 혁파 후에도 안동에 있어서 사족의 향촌 지배 중심 기구는 여전히 유향소였다고 한다(鄭震英, 앞의 글, 1985, 87~88쪽).

우세 속에 서원이 그 활동의 기반과 구심체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율곡의 〈해주향약〉을 통하여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바라 하겠다.

서원의 발전은 17세기에 들어와 현저해진다. 우선 양적으로 볼 때〈표 1〉에서 찾아지듯이, 광해군~경종 때까지 무려 304개소를 헤아릴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건립되었다고 통계에 잡히는 서원이 417개소였음을 감안한다면, 거의대부분(73%)이 이 시기에 세워졌다고 할만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후반기인 숙종 때 가면 서원 건립에 대한 禁令 때문에 규모나운영을 서원과 꼭 같이 하면서도 명칭만 祠字라고 해서 사실상 서원과 사우와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하는 만큼 사우까지 서원에 합해 본다면 그 숫자는 565개소에 이른다. 광해군에서 경종까지가 116년이므로 연평균 2.6개(사우포함 4.8개)가 새로 세워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이르면 사림의 뿌리가 깊고 그 숫자가 많다는 三南지역은 물론 강원도·함경도 등 평소 사림의 활동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지역에까지 서원의 숫자가 늘고 있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서원등록》에 보면 숙종 때 영남지방에는 하나의 고을에 서원이 7~8개처나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²¹⁾ 17세기 말에 해당하는 숙종년간에 서원의 남설이 큰 폐단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던 사정은 위의 통계로서 확인되는 것이다. 남설이 문제가 될 정도의 이러한 서원의 수적 증가는 이 시기를 특징짓는 붕당정치와 특히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 및 同姓村落의 성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선조대의 동인·서인의 분당에서 비롯된 붕당정치가 17세기에 들어와 점차 본 궤도에 오르면서 성리학적 이념과 밀접히 연관되는 명분과 의리 중심의 논쟁으로 전개되자, 향촌사림의 여론이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따라서 각 정파는 이런 여론을 자기 당에 유리하게 이끌어 정치적 입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각 정파는 자기 파를 지지하는 사림세력을 지방별로 확보해야 하였고, 이런 경우 향촌 사림의 聚會所이며 특정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이 그런 목적에 알맞는 매개체였다. 여기서 각 정파는

^{21) 《}書院謄錄》 권 5, 숙종 43년 11월 9일.

자파계의 유학자를 제향하는 서원을 지방별로 직접 건립, 사림을 불러들여 이곳을 중심으로 자기파 지지세력의 거점을 구축하려 하였던 것이다. 광해군 때 북인정권이 지지세력을 심기 위해 그 학문적 연원인 南冥 曹植을 제향하는 서원을 서울 삼각산 아래와 전라도 강진에 세우려다가 물의를 일으킨 것이나, 숙종 20년 이후 불과 26년 사이에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이 30여 개소를 넘을 정도로 도처에 세워지고, 이를 놓고 당시의 예조판서 閱鎖厚가 "하물며 논의가 갈라진 후에는 각기 존경하는 인물을 높이기위해 경쟁적으로 서원을 세우고 있다"22)고 말한 것이 그런 예라고 할 것이다.

향촌 사림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각 정파의 시도는 직접적인 서원 건립으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집권세력은 자기파 집권의 명분 합리화와 주장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을 기하기 위해 기존의 서원을 향해 물질적·행정적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지원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賜額이었다. 사액은 단순히 懸板과 함께 노비와 서적 약간을 지급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다. 사액을 받은 서원으로 볼 때그것은 향촌에서의 그 존재에 대한 국가적 공인이었으며, 동시에 그 서원을 기반으로 하는 향촌 사림의 활동에 대한 보장책이기도 하였다. 향안·향약·동계·향회 등의 사족세력의 향촌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있기는 하였지만, 농민 통제를 비롯한 제반 향혼 문제를 놓고 아무래도 수령권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갈등 관계에 들게 마련인 사족들에게 그들이 세웠고 운영하는 서원이 임금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활동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기에 모든 서원마다 사액을 열망하였으며 때로는 막대한 경비를 쓰면서까지 이를 관철하려 하였다.23) 따라서 집권세력의 의도에 좌우되기 마련인 사액은 향촌사림의 지지를 획득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원과 중앙정파와의 관련이 이와 같이 밀접하게 된 결과 본래 山林學者 가 하게 마련인 서원 院長職을 중앙의 고관이 역임하게 되며, 또 서원의 유

^{22) 《}書院謄錄》 권 5, 숙종 43년 11월 3일.

²³⁾ 숙종년간 건립된 울산의 鷗江書院의 경우 사액을 받기 위해 5만여 냥의 경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李樹煥,〈蔚山 鷗江書院의 설립과 賜額과정〉,《大丘史學》 49, 1995).

생이 하기 마련인 有司職에 鄉有司와 縉紳有司의 구별을 따로 두어 향유사는 유생이 하고 진신유사는 중앙의 堂上 이상의 고급 관료에게 위촉되었다.²⁴⁾ 이러한 경우 해당 서원으로서는 서원유지에 따른 행정적·물질적 지원을 관료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조직이 향촌사림과 중앙관료의연결을 맺게 해주어 그들의 정치적 진출에 階梯를 마련해 주는 이점이 있으며,²⁵⁾ 중앙관인의 입장에서는 서원을 통하여 자파의 정론에 대한 향촌사림의지지를 확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원과 중앙관인과의 연결조직을 반드시 당론적 상관관계에서만 파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향촌사림의 公論과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을 서원을 통하여 집약, 중앙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림공론을 수렴하는 창구적인 역할을 서원이 수행하였다고 보는 면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도할 수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는 현종 때의 服制論爭을 통하여 찾을 수 있다. 주지하듯이 복제논쟁은 孝宗喪에 慈懿大妃의 복제를 宋時烈은 朞年說, 尹鑴는 삼년설을 주장함으로써 비롯되었는데 처음의 논란은 國制時王之制를 쫓아 현종이 기년설을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었다.

그런데 이 기간 이후 安東을 중심으로 한 영남의 유림세력은 의례에 대한 상세한 변정과 고증작업을 진행시키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상호 검토하였으며 別邑에 通文을 돌려 禮說에 관한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드디어 현종 7년(1666) 柳世哲을 疏首로 한 영남유생 천여 명의 聯疏를 올렸다.26) 현종 15년의 甲寅禮訟 때 남인설이 승리하고 이로 인해 송시열계의 서인이 실각, 남인이 집권할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이 유세철 등 영남유생 천여 명의 연소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橫儒의 禮論 자체가 영남내의 향교와 서원조직을 통하여 연구되고 상호간의 의견교환과 논란을 거쳤으며, 書院通文에 의하여 도내 유림의 여론을 계도·수렴함으로써 연소가 작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연소를 올리게 되는 취회소는 향교가

²⁴⁾ 鄭萬祚、〈朝鮮後期의 對書院施策〉(《第3回 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4),262쪽 참조.

^{25)《}書院謄錄》권 6, 경종 4년 4월 28일, 全羅右道暗行御史李眞淳書啓.

²⁶⁾ 이에 관해서는 주로 李樹健,〈正祖朝의 嶺南萬人疏〉(《嶠南史學》1, 1985), 10~ 12쪽 참조.

되지만 처음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견이 발의·수렴되며, 통문이 오고 가는 거점은 바로 서원이었다. 다시 말해 향내에 있는 각각의 서원마다 개별적으로 일차 여론이 수렴·조정된 후 향교로 다시 취합되며 이것이 한 곳에 개설된 疏廳에 전달되어 도내의 통일된 의논으로 결정되는 것이니 이를테면 여론수렴 과정이 개별유생→서원→향교→소청(도)의 단계를 밟았다고 할 것이다. 서원은 바로 향촌여론의 발의와 수렴의 일차 거점이었으니 조선시대의 정치, 특히 명분론과 학설 위주의 붕당정치에 있어서 서원이 갖는 정치적역할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물론 향촌유림이 중앙정치의 모든 면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의논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고, 또 설사 의논을 모은다고 하여서 반드시 서원조직을 활용하였다고 만은 할 수 없다. 향촌에는 서원 이외에도 향사당·향교같은 공공건물이나 정자 등이 있어 취회하는 장소 마련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생의 藏修處라는 서원에서 조정의 일반 정사를 논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못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서원에서 논의할 수 있으려면 사안이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던가 아니면 斯文이나 聖門 및 국가통치이념 등 사림과 직결되는 것이어야 하였다. 상기한 예론은 국가의 통치이념이나 사문에 바로 연결되는문제였다. 이렇게 본다면 서원이 향촌여론 수렴의 거점이라는 것은 상기한범위에 포함되는 사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효종 이후 붕당정치가성리학이나 통치이념과 보다 깊이 관련되는 명분과 의리론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서원이 여론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잦았던 것이라고 하겠다.

명분론 위주의 붕당정치는 자칫 열기가 더해지면 과격한 방향으로 흐르게 마련이었다. 숙종 초부터 그런 기미는 벌써 나타나고 있었지만 庚申大黜陟으로 재집권한 서인이 남인관료를 逆으로 몰아 대거 살육하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다시 己已換局 당시 남인의 서인에 대한 보복, 甲戌換局으로 서인이 남인에게 다시 보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사림의 공론이란 사실상 노론·소론·남인 삼당을 지지하는 鄕村士子의 당론적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이 시기 이후 서원은 겉으로는 사림공론의 수렴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私黨政治의 소굴, 곧 당론

의 연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서원으로 하여금 당인 피차간의 혈전의 쟁투장으로 화하게끔 이끌어 갔다. 영조 14년(1738) 안동에 노론 감사와 부사의 지원을 받은 安宅駿 등 일부 노론계 인물이 金尚憲書院을 세우고 이를 발판으로 안동향권을 장악하며, 안동내 노론세력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다가, 남인 사족의 맹렬한 반대와 훼철하는 실력저지로 한때 一道가 떠들석하고, 조정에서마저 노론계와 남인측을 각기변호하고 공척하는 노·소론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어 정국이 불안하였던 사례는,27) 서원이 이제 향권장악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당인의 집결지요, 당론의 소굴로 변모하였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었다.

17세기에 들어오면서 향촌사회의 당면한 일차적 과제는 임진왜란으로 붕괴된 향촌사회의 재건과 경제력의 복구에 있었다. 그것은 재향사족세력과 농민의 노력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향안·향규·향약·향회등 난전에 사족세력이 마련하였던 향촌조직이 복구되었고, 그 결과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서원 또한 다른 향촌조직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에서 입은 피해로부터이 시기에 대개 복구되었고, 또 앞의 통계표에서 보듯이 신설된 곳도 점차늘어났다. 그러나 서원이 중건되거나 신설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타의 향안・향약 등의 향촌조직과 마찬가지로 사족세력의 향촌지배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었다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앞서 선조년간 율곡 이이가 〈海州鄕約〉에서 서원을 향약의 조직과 운영의토대로 삼고자 하였던 구상은 아직껏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물론 이 시기의 서원에서 〈朱子鄕約〉의 讀約이 행하여졌다는 예는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독약은 그것이 주자의 교화관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白鹿洞學規와 마찬가지로 유생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유생이 서원을 떠나 향촌사족으로 있을 때 향약의 내용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凡民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에서, 유생의 자기수련의 한 과정으로 서원의 유생이 함께 모여 강독한다는 뜻이지 향약의 제반 절차가 鄕中諸人의 모

²⁷⁾ 鄭萬祚,〈英祖 14年의 安東金尚憲書院 建立是非〉(《韓國學研究》1, 同德女大, 1982) 참조.

인 속에 서원에서 진행되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만약 향약이 서원을 구심점이나 거점으로 하여 행하여졌다면 율곡이 규정한 바와 같은 서원의 인적조직의 활용이나 향약이 서원에서 행하여지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알려진 바로는 향약의 시행은 유향소의조직이나 향회소와 같이 서원과 관계없는 별도의 기구와 장소를 터전으로삼고 있었다.²⁸⁾

따라서 이 시기의 서원은 향약과는 별반 큰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겠으 며 서워의 사회적 역할은 다른 면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서워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건은 인조 4년(1626) 5월에 발생한 陶山 書院 院長 李有道(李滉의 형 李瀣의 손자)의 杖斃로 인한 안동유림들의 경상감 사 배척운동이었다.29) 즉 경상감사 元鐸이 詞訟을 처리하는 도중에 사건에 관련된 이유도를 소환 심문하다가, 이유도의 답변이 공손하지 못함으로 道主 를 능멸한다고 하여 곤장을 가한 것이 바로 치사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하였 다. 이에 이유도의 아들 崶・岩 등이 그의 부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族人들 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도산서원에서는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어 감사가 함부로 사족을 죽였다 하여 감사배척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지 방민이 王人(감사)을 함부로 몰아내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여 통문발송을 주장한 李弘重 등을 체포하였다. 그러자 鄭經世 등의 在京 남인관료들은 집 권 서인세력의 이러한 유생탄압에 반대하여 그들을 옹호함으로서 이 문제는 서 · 남인간의 정치논쟁화할 조짐까지 보였다. 결국은 남인의 의견을 받아들 인 인조의 온건수습책으로 首唱儒生들은 용서되고 元鐸은 파직되었다. 이상 의 서술로 볼 때 적어도 도산서원의 경우 서원에 관계하는 인물의 보호에 서원조직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선조년간 율곡 이이가 유향소 중심으로 실시하려 했던 〈海州一鄉約束〉에서 鄕員(鄕案入錄者)의 억울 한 죄에 대해서 향원들이 함께 구한다고 한 규정이,30) 여기서 실제로 행하여

²⁸⁾ 金仁杰, 〈朝鮮後期 鄕權의 추이와 支配層의 動向〉(《韓國文化》2, 1981), 175쪽.

^{29) 《}仁祖實錄》권 12, 인조 4년 5월 무신·기사 및 권 13, 인조 4년 윤6월 병오· 기유·경술.

³⁰⁾ 李 珥,《栗谷全書》 권 16, 雜著 3, 海州一鄉約束.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원이 16세기 무렵까지 유향소가 수행하 던 역할을 이 시기에 이르러 대신하고 있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서원의 이러한 역할이 보편화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다. 위의 이유도 사건은 퇴계의 종손이며 도산서원의 원장을 지낸 인물이었 기에 크게 문제가 되었을 뿐이었다. 위에서 말한 서원의 사회적 역할이 보편 화되게 되는 것은 宗法制의 정착에 의한 상속제・가족제의 변화에 따라, 종 래의 同姓異姓雜居 형태의 同族村落이 同姓同本이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거 주하는 同姓村落으로 변모하고, 또 그런 동성촌락이 발전하게 되는 17세기 후반 이후였다.31)

그런데 동성촌락이 형성될 수 있는 족적 기반의 바탕은 族契에 있었다. 족계란 혈연적 유대가 강한 개인끼리 거주지인 동리를 중심으로 친족간의 상호부조와 祖先奉祀를 목적으로 조직된 契會인데 친족내의 인간관계 유지 를 위하여 향약의 유리조항을 원용하고 또 향약의 자치조직을 도입함으로써 이를테면 동성촌락내에서의 향약의 시행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32) 그러므로 흔히 거주지를 같이 하는 동성간의 자치를 위한 약속이라 하여 洞約이라고 도 불린다. 이러한 족계는 이미 16세기의 퇴계나 그 문인 黃俊良・琴蘭秀 등 의 동족촌에서부터 찾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족계가 성행한 것은 임란 후 향촌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였다.

이 족계는 단순히 친족 사이의 친목이나 상부상조·조선봉사만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진주의 晋陽鄭氏 족계인 上寺里洞約을 보자.

제군들에게 바라노라. 부질없이 친구들과 만나서 술마시고 이야기하며 풍류 찾기를 일삼지는 말라. 자제를 가르칠 때는 小學을 근본으로 삼도록 하되 詩・ 書・子・史를 가르쳐 立身揚名의 바탕으로 삼도록 하라. 우리 동네의 인재가 예전에는 부족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고 하여 어찌 그렇지 않으랴. 아! 우리 후학들은 더욱 힘쓰도록 하라(成汝信 編,《晋陽志》권 1, 各里 東面 上寺里).

이처럼 상사리동약은 孝弟를 중심으로 한 자제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³¹⁾ 李樹健, 앞의 책(1995), 435~442쪽.

³²⁾ 金武鎭, 〈조선중기 士族層의 동향과 鄕約의 성격〉(《韓國史研究》 55, 1986), 19쪽.

자제교육의 강조는 향촌내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배타성을 갖는 족적 결합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契員이 향혼지배층으로서의 위치를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여서 대부분의 족계는 자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성촌락 안에서는 대개 족계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당을 갖게 마련이었으니 17세기 이후 서당이 성행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33) 조상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족계가 이와 같이 자제교육을 위한 교육기구로서 서당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 시기의 향존사회에서 서원이 수행하던 역할과 관련하여 대단히 주목된다.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여 사림의 본보기로 삼고 겸하여 사림의 藏修・講學處로서의 기능을 가진 서원이 이러한 경우 비록 그 본래의 제도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족적 기반 내에서 위의 조상제사와자제교육을 겸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로 변모할 가능성이 보이기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17세기 후반에 들어가 현실로 나타난다.

붕당정치의 名分論爭이 격화되고 정쟁희생자에 대한 신원의 의미를 지닌서원의 건립이 성행하여 서원의 성격이 講學·藏修 중심에서 제향 위주로 전환되면서, 제향인물의 선정기준이 또한 반드시 道學者나 儒賢이 아니라도, 예컨대 鄕賢이나 高官, 심지어는 行誼있는 士子나 효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선으로까지 확대되자,34) 각 동성집단들은 자기집단의 顯祖나 入鄕祖를 제향하는 祠廟를 세우고 여기에 자제교육을 위한 童蒙齋나 養正齋 따위의건물이나 아예 서당을 함께 부설하였다가 기회를 보아 서원으로 확장시키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게 된다. 이와 같이 붕당정치의 당론격화의 결과로 빚어진 서원의 남설은 향촌사회에 있어서 족계에 바탕을 둔 동성집단으로 하여금 그 족적 기반의 중심기구로서 족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서원의 건립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鄕案・鄕約・鄕射堂 등의 향촌자치조직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18세기에 들어가 그에 대신하여, 族譜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족적 결속에 의한 보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변모하면서 더욱 노골화하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동성촌락에 세워진 서원이 갖는 역할은 실제적으

³³⁾ 渡部學、〈鄉村書堂成立의 樣相〉(《近世朝鮮教育史研究》,東京,雄山閣,1969). 丁淳佑、《18世紀 書堂研究》(韓國情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1985) 참조.34) 《書院謄錄》 권 4, 숙종 26년 11월 5일.

로 어떠하였을까. 우선 일차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이들 서원이 동성촌 락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유지하게 하는데 기반 역할을 하였다 는 점이다. 그것의 건립은 후손들 중에서도 주로 문중 중추세력들의 발의와 주도에 의하였던 만큼 활동도 주로 이들이 하였다. 이들은 서원을 발판으로 鄕中의 다른 문중 집단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일족을 대표한 문중 중추세력이 다른 문중과 유대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계 기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바로 서원이었다. 물론 서원 외에도 향교ㆍ향사당 ·향청 등이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17세기 후반 이래 점차 사족의 관심 밖 으로 밀려나고, 樓亭이 있었지만, 이는 그야말로 풍류를 통해 지면을 익히는 곳이지, 사림의 世誼를 나눌 곳은 아니어서 오직 서원 밖에는 다른 것이 없 었다. 따라서 일문의 중추세력들은 자기 문중을 대표하여 다른 문중의 서원 에 참여, 문중간의 연결을 도모할 수 있었다.35)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여 유대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게 되면 자연적으 로 향촌의 사족이 주도하는 향권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문중 중추세력들의 서원을 기반으로 한 향촌활동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문중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데 중개 역할을 하는 셈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향촌에서는 班格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양반가 문이라도 벼슬관계나 학적 기반・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그 사 회적 지위에 차등이 있었다.36) 예컨대 이황의 후손들은 이황 문인들의 후손 에 대하여 그 선대의 사제관계에 영향을 받아 향촌에서 보다 우위를 차지하 고 있었다. 그리하여 향촌마다 그 향촌 나름대로의 각 문중 사이에 어느 정 도의 반격의 질서가 있게 마련인데 이 질서가 동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른바 鄕戰이었다. 향전의 계기나 그 나타난 양상은 다양한 것으로 말 해지지만,37)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들어오면서는 서원의 건립·配享·追享 및 位次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씨족・문중・학파간의 대립과 선조의 학 통과 師友淵源문제・文字是非를 두고 후학・후손 사이에 생겨나는 분쟁이

³⁵⁾ 鄭勝謨、〈書院・祠宇 및 郷校組織과 地域社會體系〉(上)(《泰東古典研究》3, 1987).

³⁶⁾ 江守五夫・崔龍基編,《韓國兩班同族制의 研究》(第一書房, 1982), 119~122쪽 참조.

³⁷⁾ 李樹健, 앞의 책(1995), 576쪽.

중심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분쟁을 놓고 흔히 서원향전으로 불렀던 만큼 이 시기는 서원을 중심으로 향전이 전개되었던 것이요, 그 만큼 서원이 향촌사 회에서 갖는 사회적 역할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성촌락는 대개 그 入鄉祖가 처음으로 자리잡게 되면서부터 3~4대를 지나야 인원수도 늘고 경제력도 집적할 수 있어 집단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동성촌락이 대체로 임란을 전후한 시기에 入鄉하는 경향을 보이므로38) 여기서부터 3~4대를 따진다면 대략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전반에 해당하는바 후손에 의한 문중서원의 簇出이나 부계 중심의 족보 출현39)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18세기 이후 서원은 점차 族黨基盤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핀 서원의 발전에 덧붙여 이 시기 서원의 재정기반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서원의 유지와 존립에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였다. 서원에 머물며 講學藏修하는 유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供饋비용과, 봄 가을로 지내는 享祀에 드는 비용 등의 기본 경비 외에도, 서원을 찾는 외부 인사에 대한 접대, 다른 서원의 건립이나 斯文과 관련된 행사에의 扶助, 서원건물의 관리와수리에 필요한 경비 등이 있으며, 기타 서원 유지에 드는 소소한 비용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소요경비를 충당하려면 서원재정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하였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토지로서의 書院田과, 인적 자원 내지 稅源인 奴婢・院屬・額外院生・除役村이며, 이외에 지방관으로부터의 현물지원이 별도로 있었다.40)

그 중 서원전은 말할 것도 없이 서원재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였다.

³⁸⁾ 일제시대에 행하여진 전국의 集姓村(同族部落으로 표시) 분포조사에 따르면 저 명한 동족부락 1,685개소에서 정착연대 미상 458개소를 제외한 1,227개 가운데 500년 전에 자리잡은 것이 207개소, 300년 정도의 것, 즉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 기의 것이 646개소, 300년 미만이 74개소라 한다(朝鮮總督府,《朝鮮의 聚落》후 편, 1935, 217쪽).

³⁹⁾ 崔在錫,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歷史學報》81, 1979).

⁴⁰⁾ 閔丙河, 〈조선서원의 경제구조〉(《大東文化研究》 5, 성균관대, 1968).

현존하는 서원의 고문서를 보면 이 서원전에는 屬公田・寺社位田・免役田・ 願納田・買得田 등의 명목이 보이고 이외에도 免稅田이 나오고 있다.41) 속공 전이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방관청에 귀속된 토지를 말하는데 이것을 서 원에 획급해 준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완전한 양여가 아니어서 수령에 따 라서는 전임자가 획급해 준 것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면역전은 力役의 면제를 원하는 자가 投屬한 토지이며, 원납전은 외부로부터 기증된 토지이고 매득전은 서원의 재력으로 직접 사들인 토지이다. 한편 사사위전은 사찰소유의 토지인데 抑佛策 속에서 여러 곳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사찰에서 는 아예 유력한 서원의 屬寺로 편입되어 이를 피하고자 했으며, 이런 경우 사사위전의 수세권을 서원에서 행사하게 된다. 끝으로 면세전은 서원소유의 토지에 대한 면세를 말하는데 후일 경종 때 3結에 한해 면세되도록 법제화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완전한 서원소유의 토지라면 면역전 · 원납전 · 매득전 이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매득전이 서원전의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보아 서원이 보급되던 초창기는 지방관의 관심도 크고 지원도 많아 서 속공전 · 사사위전이 서원전에서 높은 비중을 지녔으나, 서원의 수적 증가 가 심화되어 한 고을에 7~8개소가 될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는 줄어들고, 점차 서원 자체의 경비로 마련하는 매득전이 주류가 되다가 門中서원이 발 달하는 18세기 이후는 문중재산인 族産의 성격을 지녀가면서 문중인사에 의 한 원납전이 크게 늘게된다.

다음 인적 자원으로서 노비는 서원 내의 사역이나 서원전의 경작에 부려 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身貢노비로서 서원전과 함께 서원재산의 근간 을 이루었다.⁴²⁾ 서원 관련 고문서의 상당수가 도망간 노비의 추쇄를 요청하 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던가. 노비의 저항이 심해지는 후기로 가면서 아예 노 비를 팔아 서원전을 사들이고 있는 것에서 노비가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院直人・保率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원속은 본래 서워 부근에 살

⁴¹⁾ 崔元奎, 〈조선후기 書院田의 구조와 경영〉(《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1988).

⁴²⁾ 尹熙勉, 〈朝鮮後期 書院의 經濟基盤〉(《東亞研究》2, 西江大, 1983).

고 있는 良民으로서 잡역을 면제받는 대신 서원에 예속되어 서원 내의 제반 잡사를 맡아 처리하는 존재였고, 액외원생은 정원 이외의 서원 소속 유생을 말하는데 실은 軍役을 피하기 위해 양민 자제가 일정한 대가를 내고 원생을 모칭하는 것이므로 혹은 納物院生이라고도 한다.⁴³⁾ 이들로 인해 서원에 출입하는 실제의 유생까지 원생이란 칭호를 기피하게 되자 마침내 원생은 모두 피역자로 채워지게 되며, 이것이 군역폐의 하나의 요인으로 손꼽히면서 마침내 숙종 37년(1711) 大賢書院 30명, 사액서원 20명, 미사액 서원 15명으로 숫자를 제한하는 조처가 법제화된다.

한편 書院村이란 숙종 후반기인 18세기 초부터 성행한 것인데 유력한 서원이 소재지 인근의 大村을 지정하여 서원에 예속시키고 烟戶잡역과 군역정발로부터 보호해 주면서 그 대신 서원에서 필요한 제반 물자나 비용을 징수하는 것인데 募入洞 또는 除役村이라고도 부른다.44)

세번째의 현물지원이란 지방관이 서원에 대하여 祭需나 柴炭, 饌品 및 기타 雜物들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초창기는 지방관의 선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숙종년간부터 이른바 求請이라 하여 高官의 지위에 있는 京院長의 명의로 인근 수령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부조를 요구하는 폐단을일으킴으로써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이상이 서원재정의 기초가 되는 재원이었는데 서원 초창기인 16세기까지는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興學의 차원에서 서원 보급에 의욕을 보인 뜻 있는 수령들의 대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서 속공전이나 屯田의 획급, 屬寺의 배정, 海稅 등의 현물공여 및 원속의 배정 등이 서원재정의 주류였다.

17세기의 서원재정도 기본적으로는 16세기와 동일하지만 단 전란의 뒤끝이라서 물력이 부족한데다가 서원 수의 증가로 한 고을에 3~4개의 서원이들어선 상황에서는 지방관의 지원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부 집권세력과 연결된 서원을 제외하고는 속공전의 지급이나 현물지원은 현저히감소하고 범위도 축소되었다. 관의 지원이 줄었다는 것은 서원 운영자인 사람의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개인적인 회사

⁴³⁾ 위와 같음.

⁴⁴⁾ 위와 같음.

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서원재정을 확보하려 하였고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양민을 원속·원생 등으로 끌어들이(冒入)게 됨으로써 서원재정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게 되나 이른바 서원의 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서원의 수가 격증하고 남설이 문제가 되던 숙종 이후 즉 17세기말~18세 기초에 이르게 되면 서원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크게 악화되었다. 서원 명 목만으로도 400여 개소가 넘고 더욱이 이 시기에는 서원보다 더 많은 사우 까지 서원과 구별이 없어지게 되어 거의 천 개소에 육박하게 됨으로써 집권 세력의 비호를 받는 유력한 서원이나 陶山書院 같이 大腎을 제향하여 온 저 명한 서원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 나 서원의 폐단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국가가 서원 건립을 위시한 운영에 통 제를 가하게 되는 분위기는 그 재원 확보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앞에서 본 바대로 이 시기에 들어오면 사족의 향촌주도가 사실상 무너지고 사족마저 분열함으로써. 사족의 공동체적 향촌조직으로서 서워의 효능 역시 크게 저하됨에 따라 향촌사족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것도 재정악화의 큰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난관의 탈출로는 그 당시 향촌조직에 대신하여 족 적 결속의 강화를 도모하는 문중조직이 성장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는 문중 서원의45) 예에 따라 서원재정을 제향자의 후손에게로 넘기는데서 마련되었 다. 신설이나 기존의 곳을 막론하고 서원의 문중적 성향은 강화되었으며 이 런 과정에서 후손이나 문중의 族産的 성격으로서 기증(願納)에 의한 서원전 과 서원노비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문중서원이 발달하게 되는 18 세기 이후 서원의 경제기반은 華陽洞서원이나 도산서원 같은 유력서원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이 서원전과 서원노비를 주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3) 서원정책의 추이

서원은 기본적으로 향촌사림에 의해 건립되고 운영되는 사설학교 내지 향

⁴⁵⁾ 李海濬. 〈조선후기 門中書院 발달의 추이〉(《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 叢》、一潮閣、1992).

촌기구였다. 따라서 조선 중기에 서원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그 역할 역시 단순한 학교에만 머물지 않으면서 붕당정치와 향촌운영의 기반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일차적으로 사림활동이 그만큼 활발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서원 발전의 이면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국가의 서원지원책이 있었음도 사실이다. 후기의 영조 때 대대적인 훼철을 수반한 국가의 서원억제책이 이후의 서원 쇠퇴를 가져왔던 데서 보듯이 서원의 발전이나 침체 여부는 국가 정책에 좌우되는 측면도 컸다. 그러므로 서원의 주체인사림 내지 사족의 입장이나 활동과 함께 국가의 서원시책까지 살피는 것이조선 중기 서원 발전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되겠다. 여기서는 이런면에 유의하면서 서원의 발생과정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론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46)

서원이 본래 사림의 사설학교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서원과 관련된 제반사는 오로지 향촌사림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국가는 인재 양성과 右文政治라는 측면에서 혹은 사액하여 사림을 격려하고, 때로는 약간의 물질적지원을 하는 소극적 장려책 이외에는 불관여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서원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처음으로 논의되기는 17세기 중반인 인조 22 년 慶尙監司 林潭의 서원폐 상소를 계기로 하여서였다. 여기서 임담은 서원 제향자의 자격기준이 모호함에서 오는 謄享의 경향을 지적하고 良丁의 冒占으로 인한 良役弊의 유발을 서원폐단으로 거론, 적어도 그 건립에 관해서만은 국가가 파악해야 옳다(創建以聞)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예조판서 李植의 찬동을 얻어 일단 서원 건립 때 조정에 알려야 한다는형태로 정책화하였다. 서원건립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創建以聞이란 이 규정은 그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국가에서도 크게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효종은 즉위한 직후 金集을 영수로 한 山林세력을 조정에 불러들였으며, 金墳을 필두로 한 일반관료47)에게 정권을 맡기면서도 이들 산림을 언관직에

⁴⁶⁾ 이하의 서술은 鄭萬祚, 앞의 글(1984)에 주로 의거하였다.

⁴⁷⁾ 여기서 일반관료란 말은 명분을 중시하는 산림세력(山黨)에 비해 집권자로서 현실의 정책을 중시하는 漢黨系나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인물을 가리

포진시켜 상호 견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권력구조를 취하였다. 따라서 효종대의 정책은 이들 관료세력과 산림계 사이의 절충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며서원시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즉 산림이 처음 벼슬길에 나오던 효종 초그들은 李珥·成渾의 文廟從祀를 청하는 한편 趙光祖·이이·성혼·金長生의 4인을 제향하는 각처의 서원에 대한 사액을 요청, 이를 실현시켰다.48) 이는 산림계의 學的 淵源과 조광조→이이·성혼→김장생으로 연결지은 이른바 기호학통의 천명을 통해 일반관료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과, 특히 영남학파에 대항하여 도학적 정통성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관료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후일 현종 때 송시열의 義 理無實을 비난했다가 큰 物議를 빚었던 徐必遠은, 충청감사로 있던 효종 8년 (1657) 도내 서원의 실상을 상소하면서 濫設의 경향을 우려하고, 그 폐단을 郷校衰退・保奴(良丁冒占)・傷風敗俗・官給祭需라는 4가지 측면에서 신랄하게 공격헸으며, 이어 서원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역설, 특히 疊設에 대해서는 훼철까지 요구하며 앞으로의 서워건립은 반드시 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책의 실시를 청하였다. 도학을 내세워 첩설에도 불구하고 사 액을 요구한 산림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필원의 이러한 요청은 역시 관료계의 인물이었던 예조판서 蔡裕後의 적극적인 지지 를 받아 한때는 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 하였으나 뒤이어 玉堂에 있던 산림 계 李正英 · 閔鼎重의 맹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산림계의 서원 통 제 반대는 퇴계 이황의 유명한 서원론에 기초한 것으로, 서원은 사림의 藏修 處로서 존재할 뿐이지 祀賢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애초부터 첩설이 문제될 것은 아니며, 또 첩설 자체가 그 제향 인물에 대한 후학의 존경이 성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폐단시할 필요는 전혀 없고 不合祭享者는 黜享하면 될 것이지 굳이 良民冒占과 같은 사소한 폐를 같이 들먹여 毁院하라는 것은 斯文을 망하게 하려는 저의 때문이라고 극론하여 서필원과 그에 동조한 채 유후의 파직을 요구하였다. 민생문제를 앞세우는 현실론적 입장과 大義名分 의 토대인 도학 진흥을 우선하는 이상론적 정치자세 사이의 현실을 보는 시

킨다.

^{48) 《}書院謄錄》 권 1, 효종 원년 5월 30일.

각의 차이가, 서원정책 결정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필원의 서원통제론을 둘러싼 일반관료와 산림세력의 이러한 논쟁은 결과적으로 서원의 존재를 朝紳 사이에 재인식시키고 향후 서원정책이보호와 장려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 영향으로 현종대에 들어와 향촌사림의 請額운동을 촉발시켜 請額疏가 폭주하였다. 따라서 사액이 남발될까 우려한 현종은 스스로 첩설처에 대한 사액의 제한을 예조에 신칙하였으며,49) 이에 따라 예조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액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勿施라는 부정적 품의와 防啓로 일관, 적어도 사액에 관한한 외면상으로는 통제를 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현종 대에는 청액하였다가 거부된 경우는 모두 26개소이지만 그보다도 사액된 숫자는 훨씬 많은 42개소(서원명 31, 사우명 11)였다. 4개(인조) 내지 11개소(효종)에 그쳤던 전대에 비하여 엄청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종대의 서원시책은 사액에 신중을 기한다는 뜻에서 약간의 제한 조항을 둔 것일 뿐 기본적으로 서원 통제가 아닌 장려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종과 현종대의 서원장려책은 산림이 애초부터 그렇게 할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다분히 서인 편향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효종대에도 그러하지만 특히 현종대에 들어와 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은 서원을 당색별로 구분할 때 서인계 서원이 남인계에 비해 4배에 이르는 압도적다수(12개소: 3개소, 나머지 16개소는 당색 무관)를 점하고 있는 통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비록 갈등을 보이고 있기는 하더라도 집권세력인 漢黨系나 산림계가 당색에 있어 근본적으로는 서인에 속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첩설처라 하여 일단 거부된 사액요구가 서인계 서원의 경우는 바로 이들 서인관료의 特請에 의하여 대부분 특례로 사액내리게 되는 구제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영남학과에 대항하여 기호학통을 수립하고자 서원건립과사액 실현에 주력하던 서인계 산림들로부터 남인의 학통천명을 강화해 줄 남인계 서원에 어떤 도움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액과정에서 보이는, 한편으로는 통제하라는 왕명에 쫓아 防啓를 하면서

^{49) 《}書院謄錄》 권 1, 현종 원년 2월 19일.

도 자기당파 계통에는 서원장려의 필요성을 들어 사액을 종용하는, 이러한 당파적 편파성의 요소는 이후 서원정책이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선례를 남겼다. 숙종대에 보이는 첩설금지령의 잦은 신칙 속에서도 서원의 엄청난 수적 증가가 올 수 있었던 첩설의 단초는 이미 여기서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제향인물 위주의 사액경향은 서원으로 하여금 특정 인물을 드러내기 위한 제향 중심으로 변모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숙종대에 들어와 서원문제가 논의되기는 원년 9월에 호조판서 吳挺緯가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서원의 私建이 성행하고 있음과 院屬 및 保奴의 폐단을 들어,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를 요구함에서 비롯되었다.50) 이때 그는 각 지역의 서원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훼철까지 수반된 강력한 통제책의 수립을 희망하였으나, 비변사의 보고는 기왕의 것은 불문에붙이고 앞서 효종 8년(1657) 서필원의 요청으로 결정되었던 丁酉成命, 즉 "서원건립 때는 반드시 조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착실히 시행케하자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당시의 집권세력인 남인으로서도 훼철에 따른 사람의 반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때에도 현종대의 서인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沮喪된 士氣를 높이고 사람의 나아갈 바를 바로잡게 해야 한다는 許穆 등 儒臣系의 주장으로 特爲賜額의 형태로 사액이 빈번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첩설에도 불구하고 사액의 특전을 받았던 대표적 서원은 이황과 鄭逑를 제향하는 곳이었다. 이황의 도학자적 공덕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특히 정구의 경우는 숙종 초 집권파였던 기호남인의 학적 연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기호남인의 집권명분을 위한 도학적 정통성 수립이란 측면에서 그 존재의 顯揚이 필요하였던 것이다.51) 즉 서원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공정성과 객관적 기준 위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점차 당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0) 《}書院謄錄》 권 1, 숙종 원년 9월 28일.

⁵¹⁾ 이는 마치 효종, 현종대의 서인정권하에서 서인학통의 연원으로서 이이 성혼이, 집권세력의 학파로서 김장생이 추존되었던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신출척과 기사환국, 그리고 다시 갑술환국으로 이어지는 잦은 정변 속에 더욱 심화되게 마련이었다. 우선 경신출척으로 다시 정계에 복귀한 서인은, 서원이 너무 과다한데다 장수의 실효는 없고 오히려 수령권 을 위협하며 유생들이 群居遊談하거나 酒食餔餟하여 폐단만 낳는 장소로 전 락되었다는 大司成 金萬重의 서원폐 상소52)를 계기로 서원 신설금지와 일체 의 사액을 불허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서인계는 금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건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존 서 원에 대한 추향에 주력하였다. 즉 이이가 황해도 지역에 다수 분포한 서원 에, 송준길이 김장생이나 宋麟壽의 서원에 추향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서원건립금지령도 철저히 시행되지는 않았다. 《俎豆錄》의 통계는 이 기간 모 두 23개처의 서원이 건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원금지령과 관련하여 주목 되는 것은 이 시기에 사우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숫자는 모두 21개소로서 서원의 그것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금령을 피하여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우를 건립한데서 온 현상이었다. 따라서 건원 금지령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액도 열 군데 정도가 거부되었지만 그것은 첩설처의 경우였고 李恒福‧黃愼‧尹煌‧ 李恒 · 朴尙衷 · 李之菡 · 李穡 등 서인계 내지 서인이 존봉하는 인물에 대해 서는 첩설처가 아니라 하여 사액이 내려지고 있어서 그 숫자는 모두 19개소 (사우 포함)에 달하였다. 첩설불허의 정책으로 인하여 점차 사액을 받는 서원 제향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새로운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 후 남인정권하에서의 서원정책도 이러한 면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지만, 단 앞서 경신출척 때 서인의 공격으로 적지 않은 被禍者를 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신원하고 표창한다는 뜻에서 서원건립이 이루어지고, 또 서인에 의해 거부되었던 남인계 서원에 대한 사액이 첩설불허라는 금령과 관계없이 다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남인계의 산림으로 일컬어지며 경신년에 관작이 박탈되었던 허목을 제향하는 서원이 2~3년 사이에 4개처나 건립과 동시에 사액되고 尹善道나 洪宇遠과

^{52) 《}肅宗實錄》 권 11, 숙종 7년 6월 계미.

같이 유학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인물이 禮訟 때 죄를 입었다는 사실로 입향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첩설처 사액불허라는 금령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제향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킨 데서 초래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도학자여야 한다는 제향기준을 무너뜨려 후일 서원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사우와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남인세력의 몰락과 서인 장기집권의 기반이 되었던 숙종 20년(1694) 갑술 환국 이후의 조정의 대서원시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국에 따르는 집권명분 확립과 피화자의 신원이란 면에서 한편으로는 서원장려책이 진행되면서. 다 른 한편으로는 첩설과 남설, 그리고 서원폐에 대한 통제책의 마련이라는 일 견 상반된 과정을 밟고 있었다. 전대 이래의 첩설금지책이 여전히 발효중임 에도 불구하고 노론의 영수이고 학자이던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이 환국 후 1~2년 사이에 이미 4개소나 창건되고 추향은 9여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숙종 말년까지는 26년간에 걸쳐 무려 20개소. 14개소가 각기 건립. 추배되고 있었다.53) 송시열에 대한 제향이 이렇게 성행한 것은 물론 그 자신의 유학자 로서의 위치도 있겠지만, 노론의 영수로서 기사년에 피화된 사실이 이 때 와 서 신원의 의미를 지니고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며, 물론 그 자체가 노론정 권의 집권명분을 강화해주고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한 조정의 이와 같은 특정 인물 이나 執權黨系 피화인의 서원에 대한 우대와 장려책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서원사건금령이나 첩설처 사액불허라는 통제책을 국가 스스로 무효화하고 동일 인물에 대한 첩설과 자격부족자까지도 입향케하는 남설(猥享) 현상을 유발, 결국 숙종 일대에 사액처만 131개소(사우 포함, 서원 명칭은 105개소), 창 건처는 300여 개소(사우 포함, 숙종 45년에 상당수가 훼철되었으나 분명한 숫자를 알 수 없기에 개략적으로 표시함)라는 비정상적인 서원의 격증현상을 초래했다.

한편 향촌 사림은 점차 벌열성과 폐쇄적 경향을 보이고54) 있는 중앙의 권

^{53)《}俎豆錄》 및《列邑院宇事蹟》에서 摘出.

⁵⁴⁾ 이는 숙종 초 이후 외척세의 대두가 현저하고 송시열 등의 산림이 이들과 결합 해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현상이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에 대한 비판에서 少論 黨의 성립이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鄭萬祚, 〈영조대 초반의 蕩平策과 蕩 平波의 활동〉, 《震檀學報》 56, 1983, 29 · 50쪽 참조).

력구조와 연관을 맺어 출세와 향촌사회에서의 특전을 부여받고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중앙관인의 정치적 욕구와 향촌 사림의 현실적 이익추구라는 이해관계가 서원이란 매개체를 통하여 일치하고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첩설과 남설, 그리고 사액의 남발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건립·운영되는 서원이 그 본래의 士子藏修라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서원은 祀賢의 기능만 남게 되었고 따라서 처음부터 향사를 목적으로 하였던 사우와 별다른 구별이 주어지지 않게 되었다. 숙종 20년(1694) 이후 서원장려책이 추진되면서도 전례 없이 조정에서의 서원대책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는 것은 이제 서원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갑술환국 직후 좌의정 朴世采는 文廟從祀人과 大名賢을 제외하고는 일체 첩설을 불허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듬해 논의에서는 좌의정 柳尚運과 영의정 南九萬의 건의에 따라 조정의 허락을 받지 않은 私建書院에 대해서는 훼철할 것과, 이를 어기는 지방관은 논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첩설처는 사액치 말 것을 정책으로 결정하였다.55) 이후에도 때때로 첩설금령은 계속 신칙되었으나 종국적으로 유교를 폐기할 수 없는 한 서원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명분론을 앞세운 노론측의 송시열 서원건립운동 앞에 段院까지 포함된 금령의 강력한 집행은 유명무실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장려책을 주장하던 노론계 일각에서 이에 동조하게 되는 숙종 29년 이후 비로소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즉 戚族으로 명망이 있던 閔鎭遠이 서원폐를 들어 私建時의 지방관에 대한 논죄와 수창유생에 대한 停擧를 요청했고 뒤이어 그의 형인 閔鎭厚가 예조판서가 됨에 첩설폐를 극론하고 請額疏를 받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이어 숙종 33년 사헌부가 서원폐근절 방법의 하나로 제시한 一處合享事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는 난점이 많다고 하여 폐기하면서 그 대신 금지령을 어기고 사사로이 세운 곳에 대한 훼철을 다시 결정하고 말썽많은 피역문제와 관련, 院生에 대한 정례적인 考

^{55) 《}書院謄錄》 권 3, 숙종 21년 6월 3일.

講을 시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때 결정된 훼철책이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 한 것은 7,8년 지난 숙종 39년에 왕이 스스로 一切之法이 없기 때문에 첩설 이 온다고 첩설금지를 하명(이를 癸巳受敎라 한다)하고 예조판서 민진후가 서 원문제를 전담하면서부터였다. 이 때 그는 서원의 私建時의 논죄사항에 대해 이를 막지 못한 감사는 推考, 수령은 파직하며 수창유생은 3년간 과거에 응 시하지 못하게 하고, 일단 앞서 민진원이 사건에 대한 통제를 요구했던 숙종 29년(癸未)을 기준연도로 하여 이 해 이후의 不禀朝廷 私自創建한 곳의 조사 를 각 도 감사에게 하명토록 건의.56) 왕이 이를 따름으로써 비로소 서원정리 의 첫발을 내딪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숙종 40년 평안도의 조사보고 서가 올라 왔을때, 처음 민진후는 유보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좌의정 金昌集 등의 毁院 찬성에 따라 하나하나 심의, 金昌集과 민진후가 재고를 요청한 箕 子書院 등 3개소만 남기고 일체 훼철케 하였다57)(이를 甲午定式이라 하며 영조 17년의 훼철시 기준연도가 됨). 이후 丙申處分으로 조정이 혼란함으로 인해 조 사는 한때 중단되었다가 숙종 43년(1717) 역시 예조판서 민진후의 재촉58)으 로 甲午定式이 재천명되면서 각 도의 私建書院의 명단이 보고되고, 주로 왕 과 민진후 사이의 심의에 따라 毁置가 결정되었다. 이 때 훼철이 결정된 수 가 얼마나 되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慶尙左道暗行御史別單에 보고된 것만 80 여개이고 그 중 일부인 16개소에 대한 심의 결과, 민진후의 특청에 따라 거 제와 長鬐의 송시열 서원 등 7개처는 남겨두고 나머지 안동의 金涌・權字 등의 서원 등 9개소는 훼철토록 판정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때 毁置의 심사기준이 첩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향자의 인물여하에 있었고, 그것도 공개적이 아닌 왕과 민진후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던 관계상 객관적이고 공정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수십 개소에 달하는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이 여전히 훼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이 때의 훼철책이 당파적 색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56) 《}承政院日記》 479책, 숙종 39년 7월 30일 을해.

^{57) 《}肅宗實錄》 권 55, 숙종 40년 7월 경술 - 을묘.

^{58) 《}書院謄錄》 권 6, 숙종 43년 10월 10일.

경종대에 들어와 취하여진 서원정책은 辛丑嶽으로 정권이 소론에게로 넘어가자 서원건립과 청액운동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어 국가의 殿院 대책은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하였다. 즉 우선 숙종 때 훼철되었던 李惟泰 서원의재건과 사액을 요구하는 상소가 처음 나온 이래 崔錫鼎‧李景奭‧尹宣擧‧尹拯‧李世龜 등 소론계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의 건립 허용과 사액을 청하는 향촌 유생의 상소가 산적하고 또 소론 내에서도 이들 인물을 포증해야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소론계 서원에 대한 장려가 있기에 앞서당시의 소론 당로자들은 미결인채 남아 있는 숙종 때의 甲午定式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 때 훼철이 결정되고서 아직 그 집행을 못한 곳도 있고, 또 禁令年度에 저촉되면서도 송시열 서원같이 제외되고 있는가 하면, 윤선거ㆍ윤증과 같이 소론계에서 존봉하는 인물의 서원은 훼철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소론으로서는 승복 못할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부소론계에서는 차라리 훼철령의 보다 철저한 시행을 통해 금령을 어겼음에도불구하고 특별한 예외조치로 제외되었던 노론계 서원까지 이 기회에 모두훼철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서원통제론자는 李明彦과 李眞儒였다. 숙종 말 嶺南 暗行御史로서 사사로이 세운 서원을 조사하였던 이명언은, 경종 2년(1722) 동부승지로 입시한 자리에서 서원이 祀賢 위주로 성격이 변함에 따라 사우와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지적, 이런 결과를 초래한 요인으로 첩설과 남설의 폐단을 비난하였으며 求請이 금지되어야만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59)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지금의 첩설처로는 송시열서원이 가장 많은데 그 인물이적절치 않으니 이것부터 먼저 훼철할 것을 요구, 훼철론의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노론계 서원 탄압책은 그러나 우의정李光佐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하고 단지 副司果 李眞洙가 절충론으로 제시한 사액현판의 회수(撤額)로 낙착되어서 송시열서원은 華陽洞書院만 제외하고는 건립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撤額되고 말았다.

경종대의 서원시책은 이와 같이 노론계 서원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통

^{59) 《}承政院日記》 544책, 경종 2년 9월 5일.

제책이 강구되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첩설과 남설의 폐단이 여지없이 비판되었다. 특히 화양동서원에서부터 비롯된 지방관의 토지 획급과 경내의 大村을 점거하여(이를 書院村이라 함) 사실상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비리 등,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던 서원의 병폐가 폭로되어 서원문제에 대한 일대시정책이 요망된다는 여론의 공감대를 조성, 이것이 영조대에 들어가 대대적인 서원훼철을 단행케 하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서원시책은 영조대에 들어와서도 그 초기는 선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乙巳換局으로 노론의 집권과 함께 앞서 경종대에 黜享된 노론계인물이 모두 復享되며 철거되었던 현판도 다시 걸리고 송시열·權尚夏 등의서원에 사액이 내려지게 되며 특히, 辛壬獻으로 피화하였던 노론 대신에 대한 신원과 함께 四忠書院이 세워지고 사액되었다. 그러나 이러는 과정에서도앞서 경종대 드러난 서원폐단을 의식하여 첩설은 억제되고 그 시정책으로서書院位田免稅에 관한 경종 초의 결정을 법제화하는 조처가 뒤따랐다. 그런데영조대에 들어와 특이한 현상은 집권당인 노론의 소론계 서원에 대한 탄압요구를 왕이 여러 가지 구실로 거부하고 있으며, 壬寅獻에 연루되어 죽임을당한 노론계 인물의 사우를 세우려는 요구에 대해서도 신원이 꼭 享祀로만나타날 필요는 없다고 물리치고, 상기한 老論四臣의 서원도 첩설을 비난하는자리에서 왕의 발의로 한 곳에만 合享케 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왕이 서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전대에서 볼 수없었던 현상이었다. 이것은 서원정책이 탕평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말해준다.

서원훼철에 대한 영조의 관심이 주어지기는 동왕 3년(1727) 修撰 趙鎭禧가서원이 藏修의 실효는 없으면서 양민을 冒入, 逋逃之藪(良役弊 誘發要因)가 되어 민폐만 끼치고 있다고 서원폐를 지적하며 첩설처에 대해 조사를 청한 데서부터였다.60) 이에 왕은 文勝의 폐를 경계하면서 조사되는 대로 훼철하도록하명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경연에서 參贊官 趙德隣과 檢討官 申致謹이,서원 첩설이 당론의 격화 때문에 온 현상임을 지적, 서원이 장수처로서의 기

^{60) 《}承政院日記》 651책, 영조 3년 12월 11일.

능은 이미 상실하고 편론의 쟁투장으로 변해버렸으며, 그러다보니 권세있는 집안이 그 선조를 드러내고, 향혼士子의 拔身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고 극론하자 왕도 이를 긍정하고 앞으로 어떤 請額도 일체 이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신칙하였다. 조진희와 신치근이 거론한 서원폐, 즉 逋逃之藪요, 당론의 소굴이라는 지적은 대체로 서원문제에 관한 소론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이 것은 영조 5년(1729)부터 경연에 입시하여 영조의 時務觀에 큰 영향을 주었던 梁得中의 書院虛僞說과 함께 영조의 서원관을 부정적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방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영조의 탕평책은 동왕 5년에 들어와 趙文命·宋寅明·趙顯命 등의 탕평파가 형성되고 여기에 洪致中·李台佐·李集·金在魯 등 노·소론의 緩論者가가담, 소위 탕평정권을 형성하면서 본 궤도에 오르는데, 그 특징은 정치의 안정을 위해 노·소론간의 시비의 초점이던 辛壬獻에 대한 충역 문제를 절충하여 老·少合仕를 유지하는 한편, 이를 깨트릴 일체의 분쟁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하자는 것이었다. 탕평파의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각당파의 집권명분과 신원의 의미를 지닌, 도학자나 피화인의 제향처로서의 서원은, 그 만큼 각 당파의 인물시비를 야기할 위험을 지닌 요소였고, 또 이는숙종·경종대의 정치적 분쟁을 통해 사실로 이미 증명된 바였다. 그러므로 탕평파의 경우 서원문제가 분쟁적 요소로 확대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였다.영조 5년에 앞서 조진희의 건의에 따라 하명되었던 각도 서원의 疊設處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자, 일체 훼철론을 펴는 왕에게 분쟁의 우려를 들어 撒額이란 완화책을 건의하고, 또 송시열·윤증 서원 등 노·소의 이해가 상충하는 서원은 거기에서도 제외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였다.

영조 14년 일부의 안동사람들이 노론계의 지원을 받아 金尚憲書院을 세우려다, 이를 방해하고 끝내 殷院하여 버린 남인과 충돌한 사건은 서원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탕평파는 훼원에 가담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재건을 불허하는 兩治兩解의 방법을 건의하였고, 왕 또한 이를 계기로 자신의 治世 원년(乙巳年) 이후 그 때까지 창건된 서원에 관한 조사를 각 도에 분부, 창건 당시의 지방관과 수창유생에 대한 처벌을 시도하였다.

영조 17년에 단행된 私建서원에 대한 일체의 훼철책은 한 해 전인 영조

어야 한다. 이 때 왕은 그 때까지 逆으로 단정하던 壬寅獄을 誣獄으로 판정, 被罪者를 신원시켜 노론측 명분에 승리를 안겨주면서도 정치적 보복은 일체용인하지 않고, 그 때까지 취해오던 탕평책도 변함없이 추구되어야 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이러던 차에 함경도 북청의 李恒福 제향서원에 李光佐追配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광좌는 소론의 영수로서 노론은 그를 戊申亂의 逆魁로까지 몰아 공격하였던 만큼, 그가 비록 그 先祖의 서원이라 하더라도 사액이내려진 서원에 조정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향되었다는 사실은 노론의 배척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하였다. 실제로도 追配사실이 알려진 직후 노론계인 예조판서 徐宗伋이 맨 먼저 이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와 장차 노·소론간에 이광좌 인물시비를 놓고 분쟁이 크게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 이에 왕은 金在魯·宋寅明‧趙顯命 등 탕평파의 건의를 받아들여 숙종 40년(1714)의 甲午定式

이후 그 때까지 사건된 모든 서원·사우에 대한 일체 훼철을 하명하였다. 훼 철의 동기가 당쟁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었으니 만큼, 훼철에 임해 서도 편파적인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일체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중앙 에서 훼원감독자까지 파견하여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훼철하였다. 이 때 훼 철된 것은 대개 170여개소로 말해지고 있으며 지방관에 대한 유배까지 규정 한 벌칙을 강화, 향후 私建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조처로

16년에 단행된 庚申處分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였던 데서 이해되

그렇지만 이 훼철조치는 서원이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병폐까지를 척결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유교이념을 폐기할 수 없는 한 서원이 부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을 뿐 아니라, 당쟁적 요소의 제거가 애초의 목적이었으니만큼 거기까지는 힘이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영조 탕평책의 성과와 한계를이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원의 사회적 병폐는 여전하였고이제는 정치적 요소가 제거된 대신 후손의 서원관여가 현저해져 猥享은 물론이고 향존민에게 미치는 사회적 폐단은 전일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며, 이것이 19세기 이후의 세도정치하에서 더욱 조장됨으로써 결국은 대원군에 의한 대대적인 서원철폐를 맞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서원의 첩설과 남설이란 큰 폐단은 일단 가라앉았다.

〈鄭萬祚〉

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1) 조선 중기 향권의 의미

조선시대 향촌사회는 군현제로 편제되어 있었고 각 군현에 파견된 수령은 사법·행정 등 일읍의 통치권을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었다. 이 향촌사회 최고권력으로서의 수령권은 조선 전 시기를 통해 부정된 적이 없었다. 왕명을 대행하는 '命吏'로서 수령은 향촌사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수령권이 국가권력에 기반한 것이고 국가권력이 당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었던 만큼, 왕권이 절대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령권이 절대시되기는 하였지만, 수령이 향촌사회에서 가지는 권력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수령은 중앙 집권세력과의 관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었으며, 향촌사회에서 재지사족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수령은 향촌사회의 각종 지배기구를 통하여 향촌사회를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 중기 향촌사회 지배기구를 장악하고 있던 사족들과는 일종의 보험, 대립관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따라서 향촌사회에서 수령권은 군현 단위에서 사족들이 누렸던 향권과 관련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직까지 일반 백성은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주체로 서지는 못한 단계에 머물러 다만 피보호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士夫나 土族을 국가의 '元氣', 수령을 牧民官으로 부르고 있었던 사실은 당시의 권력구조에서 사족, 수령, 민이 차지하는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족의 '鄕權'이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종래에는 향권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기가 힘든 상태였다.¹⁾ 이는 조선시대 향촌사회를 이해함에

^{1) 197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鄕權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였다. 이같은 사정은 1972년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典律通補》를 번역 간행할 때, 刑典 禁令에 수록된 '鄕戰'을 石戰·索戰·車戰 같은 시골의 각종 놀이로 번역하고 있었던 데서 발견할 수 있다(법제처, 《전율통보(하권》), 497·503쪽 참조). 당시 법제처의

있어 제도사적인 차원에서 군현제의 정비라던가, 신분사의 차원에서 양반이나 향리 등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되어왔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군현제의 전면적 실시가 고려와 조선을 구분짓는 큰 특징의 하나로 이해되면서, 군현에서의 권력관계면에서는 수령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수령 밑에 실무 집행자로서의 향리가 중간층으로 수령에 기생한다는 차원에서의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향촌사회의 지배기구와 향촌 사회세력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2) 국가의 지배방식을 이들 각 사회세력과의 관계에서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권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조선 향촌사회에서의 향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유향소의 임원이 가지고 있던 향촌사회 운영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보다 넓게는 항임에 대한인사권까지를 포함하는 향촌사회 지배신분층으로서의 사족이 갖고 있었던향촌사회 운영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16세기 이래 조야에서 공히 사용되고있던 용어였다.3)

향촌사회에서 수령권 외에 향권이 문제시되었던 것은 조선왕조의 향촌사회 지배방식 및 재지사족의 존재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는 지방사회에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관의 행정조직 외에 재지사족이 중심이 된향촌 지배기구, 즉 유향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유향소는 기본적으로 각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는 재지 品官들의 기구로서, 경재소에 의해 통제되고는 있었지만 독자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국가가 아직까지 지방세력을 직접 통제하

번역은 1939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大典會通》을 간행할 때 붙였던 刑典禁制 '鄕戰' 항목의 頭註로 있는 日文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경인문화사 영인 본, 《大典會通》, 1972, 695쪽 참조).

그런데 이 '향전'은 시골에서의 각종 놀이가 아니라 조선 후기 향권을 둘러싼 지방세력간의 다툼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조대 편찬된《續大典》刑典에 처음 실렸던 항목이다. 그간의 향권에 대한 이해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 겠다.

^{2) 1970}년대 이후 새로운 향촌사회 연구에 기초를 제공한 저서로서는 다음을 들수 있다.

金龍德,《鄉廳研究》(韓國研究院, 1978).

李樹健,《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李泰鎮,《韓國社會史硏究》(知識産業社, 1986).

³⁾ 金仁杰, 《조선후기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18, 19세기「鄕權」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6~10쪽.

지 못하던 상황에서 그들을 매개로 통치권을 행사해야 했던 사정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선초의 유향소는 수령권을 위협할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세력가와도 연결되는 등, 치폐를 거듭하면서도 지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이 유향소의 임원이 가지고 있던 권한은 일정한 임기를 채우면 떠나야하는 수령의 그것에 못지않은 것이었다. 좁은 의미에서 향권이라고할 때 바로 이 향임이 가졌던 권한을 지칭하였던 것도 유향소 및 그 임원의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향촌사회에서 향임은 鄕案(鄕籍)에 올라야만 그 직책을 맡을 수 있었고, 향임의 천망은 향안에 오른 鄕員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기때문에, 향권은 향임의 인사권 및 향안에 어느 인물을 올릴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鄕籍權)까지를 포함하는 뜻으로도 널리 쓰였다. 이는 재지사족이 향안과 향안 구성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향회를 통해 결속하고 있던 16, 17세기의 향촌사회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실들은 조선 중기 관인들이 지방에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관인들이 지방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권력의 이해만이 아니라 재지사족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고, 이 양자를 결합시키는 향혼사회 지배기구를 매개로 지방사회에서 향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재지사족은 향혼사회에서의 그들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향회, 유향소, 서원 등 그들 나름의 지배기구를 만들어 향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결코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관권으로부터 일정한 독자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실제 재지사족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수령의 정사에 득실이나 시비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勿論官政得失', '勿論是非官政' 등과 같은 조목을 필히 거론하고 있었다. 사사로운 일로 관부에 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자 했으며,5) 17세기 전반 상주에 거주하였던 月澗 李典 같 은 이는 노년에 아들에게 "州家의 정사득실을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

⁴⁾ 李泰鎭,〈土林派의 留鄉所復立運動(上)(下)-朝鮮初期 性理學定着의 社會的 背景->(《震檀學報》34·35, 1972·1973).

⁵⁾ 李 珥、《擊蒙要訣》接人章.

혹 와서 그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응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居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6) 화를 초래할 위험 이라던가 백성과 수령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언제든지 入朝(居官)할 가능성을 갖고 있던 그들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윤리의 차원에서 위와 같은 거향관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재지사족의 거향관은 정치적인 의미를 강하게 갖는 것으로 수령의 절대권을 인정한 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여 향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 이 향권에 수령이 간섭하는 것도 그들은 반가워할 일이 아니었다. 李珥가 해주에서 향약을 실시하는 가운데 수령의 관령은 향임(官任)을 통해 서 처리하고, 그 향임을 사족들의 중론으로 통제하면서 사족들의 억울한 일 에는 수령에게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은7) 사족의 향권이 수령권에 대해 상대적 독자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수중에 장악해 나감에 따라 이제 향촌사회에서 향권은 향론의 주도권을 의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재지사족의 향촌사회 지배권을 뜻하게 된 것이다. 그 중심 내용은 향촌사회 지배기구의 인사권과 부세운영권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마치 중앙 조정에서의 朝權이 중앙 권력기구의 인사권이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이같은 재지사족의 향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모체가 되었던 것은 향안과 향회였는데, 사족

⁶⁾ 李身圭,《酉溪集》 권 3, 歡侍日錄.

이신규는 西涯 柳成龍의 문하로, 愚伏 鄭經世와 교유하였던 月澗 李墺의 아들로서 50이 가까운 나이에도 부친을 옆에 모시면서 부친이 내리는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 기록이 《歡侍日錄》이다. 이전은 蒼石 李埈의 형이다.

⁷⁾ 李 珥、《栗谷全書》、海州一鄉約束、

^{8) 《}肅宗實錄》 권 4, 숙종 원년 윤5월 갑인.

숙종은 초년에 남인의 견해를 받아들여 당론의 폐를 지적하는 가운데, "국량이 좁은 미세한 무리들이 儒名을 빌려 산림에 머물면서 朝權을 틀어잡고 있다. 무 릿 인물의 진퇴나 대소 정사를 필히 먼저 양인(송시열, 송준길)에게 품의한 후에 왕에게 보고하니 극히 한심한 일이다"라고 조정의 서인들을 비판한 바 있다. 위 말에서 조권이 조정에서의 권력으로, 그 핵심은 인사권 정책결정권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은 향안을 매개로 자신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 향안 구성원들의 모임인 향회를 통해 향권을 행사하면서 吏民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향촌사회에서의 향권도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변질되고, 사족들의 향권에의 참여도 극히 제한되게 되었다. 1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사족들의 결속력이 와해되는 가운데 향론은 분열되고, 향안이 파치되는 것과 아울러 향회도 부정되고 그 성격이 바뀌게 되며 향권의 의미도 축소 변질돼 나갔다. 이제 향회는 수령의 부세자문기관으로서 수령에 직속되게 되었으며, 향권의 의미도 향임이 가지는 권한(또는 유임이나 향임을 수령에게 추천하는 권한) 정도로 협소해졌다. 이는 기존 사족이 누려왔던 향권이 부정되고 향권이 수령권에 복속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같은 상황에서 사족들은 문중조직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도 하였으나 향권에서의 소외라는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다.

이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사족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동요와 일반 평민들의 경제적 상승이 자리잡고 있었고, 동시에 18세기 이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수령권 강화책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기반의 변동 속에서 새롭게 부민층이 성장해 나옴에 따라 수령은 이제 더이상 사족들만을 향촌사회 통치에서 반려자로 삼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이 부민층들을 향촌통제의 새로운 동반자로 삼게 되면서 향권 담당층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 조선 후기에는 구래의 사족에게는 못미쳤던 층, 또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층들이 수령권을 배경으로 향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족의 향권은 관권, 수령권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결국 종래 사족들이 누려왔던 향권은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되며, 이 후 향권은 유임이나 향임들이 갖는 권한이란 좁은 의미로 국한되는 변화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향촌사회의 권력을 둘러싼 각종 쟁단이 야기되었다. 18세기 향전은 이같은 변화과정에서 나타난것이었다. 초기 향전이 사족의 후예라 할 유림층과 수령의 비호를 받는 향임층의 대립으로 시작한 것은 향전이 구래의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과의 마찰을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의 향권이 수령에 의해 부정되고 향권이 수령권에 복속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것, 그리고 그 좁은 의미의

향권을 사족들이 이제 더이상 자신들의 통제하에 둘 수 없게 되는 것 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향권의 의미가 이렇게 축소되게 된 후에는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임을 둘러싼 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19세기의 향전이 주로 유임이나 향임자리를 둘러싼 쟁단을 의미하였던 것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이 후 19세기에는 18세기의 향권과 같은 내용을 '邑權'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이는 축소된 의미의 향권,즉 읍의 행정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그 향권도 독자성을 잃고 수령에 의해 천단되는 것이 일반이었다. 향임이 아전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사족의 향권은 수령권과의 관계 속에서 수령이 사족을 매개로 하여 향촌사회를 통제할 때는 사족의 일향 지배권을 의미하다가 새로운 담 당층으로 향권이 이동하며서 기존의 재지사족의 향권이 부정되고 향권의 의미도 축소, 변화되는 식으로 변동되었던 것이다.

2) 사족의 향권의 내용

조선 중기의 기록들에서 사족의 향권을 규정하고 있는 기사를 찾기는 어렵다. 국가가 향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지방사회를 수령을 매개로 해서 통제하고 있었으며, 수령권을 위협하는 재지의 지배층들을 통제하기 위해 유향소를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이 유향소를 통제했던 경재소도 법적 기관이라기보다는 당시 지배신분층이었던 사족들의 관행에 의지하는 바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수령은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읍 사정에도 밝지 못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역을 차출하며 국가의 정책을 하달하는 데 각 지역의 공동체적인 조직이나 지배층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⁹⁾ 향혼사회에서 수령통치의 매개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족신분층이었다. 이들이 향혼에서 자신들의 출신 기반이기도 했던 향리층을 확실히 통제하고 향혼사회 권력을 장악

⁹⁾ 張顯光,《旅軒先生文集》 권7, 鄉社堂記.

하게 된 것은 지역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16세기 중엽으로 이해되고 있다.10 16세기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던 품관층이 바로 이들이었는데, 국가는 이들 품관층을 유향소를 통해 결집시키고, 이들을 경재소를 매개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령을 도와 읍사를 처리하는 가운데 이들의위치는 지방사회의 권력구조 내에서 확고해지게 되었으니 향권도 바로 이같은 지방사회의 권력구조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6세기 초 향권이 바로 유향소의 임원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중종 11년(1516) 눌재 박상이 쓴 아래의 光州鄕案 서문은 향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우리 고을의 좌수 김숙양, 별감 김경보·설숭개·유자화가 눌재(나)에게 편지를 보내 가로되 … 지금 향소의 임원이 된 자는 邑長(수령)의 다음으로 일향의 권병(一鄕之權柄)을 주장하니 이서들이 엎드려 그들의 명을 받들고, 여항의 사람들이 몸을 굽혀 그 위세에 아부하고 의탁합니다. 크게는 조용조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그러져 혹 그 커다란 이익을 움직이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기를 비루한 자들이 천금을 잡은 것 같이 합니다. 이는이른바 향소라는 것이 온 고을이 쫓는 별종의 이권을 농단하고 그 사이에 간계와 위세를 부리고 행사함을 가리키는 것이니 진실로 국가가 그것을 세운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朴 祥,《訥齋續集》권 4,光州鄉案序).

위 글에는 향소의 임원이 수령 다음으로 '一鄉之權柄'을 장악하여 이서들과 일반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향임이 주장하고 있던 '일향의 권병'이 곧 향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위의 글은 그 향권의 실질적인 내용이 조용조의 세금 부과 등 부세운영권이었음도 알게 해준다. 위의 글에서 이서와 여항인, 곧 吏民이 향임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음을 지적한 것도 이 부세운영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향권을 좌수・별감 등 향임이 장악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하는 향권은 좁은 의미의 것이고, 16~17세기의 향권은 보다 넓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다. 향임이 가졌던 권한은 물론 그 향임에

¹⁰⁾ 鄭震英、〈朝鮮前期 安東府 在地士族의 鄉村支配〉(《大丘史學》27, 1985).

대한 인사권까지를 포함하는 사족의 일향 지배권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흔히 鄕論의 주도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같은 점은 17세기 경재소 혁파 이후 유향소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려 했던 남원의 경우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인조 17년(1639) 경 남원에서는 향안작성과 그 운영의 문제에 관해서 향중의 논의를 수렴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어서 "일국에 일국의 공론이 있듯이 일향에는 일향의 공론이 있어 향선생이 독천할 것이 아니며 오직 사대부가 그 공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족이 중심이되어 수습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난을 겪고난 후에 경재소가 폐지되대, 사대부가 향권을 잡는 것을 천히 여겨 꺼리게 되어 모든 논의가 가부를 정할 수 없게 된 까닭에 무식하고 염치를 모르는 자들이 방자히 행동하며 鄕籍(향안)을 개인의 발신하는 사사로운 쪽지로 알고, 향임이 되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돈방석에 앉게 된 줄 알아 온갖 쟁단이 극에 달했다. 향적이 다시 타 버리고 향임에 제 사람을 쓸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도내 全・羅・靈 三大邑이 최근 모두 戰場이 되어 논의가 괴리되고 향적이 파해 없어졌는데 오직 光州 한 읍만이 향풍이 제대로 서서 지금까지 異論이 없는 것은 참판 박광옥이 기고봉과 박사암의 공의를 따라 약속을 엄히 세우고 영구히 전해 사대부로 하여금 논의를 주장하게 한 때문이었다(《龍城誌》권 3. 完議, 인조 17년).

위의 문제제기에서는 사대부가 향권을 잡는 것을 천히 여겨 꺼리게 되었기 때문에 향안에 문제가 야기되고 향임에 제 사람을 쓸 수가 없게 된 사실을 지적하고, 사대부가 그 모든 과정에서 향론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향권은 향임을 천망하는 권한 및 향안에의 입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향안에 입록시킬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중요했던 것은 향안에 등재되어야만 향임이 될 수 있었고, 또 향중의 제반사를 결정하는 향회의 구성원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향임의 천망이라던가 향안에의 입록 여부는 각 군현에서의 '大小鄕會'에서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향회의 논의를 주도하는

권한, 곧 향론의 주도권을 향권으로 인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위와 같이 향중의 제반 지배기구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각종 향직을 매개로 하여 향권의 핵심 내용이라 할 부세 운영권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향회를 통해 결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향회는 향안에 등재된 사족, 즉 향원들의 모임이었으므로 향회의 기반이 된 것은 향안이었다. 향안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통과된 향원들의 명단으로서 재지사족의 결속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고, 아울러 사족 자신들을 통제하는 기능도 행사하고 있었다. 이 향안에는 누대의 사족으로서 일정한 규약에 합당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매우 폐쇄적이었으며 재지사족의 신분적 권위의 상징이었다. 이향안 구성원들이 향회를 열어서 향안에 입록하는 자격을 심사하였으며 그밖에 향내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있었다.11)

이 때 향권의 행사는 향회와 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바, 그 행사 방식은 향회의 구성과도 관련하여 삼남지방의 경우 영남과 양호가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안동을 대표로 하는 영남의 경우에는 향회가 유향소(향소)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광주를 대표로 하는 호남의 경우는 유향소 조직 위에 따로 상부조직(鄉老·鄉長·鄉有司 등)을 갖추고 이 상부조직의 구성원이 향회를 주관하고 향소까지 통제하고 있었다. 많은 예를 확인할 수 없으나 호서의 경우 양자를 절충한 형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 향회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겠으나 대체로 1년에 춘추 2회 열리는 것이 보

¹¹⁾ 향안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 참조.

田川孝三,〈郷案について〉(《山本博士還曆紀念東洋史論叢》, 1972).

FUJIYA KAWASHIMA, The Local Gentry Association in Mid-Yi Dynasty Korea: A Preliminary Study of the Ch'anqnyŏng Hyangan, 1660~ 1838 (*《Journal of Korean Studies No. 2*), 1980).

^{——,} A Study of the Hyangan: Kin Groups and Aristocratic Localis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Korean Countryside (《Journal of Korean Studies No. 5》, 1984).

金仁杰、〈조선후기 郷案의 성격변화와 在地士族〉(《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論 叢》, 지식산업사, 1983).

신정희, 〈鄕案硏究〉(《大丘史學》 26, 1984).

김현영, 〈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사족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역사와 현실》2, 1989).

통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 구성원이 모이는 대회와 실무자들의 모임인 소회로 나누어 개최되고 있었다.

이 향회는 향내 제반 문제를 감독 지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향회에서는 주로 향안 입록자를 결정하고 향임을 천망하며, 사족 중심의 지배질서에서 벗어나는 제반 행위를 적발, 향소나 관으로 하여금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자를 포상하기도 하였다. 이 향회에서는 각종 규제조항을 두었는데, 그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鄕規는 향안에 오른 향원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규약이었지만 그 내용은 사족 자체의 결속문제 외에 吏民에 대한통제의 문제를 아우르고 있었다.

영남 향규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柳成龍이 撰한 安東〈新定十條〉가 '重鄉任 嚴會儀 厚霧倫 正鄉案 明禮俗 尊高年 禁非爲 治吏胥 均徭役 訓童夢' 으로 구성되어 있는바,¹²⁾ 그 중심 내용은 향회의 운영, 사족 자체의 결속, 이 서층에 대한 통제, 부역체제의 유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17세기 호남 담양 의 경우, 향회에서는 향적 수정, 향임 천망 외에 향임이나 향집강을 거스르 려는 상한을 다스리기도 하고, 향원의 공통된 이해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자나 사족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자를 징벌하고, 이서층의 작폐를 규 제하였던 것¹³⁾ 등에서도 향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재지사족은 그들의 신분적 권위의 상징이었던 향안을 모체로 한 향회를 통해 향권을 장악하고 향소 등을 통해 이민을 지배하고 있었는바, 향 권의 핵심 내용은 향촌사회의 제 권력기구에 대한 인사권과 부세운영권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실무를 집행하는 향소의 향임은 그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혁혁한 사족으로서는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보인다. 그 일이 매우 고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경재소 혁과, 영장사목의 반포 등으로 그 지위가 열악해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4) 따라서 같은 향안에 오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점차 향소의 소임을 맡은 인물이 소속한 가문과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괴리현상이 나타나고도 있었다.

^{12)《}永嘉誌》,新定十條.

¹³⁾ 全炯澤, 〈17세기 담양의 鄕會와 鄕所〉(《韓國史研究》64, 1989).

¹⁴⁾ 金龍德, 앞의 책, 46~48쪽.

위와 같은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체제는 일시에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향촌사회 외부로는 왕조 초기 관권을 매개로 한 중앙집권세력과 대항하면서, 안으로는 지주적 기반의 확립과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촌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세력이었던 향리층을 배제하고 하층민을 그들의 통제하에 결속시켜 나가는 가운데 그같은 체제를 갖출 수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 전기의 유향소복립운동, 위로부터의 향약실시운동 등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운동형태였다. 이같은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해결의 방향은 이후 향촌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향촌사회에서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재지사족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확인시킨 것도 성과의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재지사족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권력장치를 향촌사회내에 마련하면서도 국가권력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권력과의 타협점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향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 중기의 향권은 관권(수령권)과 대립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재지사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향회나 유향소(향소) 등의 권력기구도 수령의 행정을 보좌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수령은 당시 사족의 지지 위에서 그같은 권력기구의 도움을 받아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다고하겠다.

3) 수령권 강화와 사족의 향권 상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선 중기의 향권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하나는 향촌사회 지배기구의 직임, 특히 유향소(향소)의 임원(향임)이 가지는 권한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이 때 향권의 주된 내용은 吏民에 대한 통제권과 부세운영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좁은 의미의 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향권은 향임이 가졌던 권한 및 향임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하는 재지사족의 일향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향공론, 즉 향론 주도권이 그것이다.

조선 중기의 재지사족은 향안과 향회를 기반으로 하여 향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관권(수령권)과의 타협을 전제로 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아래로는 吏民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향촌사회에서 관권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이었다. 이 시기 재지사족은 특권신분층으로서 자신들의 신분적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배기구를 향촌사회내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이를 매개로 하여 수령권이 관철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구조는 결코 완결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회가 변동하면서 끊임없이 보완이 요구되었고, 특히 향촌사회에서 사회모순을 야기하는 주체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재지사족은 지속적인 자기비판과 자신들의 결속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향약이나 향규가 관권과의 마찰을 극도로 자제하고 이민의 통제와 아울러 자신들의 통제를 중요한문제로 강조하였던 것도 바로 그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과의 모순은 사족의 향권이 안정적일 때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다. 사족의 향촌사회 내에서의 지위가 약화되고, 그들이 향임 등 향촌 지배기구의 직임을 맡는 충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제 수령은 사족들만을 향촌지배의 동반자로 삼을 수는 없게 되었다. 여기에는 경제력이나 신분상의 분화에 따른 사족들 자체의 분열, 즉 향론의 분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령의 견제와 吏鄕層들의 도전이 자리잡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사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이향층은 물론 부민층들이 새롭게 향권에 접근하고 있었는바, 수령은 바로이들을 향촌지배에 새롭게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수령이 향촌사회를 통치하는 데 있어 사족만을 동반자로 삼았던 것은 아니고, 사족들과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만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사족들이 향촌 지배기구를 이용하여 이민을 장악하고 있었기때문에 사족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인데, 이제 그같은 조건에 변화가 나타나면서부터 수령은 새로운 동반자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사족의 분열만이 아니라 왕권강화에 따른 정부의 수령권 강화책, 그리고 정부의 '抑强扶弱'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 기

존 재지사족의 향권은 부정되고 향권의 의미도 향촌지배기구의 직임이 갖는 권한이란 좁은 뜻으로 축소되게 되었다.

수령권 강화책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관주도의 향촌통제책은 물론 그 이전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지만, 이 시기의 그것은 부세운영에 있어 사족의 간여를 배제하고 그 운영을 수령이 직접 자신의 관리 아래에 두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같은 점은 18세기 사족이 주도하여 실시하고자 했던 향약에서 부세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다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남원인 崔是翁의 아래와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시옹은 숙종 38년(1712) 남원부사에게 보낸편지에서, 인조대 실시하였던 '鄕約之規'가 해이해진 뒤 향청과 질청(作廳)이모두 향약의 이름을 꺼려 없애려 하고, 사대부 또한 그 중독을 피해 시비에 끼어들지 않으려 하므로 향소와 서리가 '聯名作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奉公일절은 향약 중 하나의 일인데, 환곡 부역의 포홈 적체가 과연 士夫와 良民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향풍이 어그러진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위 두 문제는 향약중의 大節로서 一番人이 심히 꺼려하는 바입니다. 그간에 혹 사사로움에 끌린 바 없지 않았겠지만, 어찌 남의 말을 전혀 생각치 않고 오로지 사사로운 뜻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복고(향약시행)의 뜻을 가지고도 마저 이 두 가지(환곡, 부역)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이는 목구멍을 막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고 가라고 하면서 다리를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崔是翁,《東岡遺稿》권 2, 與李地主聖漢).

위 편지 내용은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질서가 향임층과 이서들에 의해 부정되면서 관에서 인정하는 향약 역시 환곡이나 부역의 문제를 배제한 것이어서는 향약 본연의 의미가 살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 들어와 이미 부세운영권의 문제는 사족의 손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향회가 사족들의 자치기관에서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와 관련한 현상이었다.

이같은 변화는 정부의 향촌통제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숙종대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관 주도의 향촌통제책은 일단 숙종 37년(1711)〈里定法〉 으로 제도적 정비를 보게 되는데, 이 이정법체제는 사족의 부세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숙종 37년 12월〈양역변통절목〉의 반포와 함께 하달된 이정법체제는 흔히 교화로 표현되는 부문에서는 士夫(사족양반)를 끌어들여 책임을 맡기면서도, 기타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부세문제 등은 중간담당층에게 맡기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정책이 갖는 의미가 바로 수령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려 했던 향약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한편 위의 이정법은 숙종 39년 비변사 八道句管堂上 有司堂上制로 보완된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비변사에서 당상관으로 하여금 각 도에서 올라오는 공문 및 각종의 공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각 도를 맡는 구관당상을 두고 유사당상 4인으로 하여금 팔도의 구관당상을 돕는 차원에서 각각 2도 씩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 후 지방에 파견된 수령들은 임지에 부임하기 전 본도 구관당상을 더 찾아보아야 하게 되었다. 구관당상제를 둔 것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지방관들을 비변사에서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시기 향촌사회의 문제가중앙에서도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아직까지 사족의 특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체제를 부정하고 사족들에 의해 장악되어 왔던 향권을 관의 통제 하에 복속시키려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정책의 배경이 된 것은 사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위축되고, 사족 내부의 분열에 따른 향론의 불일치로 기존 사족의 향권이 원만히 행사되기 어려워지고 있었던 사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당시 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양역변통절목에서 수령의 권농기능이 특히 강조되었던 것은 그같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숙종 21, 22년의 대기근과 계속되는 전염병 등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부민층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해 주전이나 부민납속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수령들에게 권농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향촌사회 운영에서 부민층이 주목되기 시작한 점도 당시의 경제적 변동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현종 원년 (1660)의 〈募穀別單〉에 보이는바, 납속정책이 양천민을 배제한 것이 아니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사족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던데 반해,15) 이 후 부민층이 납속책의 기본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국가의 향촌운영에서동반자로 삼았던 층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점은 영조 8년(1732)의〈勸分富民施賞節目〉에서 납속의 주체를 부민으로 명시하고 시상의 내용도 보다 구체화시킨 데서 확인된다. 영조는 관료들의 비판, 즉 납속책(私賑)이 관료기구(名器)의 권위를 손상시킨다고 보는 견해에 반대하고, 오히려 賣爵보다는 賣義를 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다. 즉 납속에 응모한 부민들에게 품계나 관직을 준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16)

그런데 위와 같은 관주도의 향촌정책이 일시에 사족의 향권상실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영조 14년 경상감사 尹陽來가 안동의 金尙憲書院 건립시비와 관련하여 '안동의 향권은 국가가 억탈하려 해도 또한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¹⁷⁾은 국가가 지방세력을 국가의 완전한 통제하에 두려고 했다는 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아직도 재지사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영남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도 숙종 38년 이정법을 이용하여 재지사족이 자신들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특히 안동같은 경우는 19세기까지도 재지사족이 향청(향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후 왕권강화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된 관주도의 향촌 통제책과 지방세력에 대한 억압정책은 향촌사회의 권력구조를 크게 변화시 켜 나갔다. 이제 안동 등 특수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18세기 중엽을 전후 로 하여 사족이 향촌사회의 권력구조 안에서 그 이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

¹⁵⁾ 현종 원년의 〈모곡별단〉이 기본적으로 사족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된 것임은, 加設職 제수 조항에서 "謝恩奉贈은 正官例에 따라 사족에게만 허락하며, 천인 및 양인으로서 마땅히 군역을 져야 하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첨지 이상은 사족 양민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허락하되, 양민의 경우에는 사족에 비해 10 석을 더 납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備邊司謄錄》20책, 현종 원년 12월 4일).

^{16) 《}英祖實錄》 권 1, 영조 즉위년 10월 임진.

¹⁷⁾ 鄭萬祚,〈英祖14年의 安東 金尚憲서원 建立是非〉(《韓國學研究》1, 同德女大, 1982), 60等.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光州에서의 영조 23년(1747) 향안파치 및 영조 42년 향집강안(좌목판) 파쇄사건은 재지사족의 향권상실에 관한 사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18) 이 사건은 영조 42년 당시 전라 감사가 광주의 향안과 집강안을 봉인해서 올리라는 지시를 하고, 광주목사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당시 감사는 광주 사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향집강들이 향권을 천단하고 校中會・書院會・邑中會 등 향회를 빙자하여 민간에 작폐한다는 말을 듣고 그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위 감사의 지시에 따라 수령이 조사 보고한 기록에서 밝혀진 관련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에는 영조 42년까지 숙종 중엽에 만들어진 향안이 전해오고 있었는데, 이 후 영조 23년 새로운 향안이 만들어졌으나 이新案은 사족 내부의 분열에 의해 혁파되었다. 둘째, 위 향안파치사건 이후에도 광주에서는 鄕執網 18인, 즉 鄕老 6원・鄕長 6원・鄕有司 6원 등이 중심이 되어 향론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향청 벽에 좌목판(향집강안)을 만들어 걸어놓고 鄕儒 중 나이든 사람 가운데 18인을 선출하여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셋째, 영조 42년에 이 좌목판마저 감사의 지시에 의해 파쇄되었다.

17세기 호남의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체제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던 광주에서 향안이 혁파되고, 향론을 주도하던 향집강들의 명단을 올렸던 좌목판마저 감사의 지시에 의해 잘게 부서졌다는 사실은 기존의 사족 중심의 지배질서, 사족의 향권이 관권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광주목사가 보고하는 가운데 자신이 부임한 이래 향회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내용과 관련지워 본다면, 위의 교중회·서원회·읍중회 등으로 불리는 모임을 통해 사족들은 향권에 간여하고 있었다고 할 터인데, 이 역시 기존의 향회를 통한 사족들의 향촌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호남의 경우 향회가 18세기 중엽에는 이미 수령의 통제하에 놓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음 湖南釐正使 李成中의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균역법 실시 직후 영조 30년 호남에 내려가 조사활동을 마치고 올라온 이성중의 보고서

¹⁸⁾ 광주 향안파치사건과 향집강안 파쇄사건에 관해서는 《報牒考》(奎古. 5125-68) 의 기록에 의거한다. 김인걸의 앞의 글, 참조.

내용을 보자.

結戶役을 이정한 후에도 항회를 통한 가렴의 폐는 엄금해야 할 것입니다. 외방의 결호역의 증가는 매번 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른바 항회라고하는 것은 애당초 一鄕 土民의 공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좌수 별감이라는 자들이 수령의 턱 아래에서 놀면서 그들의 형이나 아우를 시켜서 통문을 돌리고불러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향회에서는 혹 관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또는 민역을 마감해야 한다는 명목을 들어 제멋대로 가렴하고 손이 가는대로법을 만드니 일의 원통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항품 또한 민으로서 민간에 대한 가렴의 폐가 결국 자신에게 미칠터인데 어찌스스로 자신에게 가렴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할 지 모르지만, 이는 향곡의 물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 이 후 만일 향회를 칭하여민역을 걷어내는 경우, 호에서 걷든 결에서 걷든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수창인은 형으로 다스려 멀리 귀양보내고, 그것을 덮어주고 보고하지 않는 수령은 비중에 따라 죄를 물음이 마땅할 것입니다(李成中,《質菴遺稿》권 1, 湖南釐正使書客, 영조 30년 4월 28일).

위 보고서는 18세기 중엽의 향회가 좌수·별감 등 향품의 주도로 열리고 있지만 사족들의 공론을 집약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수령의 턱 밑에서 수령에 의해 좌우되는 부세자문기구적인 것이었음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호서의 경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호서 예산의 경우를 한 예로 살펴보자. 18세기 초 현감으로 부임한 金幹은 상하인민에게 경고하는 가운데, "향촌에 거주하면서 혹 당론을 주장하고 관부에 들어와 혹 사사로운 부탁을 하며, 향곡을 무단하며 양민에게 해를 끼치거나, 형세를 빙자하여 관령을 멸시하는 것, 이 모두는 士夫의 미행이 아니다. 일체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¹⁹⁾ 라고 하면서 사부들의 분열과 그들의 양민침탈 및 관부와의 마찰 등을 경계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수령들의 사족견제, 즉 抑强扶弱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김간보다 50년 뒤에 같은 예산에 부임한 韓警은 오히려 수령의 억

¹⁹⁾ 金 幹,《厚齋先生集》割鷄錄, 通渝境內上下約條(숙종 27년, 1701).

강부약정책으로 인한 폐단을 문제삼는 감사의 지적에 접하게 된다. 한경이 예산 사부들에게 전달한 감영으로부터 내려온 관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래 감사들이 필칭 호서의 사부들이 호강하다는 점을 들어 매번 抑强扶弱을 위주로 임금께 보고를 하는데, 이는 호서 사부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또한 사부들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나 역시 이 고장 사람으로 우리 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억강지정 때문에 폐단이 일어나고 명분과 풍속이 날로 어그러져 왔다. 양반이 양민을 침학하고 强品(호강품관)이 향곡을 무단하는 일이 과거에 왕왕 있어 왔지만, 이른바 억강지정이라는 것이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오히려 상한천류로 하여금 사납고 간교한 기운을 더하게 하여, 부를 믿고 가난한 양반을 욕보이는 자들이 생겨나고 돈을 쥐고 명분을 어지러이 범하는 자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관장(수령)은 매번 양반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억강으로 일관하니, 사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펴지 못하고 교활한 부민이 방자하게 거리낌없이 행동하게 되었다(韓警, 《烏山文牒》, 임오 정월 26일 傳令草, 영조 38, 1762).

위 감사의 관문은 당시 일반화되어 있던 감사의 '억강부약'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감사 尹東暹은 이같은 점을 상기시키며 사족들의 협조 를 당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한경은 이같은 감사의 지시사 항을 전달하면서도, 아울러 사족의 근신을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있었다.

도내인 가운데 富民으로서 양반을 모욕하거나 豪鄉으로서 사족을 범하는 자는 모두 마땅히 다스려야 하니 적발되는 대로 엄히 다스리겠다. 그러나 士夫班 品者 또한 營門(감영)의 위와 같은 지시를 곧바로 양반을 편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거꾸로 호강지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양반의 도리를 다하여 소민의 모범이 되면 頑民도 감히 범접치 못할 것이고 관장 또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관사의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韓警,《烏山文牒》, 임오 정월 26일 傳令草, 영조 38, 1762).

우리는 위와 같은 지적에서 억강부약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그같은 정책의 결과 돈 많은 부민이나 호강한 향품에 의해 양반이 능욕을 당하는 역전을 보게 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호서지방에서도 사족들의 지위가부민, 호향들에 의해 크게 위협받게 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간에

추진된 억강부약정책에 의해 사족들이 누려왔던 기존의 향권에서의 지위가 약화되어 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사정의 변화는 수령이 재지사족을 매개로 하여 향혼사회를 통치하는데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수령권에 의해 향권이 부정되어 갔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수령권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의 향권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과정에서 향권을 둘러싼 기존 세력과 신세력간의 마찰인 鄕戰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는 사족 중심의 자치체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사정이 지속되면서 이제 수령권은 더욱 강화되어 갔고 지방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되었다. 전에는 관리들이 일반적으로 내직을 선호했었는데, 이제 누구나 앞을 다투어 지방관을 선호하게 되어 '一邑作缺 爭者如雲'20)하는 상황이 문제로 되었다. 이전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4) 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

조선 중기 향권은 재지사족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 재지사족들은 군현 단위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권력기구를 확보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향촌사회를 그들의 지배하에 둘 수 있었다. 사족이 향촌사회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지배기구는 향안을 모태로 한 향회와 그 지휘를 받고 있던 유향소였다. 좁은 의미에서 향권이향임이 갖는 권한을 의미하였던 데서, 보다 넓게 그 향임의 임면(추천)을 포함한 인사권과 제반 향중사의 의사결정권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여지게된 것도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이같이 관의 행정조직 외에 재지사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향촌 지배기구가 향촌사회에 병존하고 있었던 것은 재지사족의 존재형태와, 국가의 지배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재지사족들은 자신들의 경쟁자였던 향리를 배제하고 향촌사회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향안과 향회를 통해

^{20) 《}承政院日記》 578책, 영조 즉위년 11월 5일.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나가고 있었고, 국가 역시 그들을 매개로 해서 지방사회를 통치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같은 향촌 지배기구가 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 중기 관인들이 지방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던 사정과도 관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사족들의 분열과 기반의 위축 등으로 인해 결속력이 약화된 틈을 타고, 향임층과 이서층들이 향권에서의 독자적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족들의 지위가 약화된 데서 기인하는 것이었지만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령권강화책, 억강부약책에 기인하는 바 컸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족의 결집력의 상징이었던 향안이 더이상 작성되지 못하거나 파치되고 향회의 기능도 부정되어 나갔다. 그 결과이제 사족들의 향권에서의 지위도 현격한 변화가 있게 되었다. 즉 기존의 사족이 갖고 있던 넓은 의미에서의 향권은 수령권에 의해 부정되고, 이제 향권은 좁은 의미에서 향임층이 갖는 권한 또는 儒・鄉任의 임면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의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권한도 이제 철저하게 수령에 의해 천단되게 되었다. 수령의 천단을 억제할 수 있었던 사족들의 견제기능이 상실된 결과였다.

이같은 사족의 향권 상실은 결과적으로 수령과 수령의 비호를 받고 있던 이향층에게 향권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사족들이 유·향임의 임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특히 향교의 재임이나 서원의 임원 등 유임은 여전히 이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18, 19세기에 들어와 향권은 수령권에 철저히 예속되게 되었고, 수령권의 비호를 바탕으로 이향층이 향권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의 향족이나 서얼 등 사족에 미치지 못했던 층만이 아니라 새롭게 부를 축적하고 있던 부민층이 향권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 부민층은 수령의 수탈을 자각하는 단계에이르기 이전에는 수령권을 배경으로 향권에 접근함으로써 각종 부담에서빠지는 특권을 향유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분상승을 모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4. 사족지배체제하의 신분질서

1) 사족 중심 신분질서의 확립

향촌사회 운영구조상에서의 사족지배체제는 16세기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6세기는 재지사족 중심의 새로운 신분질서가 정비되어 가던 시기였다. 사족이 독립된 배타적 신분층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은 16세기 후반기 이후이며,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도 여전히 향촌사회의 중심 구조로 존속하였다. 이는 재지사족이 향촌사회에서 배타성을 갖는 향혼지배 규약을 통해지배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살피되 사족의 비사족(技術官, 庶族有職者, 胥吏, 鄕孫, 庶孽 등)에 대한 배타적 차별화에 주목하기로 한다.

'사족'이란 용어는 고려 중기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와 함께 '士大夫'란 용어도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 14세기부터 자주 나타난 사대부는 고려 후기 能文能吏의 새로운 관인층으로서 학자적 관료이며 관료적학자였다.1) 세종대에는 중국의 예에 따라 4품 이상을 '大夫'라 하고 5품 이하를 '士'로 호칭하게²⁾ 됨에 따라 有品者를 大夫·士, 곧 사대부라고 하였다. 사족은 사대부와 통용되기도 하였지만 '士大夫之族'의 준말로서 사대부의 족속을 의미하기도 하였다.³⁾ 16세기 중엽의 全家入居(全家徒邊) 문제와 관련해서 설정한 사족의 범위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兩邊四祖俱有顯官者'이거나 문무과 출신자의 자손인 사람이고, 생원·진사는 '當身'에 한정되어있다. 이를 통해 본 사족의 범위는 관직자와 그들 관직자의 일정 범위내의가족 및 후손을 말하는 것이다.⁴⁾ 이처럼 사족이란 용어는 사대부와 함께 학

¹⁾ 李佑成, 〈高麗朝의'吏'에 對하여〉(《歷史學報》23, 1964), 24~25쪽.

^{2) 《}世宗實錄》 권 52, 세종 13년 5월 무진.

李成茂,《朝鮮初期兩班研究》(一潮閣, 1980), 16等.
——, 〈朝鮮初期 身分史研究의 再檢討〉(《歷史學報》102, 1984), 212等.

^{4)《}受教輯錄》刑典,推斷. 宋俊浩,〈朝鮮兩班考-朝鮮朝 社會의 階級構造에 관한 한 試論->(《韓國史學》)

자적 소양을 지닌 관료와 그들의 일정 범위내의 후손까지를 포함한 지배층 을 뜻한다.

지배층으로서의 신진사족의 생성은 대부분 13, 14세기에 걸쳐 군현의 土姓 吏族에서 성장하였다. 군현의 토성은 고려 초기 이래 역대에 걸쳐 중앙이나 지방의 지배세력을 산출시키는 공급원 역할을 하였다. 15세기를 기준으로 하 여 볼 때 이른바 鉅族과 사림파, 상급 향리층을 막론하고 그들의 뿌리는 각 기 군현토성에서 분화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같은 토성이라도 上京從仕하 면 在京官人이 되었고. 그대로 토착하면 군현지배자로서 鄕吏세계를 형성하 여 지방 행정실무는 물론, 향촌사회까지 영도해 나가는 위치에 있었다. 이처 럼 토성에서 士族과 吏族이 분화되어 갔고, 이의 분화는 여말선초에 오면 더 욱 촉진되어 종래의 재지세력이 다시 재지사족과 이족으로 구분되어 갔다.5)

재지사족은 대체로 여말에 재경관인 가운데 낙향 생활자가 생기고 군현이 족이 신분적으로 향상되면서부터 생겨났다. 즉 왕조교체와 이후 수차의 정변 으로 本鄕 또는 妻鄕・外鄕을 따라 낙향한 사류들과 添設職・影職 등을 통 해 品官이 되어간 계층이 재지사족의 주류가 되었다.6) 이들 사족은 대체로 중소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과 사족으로서의 신분적 배경을 가진 계층으로 서 점차 가문을 형성하고 혼인 • 학연 등의 연결을 가지면서 향촌사회의 지 배층으로 성장하였다.

재지적 기반을 가진 이들 사족 가운데 일부는 성종대 이후 중앙정계에 진 출하면서 사림파를 형성하였고, 이들 사림의 정계진출과 병행하여 점차로 사 족과 비사족을 구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곧 사족의 自 別의식에 의한 배타적 차별화의 시도였으며, 기술관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재지적 기반을 토대로 성장한 사림의 기술관 및 서리에 대한 차별화 시도의 전개양상을 보기로 하자.7) 기술직에 종사하는 문반관료들을 東班에

^{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342~356\.

⁵⁾ 李樹健,《嶺南士林派의 形成》(嶺南大 出版部, 1979), 142~148\.

⁶⁾ 李樹健, 위의 책, 155~156쪽.

⁷⁾ 기술관 지위 격하논의와 관련한 이하의 서술은 주로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韓永愚, 〈조선초기 사회계층 연구에 대한 재론〉(《韓國史論》12, 서울大, 1985), 338~343쪽.

서 제외시켜 차별하자는 논의가 조정에서 일어난 것은 성종이 즉위한 이후 부터였다. 특히 성종 8년(1477)에는 관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雜職官을 동반에 참여시킬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에 대한 격론이 일어났다. 원래《經國大典》에는 잡직도 東班流品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는 잡직 중 에 檢律・算士・內需司書題를 동반유품에 넣을 것이냐가 논의 대상이 되었 다. 즉 《경국대전》의 규정을 준수하자는 입장과, 이를 바꾸어 잡직을 동반에 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이 쉽게 타협을 보지 못했다. 찬반 양론의 논지 가운 데, 잡직 차별을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들로 서, 이들은 士林名士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인간기질의 차이까지 내세우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잡직 차별을 적극 반대하는 논 의는 의정부와 6조의 판서·참찬·찬성 급에 속하는 고급관료들에 의해 이 루어 졌다. 그 외에 절충론을 주장한 이는 의정부의 정승들과 판서 등 元老 大臣들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성종 때의 정치분위기를 볼 때, 잡직을 士 類와 구별하여 차별대우하자는 논의는 언관들의 주장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재지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은 《경국대전》체제하의 법제와는 달리 그 들의 차별의식에 의해 기술관을 천시하려는 차별화를 기도하고 있었다.

성종 13년에도 사헌부·사간원의 관원들은 계속해서 잡직차별을 건의하는 疏를 올렸는데, 醫官·譯官은 사족이 아니므로 사대부와 列을 같이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언관들의 요청을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에는 사람계열의 언관들이 특히 사족과 비사족을 族屬상으로 구별하여 비사족의 동반유품 참여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집요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언관들의 경직된 차별론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진 예는 별로 없었을지라도 성족 즉위 이후에는 사림의 정계진출과 병행하여 점차로 사족과 비사족을 구별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한 추세 속에서 16세기 중엽의 《大典後續錄》에서는 마침내 서얼의 잡과 응시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관원을 천시하는 풍조는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었다.8) 15세기 말부터의 이러한 현상은 그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으로써 사족의 기술관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사족 중심의 새로

운 신분질서를 예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胥吏도 행정실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기술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상급 서리였던 成衆官의 신분적 지위는 일반 사류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예컨대 그들은 호패·의복·군역제도 등에 있어서 流品朝士나 생원 ·진사·유음자제 등과 대체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성중관이 錄事로 일원화된 이후로 녹사의 지위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저하되어 16세기 의 중종 때 즈음 되면 녹사는 일반 사류와는 완연히 구별되는 하위 신분으 로 전락되었다. 그리하여 녹사 출신자는 아무리 재능과 덕망을 겸비했다 하 더라도 바로 녹사 출신이기 때문에 품관 진출이 저지되고 있었던 것이며, 반 대로 녹사의 품관 진출의 폐쇄성은 일반 사류의 천시와 입속 기피를 초래하 게 되었다. 이처럼 성중관 내지 녹사의 품관 진출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이끌 어 가게 하였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기술 내지 기술관을 천시하는 성리학의 발달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9) 성종대 이후 이러한 현상도 기술천 시의 풍토 속에서 사족들의 차별화에 따라 지위가 하락된 것으로 인식되어 야 할 것이다.

사족의 차별의식에 의한 차별화와 같은 관념적 현상은 《경국대전》체제하 의 법제와는 큰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말의 그러한 현상은 16 세기 이후 더욱 촉진되기 시작하여 신분체제가 사족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 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재지사족의 관점에서 본다면 16세기는 재지사족 중심 의 새로운 신분질서가 정비되어 가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재지사족들은 향 촌사회에서의 향촌지배 규약을 통해서 사족과 비사족을 구별하는 배타적 차 별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는 재지사족의 성장의 결과 혹은 그 과정에서 만 들어진 鄕案・鄕規・鄕約 등을 통해서 그들 중심의 배타적 신분질서를 확립 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족들을 결속시키고 사족 중심체제를 유지시키는 데에 역할을 하였던 향

⁸⁾ 韓永愚、〈朝鮮時代 中人의 身分・階級的 性格〉(《韓國文化》9、 서울大、1988)、 202쪽

⁹⁾ 韓永愚,〈朝鮮初期의 上級胥吏와 그 地位-成衆官의 錄事로의 一元化 과정-> (《東亞文化》10, 1971;《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 乙酉文化社, 1983, 371零).

안은 재지사족의 신분적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향안이 상하 신분질서를 확립하는 士族案으로서의 기능은 16세기 후반에서야 가능하였다. 이는 기존의 향혼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향리세력을 규제하고 鄕孫의 향안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가능하였기 때문이다.10) 재지사족과 마찬가지로 여말선초 토착세력의 후예이며, 같은 土姓의 姓貫에서 분화되어 戶長層을 세습해온 在地吏族은 비록 군현지배자의 지위에서 지방관아의 행정사역인으로 전락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 행정실무를 매개로 수령과 사족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吏族案인 增案과 집무소인 府・郡司를중심으로 독자적이고도 엄격한 조직과 체계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16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사족과 더불어 향안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사정은 士族鄕이라고 알려진 안동에서 중종 25년(1530)에 작성된〈嘉靖鄕案〉에 '鄕孫'(항리의 本孫・女壻・外孫)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에서 확인된다.11)

그러나 서얼과 함께 향손의 향안 참여는 이후 사족에 의해 점차 배제되고 있었다. 이는 선조 14년(1581) 鄭士誠이 마련한 향안입록 규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즉 서얼과 함께 향리의 直派・連派者는 반드시 4・5世를 淸族과 결혼한 연후에야 향안의 입록을 허락한다는 이 규정12)은 사족과 비사족을 차별하는 사족 중심의 배타적 차별화 내지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이후 선조 22년에 작성된〈萬曆己丑鄕錄〉13)에서 289명의 입록자 가운데 향리 자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이것은 적어도 선조 22년에 이르러서는 재지사족이 이족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제 향안은 상하 신분질서를 확립하고 사족의 신분을

¹⁰⁾ 鄕孫의 향안참여 문제와 관련한 이하의 서술은 주로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鄭震英,〈朝鮮前期 安東府 在地士族의 鄕村支配〉(《大丘史學》27, 大邱史學會, 1984).

^{----,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民族文化論叢》10, 嶺南 大 民族文化研究所, 1989).

^{11)《}安東鄉孫錄》安東鄉孫事蹟序.

¹²⁾ 鄭士誠,《芝軒集》 권 3, 郷約. 鄭震英, 앞의 글(1984), 73쪽.

^{13) 〈(}萬曆)己丑鄕錄〉은 安東郡 豊川面 河回洞 永慕閣 소장으로 李樹健에 의해 소개 된 바 있다(《慶北地方古文書集成》,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1, 20쪽).

확인하는 사족안으로서 비로소 기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고 있었지만, 일찍부터 사족세력이 형성된 지역에 있어서조차 대체로 16세기 중·후반 이후에 이르러서야 향리세력을 배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조 36년(1603) '序'가 쓰여지는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咸州(咸安) 郷案의 '立議'에서도 郷孫의 향안 참여는 庶孽・錄事 및 閑散人 등과 함께 사족에 의해 배제되고 있었다.14) 이러한 향안에는 父・母・妻族에 모두 신분적 하자가 없어야 입록될 수 있었던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같은 향안의 기능은 향존사회에서 기존 사족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15) 이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향안의 입록 규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족 중심의 배타적 신분질서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16세기 후반 이후에 이르러 확립되었고 임진왜란 직후에도 유지되었다.

사족 중심의 신분제적 지배질서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기초로 작용한 것이 향약이었다. 16세기 후반의 栗谷鄉約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족들은 향약의 제특권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신분구분을 엄격히 하였으며 이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16)

첫째로 양반신분내에서 혈통의 순수성에 기초하여 순수 사족과 비사족으로 엄격히 변별하였다. 己卯士林들은 향약을 실시하면서 坐次를 결정하는 기준을 신분보다 年齒에 일차적인 비중을 두었다.[17] 이처럼 16세기 전반의 중종대 향약이 신분보다는 연령을 중시함으로써 長幼有序라는 二倫的 질서를 강조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신분적 관념이 약하였다. 이에 비하여 16세기 후반의 선조대 향약은 일차적으로 신분을 구분하고 이러한 신분제의 틀 안에서 연령을 중시하였다. 신분에 대한 이와 같은 강조는 사족들의 배타적이고

^{14) 《}咸州誌》(國立中央圖書館, 한 62-172) 중의 咸州郷案 立議. 金仁杰,〈조선 후기 郷案의 성격변화와 在地士族〉(《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 論叢》, 知識産業社, 1983), 529쪽.

¹⁵⁾ 金仁杰, 위의 글, 531쪽.

¹⁶⁾ 栗谷鄕約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관련한 이하의 서술은 주로 다음을 참고하였다. 韓相權, 〈16·17세기 鄕約의 機構와 性格〉(《震檀學報》58, 1984).

^{17) 《}中宗實錄》 권 38, 중종 15년 정월 계사.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임은 물론이다. 사족들의 신분적 특 권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신분간의 구분을 엄격히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 여 양반신분내에서 순수 사족과 비사족을 변별하였다. 즉 "무릇 聚會에는 年 齒에 따라 坐定하되 서얼과 비사족은 別序한다"는 것이다.18) 여기에서의 비 사족은 "庶族의 有職者로서 사족이 아닌데도 양반이라고 일컫는 校生・忠贊 衛・別侍衛와 같은 부류들"19)로 파악된다. 이는 동일한 양반신분 안에서도 '사족의 서얼'이나 '서족의 유직자'들과 같은 비사족을 순수 사족과 먼저 일 차적으로 구분한 연후에 이러한 구분선내에서 연령에 따라 좌차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16세기 후반에는 신분이 연령보다 일차적인 기준으로 강 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족과 서족이 族團的으로 구별되 고, 서족으로서 관료가 된 자는 서족유직자로서 명칭을 달리하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사족 출신의 관료와 서족 출신의 관료는 향촌에서는 좌차도 차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양반과 중인, 그리고 常漢이 점차적으 로 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하다고 볼 수 있다.20) 이처럼 혈통의 순수성에 입각 한 신분관을 강조하는 것은 이들 세력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막고 향약의 지 배력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향유하려는 사족들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16세기 전반기의 사족에 비하여 신분관이 보수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鄕吏・書員・官屬들의 품관에 대한 능욕을 鄕所를 통하여 강력히 다스림으로써 사족들의 신분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下人으로 통칭되는 양인과 천인들에 대한 지배 예속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신분적 지배관계를 '忠', '悌'라는 綱常의 윤리규범으로 환치시킴으로써 교화를 통하여 지배윤리를 주입시키고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告官治罪, 笞刑이라는 법률적인 지배력을 구사하였다. 이처럼 사족들은 교화와 처벌을 상호 보완적으로활용해 가면서 향촌민을 신분적으로 지배하였다.

¹⁸⁾ 李 珥、《栗谷全書》 권 16, 雜著 3, 海州鄉約 禮俗相交.

¹⁹⁾ 李 珥,《栗谷全書》 권 16, 雜著 3, 社倉契約束 會時坐次.

²⁰⁾ 韓永愚,〈朝鮮前期의 社會階層과 社會移動에 관한 試論〉(《東洋學》8, 檀國大東洋學研究所, 1978), 254等.

에게/에어의 근본글의 *150*

이와 같이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규약을 통해서 볼 때, 16세기 후반에는 사족 중심의 배타적 신분질서가 확립되었음이 확인된다. 그것은 사족들의 차별의식에 의한 순수 사족과 비사족을 족단적으로 구별하는 것이었다. 이 때 배타적 차별화의 대상은 '사족의 서얼'과 '서족의 유직자' 그리고 향손·녹사·한산인 등이 주가 되었다. 이들은 향안입록에서 배제되거나 會時의 좌차에서 차별을 받거나 향약적 지배기구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 사족들은 이러한 배타적 차별화를 통해 그들을 반·상의 중간 신분층으로 종속시키고, 그 아래에 하인으로 통칭되는 양인과 천인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 확립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상하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재지사족들은 각종 지배기구의 지배력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계속 향유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16세기 후반기에 사족과 비사족이 족단적으로 분화됨에 따라 이후의 신분구조는 사족양반과 서얼·서족유직자·향손·녹사·기술관·한산인등 반·상의 중간 신분층과 상민(상한)과 천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신분구조는 17세기에도 여전히 존속하였으며 각 신분간의 분한 등급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효종 3년(1652)에 작성된〈一鄉立法〉과 숙종 7년(1681)에 작성된〈立法(草)〉에 대한 조목별 검토를 통하여 볼 때, 燕岐지방의 사족들은 鄕員뿐만 아니라 한산과 상한, 천민들에 이르기까지 儒鄕 중심의 향혼사회질서를 구상하고 있었다.21) 즉〈일향입법〉의 작성자들은 17세기 연기지방 향혼사회의 신분구조를 유향, 한산, 상한, 천민 4개의 계층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등급에 따라 하급계층이 상급계층을 침욕하거나, 分外의 직임을 맡는 것을 규제하였다.

연기지방의 '유'와 '향'이 의미하는 것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촌사회에서 이들은 법적으로는 양반층으로서 제반특권을 부여받는 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유'와 '향'은 그것이구체적인 향촌질서 속에서 구별되고 있으나, '향'은 사족과 類를 같이 하는 양반층으로서 중인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산'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이다.

²¹⁾ 燕岐지방의 신분구조와 관련한 이하의 서술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김현영, 〈17세기 燕岐지방의 鄕規와 향촌사회구조〉(《韓國學報》61, 1990).

조선 후기의 한산이란 용어는 다양하게 쓰였는데, 無役無職의 閑遊者로서의 한산은 閑良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무역무직의 한산은 직역이 없는 한유자로서 儒業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弓術과 같은 무예를 익히는 부류이며, 피역을 위하여 歇役인 軍官에 冒屬하거나, 비록 종5품 判官에 限品敍用되기도 하였으나 천거를 통하여 出仕도 가능하였다. 이러한 한산층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중인층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²²⁾

이러한 한산층에 대해서 연기의 향규는 관속들과 함께 자기(유향)들의 향 촌사회 지배권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지목하고 이를 규제하는 조목들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한산층을 규제하면서도, 또 그 아래에 상한층을 설정하여 상한층이 한산층에 도전하는 것도 규제하였다. 이러한 규 제는 기존의 유향 중심의 신분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일 뿐 아니라 각 신분간의 분한 등급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연기지방의 위와 같은 4분적 신분구조는 그것이 비록 일향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당시 향촌사회에서 통행하는 신분질서로 이해된 다. 즉 17세기 중반의 실학자 柳馨遠은 양반과 중인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양반은 大夫・士의 자손과 족속들이다. 우리 나라 제도에는 오직 대부・사의 족속이라야 문무관의 正職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속칭 양반이라고 한다. 庶族은 원래 庶人의 족속으로서 官序에 참여하거나 校生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속칭 중인이라고 하며 또 閑散方外라고도 한다(柳馨遠,《磻溪隨錄》권 9, 敎選之制(上) 鄉約事目).

유형원에 의하면 양반과 중인은 혈통에 따라 족단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능까지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즉 양반사족은 문무반의 정직에 참여할 수 있는 족속이었다. 그러나 중인은 대부·사의 족속과는 혈통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로서 원래 서인의 족속이지만, 官序 즉 官衙와 鄕里의 학교에 참여하여 서족의 유직자가 될 수 있는 계층이었으며, 또한 한산층이었다. 이처럼 혈통과 직능까지도 구별되어진 중인층은 사족의 배

²²⁾ 李俊九,〈朝鮮後期의 閑良과 그 地位〉(《國史館論叢》5, 1989), 172~173쪽.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研究》(一潮閣, 1993), 105~110~110~1.

타적 차별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공존하는 어느 사회에서나 피지배층의 계층상승 시 도와 이에 대한 지배층의 배타적 통제, 그리고 지배층의 특권 유지를 위한 도태작용이 거듭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이들 양 계층의 중간적 존재가 출현 하게 됨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원리는 조선 중기 사회에서도 예외없이 적용 되었다. 즉 양반과 상민의 중간층의 출현은 이러한 원리상에서 이해될 수 있 으며, 그들 계층은 그들에게 알맞는 직역을 제도권 안에서 확보하고자 하였 고. 이 관점에서 반ㆍ상의 중간층으로서의 중인 신분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족들의 배타적 차별화의 대상이 되었던 서족유 직자ㆍ서얼ㆍ향손ㆍ녹사ㆍ기술관 등 비사족은 점차 족단적으로 차별되어 중 인층화되어 갔다. 이는 결국 사회적 평가의 결과 家系의 위신이 양반사족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어 형성된 신분층이었다.23) 양반과 상민의 중간에 위치하 는 광범위한 중간계층을 의미하는 중인층은 務本抑末이라는 유교적 이념에 서 생겨난 기술천시의 풍토 속에 신분이 하락되었던 기술직 • 이서, 정통 • 비 정통을 철저하게 가리는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연유한 嫡庶관념에서 도태된 서얼로 구성될 뿐 아니라.24) 서족의 유직자 또는 한산층으로 간주되는 忠贊 ・忠順・忠翊・忠壯・定虜 등 衛屬과 校生・武學・(常)出身・軍官・閑良 등 의 다양한 직역을 포괄하고 있다.25) 이러한 중인층은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점 차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상민층으로부터 신분을 상승시킨 성취적 중인층 혹은 冒屬 중인층으로서의 한유자층이 증가하면서26) 중인 범위가 더욱 두터 워지고 복잡해져 갔다.

따라서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사족 중심 신분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반・ 상의 중간 신분층이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17세기 초 인조 때부터

²³⁾ 池承鐘、〈身分概念定立을 위한 試論〉(《한국 고・중세 사회의 구조와 변동》, 한 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11, 文學과 知性社, 1988), 88쪽.

²⁴⁾ 鄭玉子, 〈朝鮮後期의 技術職中人〉(《震檀學報》61, 1986), 45쪽.

²⁵⁾ 李俊九, 〈朝鮮後期 兩班身分移動에 관한 研究〉(上・下)(《歷史學報》96・97, 1982 · 1983).

^{-,} 앞의 책, 32쪽.

²⁶⁾ 金盛祐, 〈17·18세기 前半 '閑遊者'層의 증가와 정부의 대책〉(《民族文化研究》 25, 高麗大, 1992), 273~274\.

는 중인이라는 용어의 사용과²⁷⁾ 함께 양반, 중인, 상민, 천인의 4신분층을 골 간으로 하는 신분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2) 양란중의 신분 혼효와 정리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걸쳐 조선왕조는 왜란과 호란을 치르면서 사대부 층의 통치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는 그 이전부터 동요하고 있던 지배체제가 양란을 통해 더욱 이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는 종래 신분제에 대한 명분론적 인식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것은 軍功論賞과 原從功臣錄勳, 納粟論賞 등과 같은 제도적 신분상승 조처를 통해 신분계층이 혼효되는 현상으로나타났다. 이는 전란을 통해 중인과 양인, 천인들이 합법적으로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이 비교적 넓어짐으로써 나타난 현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양란을 치르면서 인구의 지역적 이동과 노비의 도망 등도 신분이 혼효하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의 조선사회는 병농일치제가 무너지고 軍籍收布法 (중종 36년; 1541)이 실시되면서도 그것에 대신할 傭兵制와 같은 새로운 군사제도가 성립되지 않았고, 또한 행정체제의 이완으로 正軍이 될 수 있는 양인인구가 줄어들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군의 확보를 위해서는 公私賤・庶孽 등도 군역에 충당되었고 또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군공논상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으나 이로 인해 결국 하층민의 제도적 신분상승을 수반하게 되었다.

임란중의 군공논상에28) 관한 기록으로는 선조 25년(1592) 11월부터 보인다.

²⁷⁾ 韓永愚,〈朝鮮後期 '中人'에 대하여-哲宗朝 中人通清運動資料를 중심으로-〉 (《韓國學報》45, 1986), 73쪽.

한영우는 중인뿐만 아니라 특권적 지배신분으로서의 양반도 16세기의 과도기를 거쳐서 17세기에 뚜렷하게 성립되었다는 견해를 이미 1978년에 밝힌 바 있다 (韓永愚, 앞의 글, 1978).

²⁸⁾ 壬亂 중의 軍功論賞에 관하여는 주로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李章熙,〈兩班・農民層의 變化〉・〈奴婢制의 崩壞〉(《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즉 이 때 적의 목을 베었거나 작은 공을 세운 자에게는 告身帖, 免賤・免役 帖을 주었다.29) 이로 볼 때 면천・면역첩의 대상은 주로 비양반층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비양반층도 군공을 통해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달의 기사에서 군공이 뛰어난 자에게는 參奉(종9품)에서 軍器寺正(정3품)에 이르기까지의 加設職을 주겠다는 것이다.30) 여기에는 신분에 관한 언급이 없어 하층신분도 가설직의 대상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선조 27년 軍功廳의 보고에 의하면 "公‧私賤도 적 1명을 베면 면 천하고 2명을 베면 羽林衛에 소속되게 하고 3명을 베면 許通하고 4명을 베 면 守門將을 제수하는 것이 이미 규례로 되어 있다. 이미 허통되고 관직을 받았으면 사족이나 다를 것이 없다. 공・사천뿐만 아니라 才人・白丁・匠人 •山尺 등의 미천한 신분도 또한 높은 관직으로 뛰어오른 자가 있다"고 하 였다.31) 이는 군공이 현저한 자에게 논상하고 군사의 사기를 고무하는 데 목 적이 있었지만. 군공으로 인해 공사처 등의 하층민이 禁軍의 하나인 우림위 에 속하게 되거나 허통하여 과거에 나아갈 수 있거나 受職함으로써 양반 신 분으로 상승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 하층민의 허통뿐만 아 니라 서얼도 적 1명을 베면 허통이 가능하였다.32)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조 처가 이미 임란중에 규례가 될 정도였다면 각 신분계층간의 신분 혼효현상 도 문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군공사목의 규정대로 한다면 당시 최하층에 속하였던 공사천이 累功에 의하여 높은 관직까지 제수된다는 것은 당시 신분제를 엄격히 유지해 나가려던 분위기 속에서 용납될 수 없었던 일 이었다. 그래서 위의 보고에 따라 천인 신분에 대한 군공논상은 적을 벤 수 가 많아도 서반 종6품직의 主簿 이상을 주지 말고 그 이상은 다른 상으로 논상하기로 한 군공자 한품서용 규정이 정해졌다. 그러나 白雲瑞는 천인으로 서 계속 군공을 쌓아 서반 정3품인 訓鍊正에까지 오른 예도 있다.33) 또한

平木實,〈奴婢의 免賤從良形態〉(《朝鮮後期奴婢制研究》, 지식산업사, 1982).

^{29) 《}宣祖實錄》권 32, 선조 25년 11월 임오.

^{30) 《}宣祖實錄》 권 32, 선조 25년 11월 경신.

^{31) 《}宣祖實錄》 권 51, 선조 27년 5월 을유.

³²⁾ 裵在弘,〈朝鮮後期의 庶孼許通〉(《慶北史學》10, 慶北史學會 1987), 113쪽.

"요즈음 군공이 크게 넘쳐서 3품직을 얻지 않는 자가 없다"³⁴⁾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군공으로 얻은 직위의 한계도 엄격히 지켜지기 어려웠다.

이러한 군공논상은 당사자뿐 아니라 전투로 인하여 전사한 자의 자식에 대한 논상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병의 사기를 격려하기 위한 조처였다. 선조 27년 9월에는 "전사자가 堂上 이상인 경우에는 그 아들 1명에게 6품실직을 제수하고, 당상 이하관인 경우에는 동반 실직을 제수하고, 禁軍良人인 경우에는 아들 1명에게 금군을 제수하고, 公私賤의 경우에는 그 아들 1명을 면천"하기로35) 하였다. 이는 군병의 사기를 격려하기 위한 조처였지만, 양인과 공사천 전망자의 자식까지도 금군을 제수하거나 면천과 같은 논상이이루어짐으로써 결국 하층민의 신분상승의 길을 법제적으로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戰亡者의 자손은 궁궐 밖의 숙위를 담당하였던 忠壯衛에도 입속할 수 있었다. 충장위는 광해군 초년에 창설되었는데, 당초에 군공・납속・전망자의 자식 등을 입속시켰으나 점차 주로 전망자손의 3대까지를 입속시켰다.36) 이리하여 하층민 전망자손의 3대까지도 금군의 하나인 충장위에 입속할 수 있음으로써 한정된 범위내에서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또한 임란중에 공사천으로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던 길은 公私賤武科와 斬級武科를 통해서도 가능하였다.37) 공사천무과는 선조 26년 6월 왕의 하교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것은 공사천에 設科하여 三醫司雜科의 예에 따라 武才를 시험하고 이에 합격한 자는 從良시켜 우림위에 입속시키자는 것이다.38) 그러나 공사천무과를 실시하는 데는 문제점도 많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신분제도상의 문제였다. 즉 종래의 노비제도를 타파하여 공사천에게 출신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後弊가 생길

^{33) 《}宣祖實錄》 권 52, 선조 27년 6월 경신.

^{34) 《}宣祖實錄》 권 59, 선조 28년 1월 신사.

^{35) 《}宣祖實錄》 권 55, 선조 27년 9월 기해.

³⁶⁾ 李俊九,〈朝鮮後期의 諸衛屬과 그 地位變動〉(《朝鮮史研究》1, 伏賢朝鮮史研究會, 1992), 211~213쪽.

^{---,} 앞의 책, 180~183쪽.

³⁷⁾ 平木實, 앞의 책, 159~164쪽.

^{38) 《}宣祖實錄》권 39, 선조 26년 6월 정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천무과는 선조 27년과 28년에 실시되고 다수의 奴子가 종양되었으나, 그 뒤에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지된 듯 하다.

공사천무과와는 달리 참급무과도 실시되었다. 참급무과는 선조 26년 7월왕의 하교에 의해서 실시된 것이다. 서얼과 공사천은 사족·양인과 一榜에 더불 수 없으니 別試를 한 번 치른 후에 서얼이면 2級으로, 공사천이면 3급으로 許科하기로 하였다. 39)이 무과에 합격된 자의 수와 그 후 허과되어 제직된 자의 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선조 26년에 실시된 무과의 예를 보면전라도 3,000명, 경상도 2,000명, 충청도 1,000명을 먼저 試取하고, 初試入格者가 왜적 1명을 베면 허과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40) 그러나 그 뒤 선조32년 3월에 이 참급무과가 실시되고 훈련원에서 殿試가 실시되고 있는 것외에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지된 듯하다. 이처럼 임란중에는 공사천무과와 참급무과를 통해서도 하층민의 신분상승이 합법적으로 가능하였으며이에 따라 신분이 혼효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임란중에는 하층민이 原從功臣에 녹훈됨으로써 신분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다. 선조 37년 6월에는 宣武功臣・扈聖功臣・淸難功臣이 녹훈되었다.41)이 3공신은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선무공신과 왕을 扈從하는데 공을 세운 호성공신, 선조 29년 李夢鶴의 반란을 토평하는데 공을 세운 청난공신이 그것이다. 3공신의 녹훈에 이어 선조 38년 4월에는 각원종공신이 녹훈되었는데,이 때 녹훈된 인원은 선무원종공신이 9,060명,호성원종공신이 2,475명,청난원종공신이 995명이었다.42)정훈공신에 들지 못한사람들을 대상으로 녹훈된 원종공신에게는 1등, 2등, 3등으로 분류하여 공신녹권을 지급하고 각종 특권을 부여하였다.이들 원종공신녹권은 임란중에 군공논상에 따른 신분의 향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하겠다.이들 녹권중에 宣武原從功臣錄券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한다.

^{39) 《}宣祖實錄》 권 40, 선조 26년 7월 기사.

^{40) 《}宣祖實錄》 권 40, 선조 26년 7월 무진.

^{41) 《}宣祖實錄》 권 175, 선조 37년 6월 갑진.

^{42) 《}宣祖實錄》 권 186, 선조 38년 4월 경신.

선무원종공신은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 보급에 기여 한 인물로서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9,060명을 녹훈한 것 이다. 이들을 책록한 문서가 '선무원종공신녹권'이다. 여기에는 1등, 2등, 3등 원종공신의 명단이 그의 신분·직역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종친으로부터 중앙관·지방관·許通·免役・保人・奴婢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신분계 층이 망라되어 있다. 각 등급의 원종공신 명단 끝에는 이들에게 내리는 특권 이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은 본인에 대한 加資, 자손에 대한 蔭職敍用의 혜 택. 부모에 대한 封爵. 후손에 대한 가자. 본인이나 후손의 죄에 대한 처벌의 면제, 공ㆍ사직의 면천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 녹권에 기재된 9,060명 가운 데 신분과 직역이 확실히 기재된 서얼·향리층 이하만을 보면, 면천이 740명 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免役 407명, 私奴 395명, 水軍 389명, 保人 267명, 寺奴 148명, 許通 127명, 正兵 126명, 甲士 68명, 免鄉 58명, 官奴 57명, 書吏 55명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그 밖에도 다양한 하층민의 직역들이 확인된다. 이들은 대체로 3.230여 명으로서 전체의 37%에 해당하다.43) 이들은 하층민 으로서 임란중에 이들의 활동이 매우 컸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 하층민은 군공에 대한 보답으로 각종의 특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제도적 신분상승을 보 장받게 된 것이다. 선무원종공신녹권에서 확인된 서얼ㆍ향리층 이하의 수치 는 같은 시기의 호성원종공신녹권과 청난원종공신녹권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적 신분상승도 신분 혼효에 미친 영향이 대단 히 컸을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원종공신은 忠翊衛와 忠贊衛에 입속하여 국가로부터 특별한처우를 받았다. 충익위와 충찬위는 국가가 원종공신에 대한 報功의 의미로설립한 숙위병종이었다. 충찬위는 세조 2년(1456) 12월에 충의위의 예에 따라원종공신에 대한 보공의 의미로 설립하였는데 조선 후기에도 존속하였다. 충익위는 광해군 8년(1616) 4월에 忠翊府가 復設되면서 창립되었는데, 창립 당초 입속자는 원종공신에 참록한 자 가운데 公私賤・新良人・諸色軍士・軍功

⁴³⁾ 趙啓纘, 〈壬辰倭亂期의 身分向上에 관한 小考〉(《東亞論叢》12, 東亞大, 1976), 16쪽의 宣武原從功臣錄券에 책록된 자 가운데 향리·서얼층 이하만을 취급한 통계표 참조.

·納粟·影職人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사천과 免賤從良한 신양인 및 제색 군사까지도 숙위입번하는 금군의 類가 될 수 있었다. 충익위와 충찬위는 원 종공신을 대상으로 충원하였는데, 충익위는 그 嫡子가, 충찬위는 그 庶子(衆子를 의미)가 입속하였으며 각각 3대로 한정하였다.44) 이리하여 원종공신의 有功・有蔭의 혜택이 그 자손의 3대까지에도 미침으로써 한정된 범위내에서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이같이 임란중의 군공을 통해 하층민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던 길은 임란이 종식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내란 또는 외침으로 국가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論賞事目이 마련되었고, 군공을 세워 응분의 혜택을 받으려는 하층민의 욕구는 더욱 강렬하였다. 李适의 난 때나, 정묘호란 때도 군공으로 受職하는 자가 속출하였으며, 병자호란 때는 임란 이후 가장 많은 군공 수직자가 나타났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군공에 대한 대가를 銀子로 포상하여 하층민의 신분상승을 억제할 생각이었으나 그들은 면천이 되어 하급군직이나마 받는 것을 원하였으며, 사태가 다급할 때마다 그에 대한 처리를위해 불가피하게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포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45) 병자호란 때의 논공사목을 보면 "적의 목 하나를 벤 자는 공사천은 면천하고 양인으로 급제하여 직을 가진 자는 승진시키며, 2명을 벤 자는 加資 논상"46)하기로 했다. 이러한 거듭된 전쟁으로 신분제는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하층민이 상층민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길도 그 만큼 넓어져 갔다.

이상의 군공논상을 통해 볼 때 공사천과 양인·서얼 등도 군공의 정도에 따라 제도적으로 면천종양되거나 허통 또는 무과를 통하여 西班軍職에 나아 갈 수도 있었으며, 전망자의 한 아들까지도 면천되거나 금군에 제수될 수 있었다. 이처럼 양란중에는 군공을 통해 하층민의 신분 향상이 합법적으로 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분이 혼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층민이 군공논 상을 통해 신분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정한 한계

⁴⁴⁾ 李俊九, 앞의 글(1992), 202~227・225쪽.

^{──,} 앞의 책, 172~177·193쪽.

⁴⁵⁾ 李章熙, 앞의 글, 452쪽.

^{46) 《}承政院日記》 54책, 인조 14년 12월 21일.

가 있었다. 이미 언급한바 서얼과 공사천은 참급무과에서 사족·양인과는 달리 別試를 치뤄야 許科하는 差待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통을 통해 유직자가되었더라도 서반 종6품직의 主簿 이상을 주지 않는 군공자 한품서용이 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종공신과 전망자의 자손은 충장위·충익위·충찬위 입속이 가능하였더라도 3대 이후에는 양역에 편입되어야 했으므로지속적인 신분상승이 법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공논상은 전란을 극복하고 군사의 사기를 높이려는 비상시 구급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전란이 종식되자 군공논상에 수반하는 제도적 신분상승 조처도일단락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군공논상을 통한 신분의 혼효는 양란 이후 진행되어 가는 신분제 동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란중의 제도적 조처에 의한 신분상승의 길은 군공뿐만 아니라 納粟에 의해서도 가능하였다.47) 임란을 통해 재정적 타격을 받은 조선왕조는 특히 군량미 조달을 위한 납속을 통해 면천·면역·허통·補官의 길을 넓게 열었으며, 그것을 통해 서얼·향리·有役人·公私賤 등도 신분상승을 도모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선조 25년(1592) 5월부터 납속이 논의되었으나,48) 納粟論賞이 제도적으로 규정된 것은 선조 25년 12월에 경기·황해도에서 실시된〈京畿黃海調度御史別事目〉이 제정됨으로써 비롯되었다.49) 이 때에는 납속한 사람은 물론 그것을 수송한 사람에 대해서도 논상이 실시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확인되는 本官守令·資窮者·前銜·鄕所 등은 實職·影職을 제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이하의 신분인 서얼·향리·유역인· 공사천은 許通·己身免役·從良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서얼은 물

⁴⁷⁾ 임란중의 納粟論賞에 관하여는 주로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田炳喆,〈壬辰倭亂期 納栗政策〉(《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論叢 朝鮮時代史研究》, 1989).

平木實, 앞의 책.

李章熙, 앞의 글.

^{48) 《}宣祖實錄》권 26, 선조 25년 5월 정묘.

^{49) 〈}宣祖實錄〉권 33, 선조 25년 12월 을묘.

론 향리·유역양인과 공사천도 면역·종양됨으로써 일단 신분상승이 가능하 였던 것이다.

〈표 1〉 경기·황해 조도어사별사목

신분 날속량	100석 이상	300석 이상	500석 이상	700석 이상
本官守令	加資	陞敍	超敍	超2階陞敍
資窮者	代加	代加2資	子壻中參下職除授	
前銜	加2資		復職	參下影職
鄕所以下	6品影職		4品影職	
庶孼	5년면역	10년면역	許通	
郷吏・有役人	5년면역	10년면역	自身免役	
公私賤	5년면역	10년면역	從良	

〈표 2〉 납속사목

납속량신분	향 리	사 족	元有職者	資窮者	서 얼
3석	3년免役逐加1년	참하영직			
L 74					兼司僕・羽林衛
5석					咸西班軍職6品
8석		6품영직			
10석			매10석陞品		
15석	己身免役				허통
20석		동반9품			幷前所生
25석		동반8품			
30석	免鄉授參下影職	동반7품		陞당상	참하영직
40석	其2子免役參下影職	동반6품			
45석	相當軍職				6품영직
50석		동반5품			5품영직
60석		동반종4품			동반9품
80석	東班實職	동반정4품			동반8품
90석		동반종3품			동반7품
100석		동반정3품			동반7품

그러나 선조 26년 2월에는 개정된〈納粟事目〉을 제정하였는데,50)〈표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족과 향리·서얼에 한정된 納粟補官을 규정하고

^{50) 《}宣祖實錄》 권 35, 선조 26년 2월 신축.

有役良人과 공사천을 제외하고 있다. 양반인 사족·원유직자·자궁자는 최하영직에서 최고 동반 3품까지 허용하고, 향리는 3년 면역에서 동반 실직까지, 서얼은 겸사복·우림위 혹은 서반군직 6품에서 동반 6품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양인과 공사천은 제외되어 있다. 양인의 납속은 군액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사천의 면천은 오히려 군액또는 稅源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신분변동에 따르는 문제만 없다면 금지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선조 26년 2월에 사간원에서 공사천의 면천종양은 당초의 사목대로 허용하자고 건의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져51) '別事目'에는 있으나 '納粟事目'에 빠져 있던 납속면천이 결국 10일 뒤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52) 15석 정도로 從良된 것으로 보인다.53) 또한 납속사목은 별사목보다 납속량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이로 볼 때 향리와 서얼도 어느 정도의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동반실직에 제수될 수 있었다. 향리와 서얼은 16세기이래 사족의 배타적 차별화 과정에서 족단적으로 밀려난 계층이었다. 그러나임란중의 납속보관을 통해서 그들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게 된 셈이다.

임란중에 납속을 통한 비양반층의 신분적 상승은 서얼이나 향리에 한정되지 않았다. 군역의 대상인 양인층도 제도적으로는 납속사목 이후 납속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교생이나 한량을 의탁하거나 冒名하여 실제로 납속에 응하고 訓導나 影職을 받은 자가 매우 많았으며,54) 공사천의 경우도 재력만 있으면 일단 면천종양하였다가 다시 상층 신분으로 오를 수 있었다. 임란기 납속이 신분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비양반층에 대한 실직 제수는 당시 사족 중심 신분질서하에서 명분론적 사회 인식이 이를 인정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또 납속면역의 혜택도 별사목과 납속사목에서 3년 면역, 5년 면역, 10년 면역, 기신면역의 규정이 말해주듯이 자손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51) 《}宣祖實錄》 권 35, 선조 26년 2월 신해.

⁵²⁾ 田炳喆, 앞의 글, 515~516쪽.

⁵³⁾ 平木實, 앞의 책, 168쪽.

^{54) 《}宣祖實錄》 권 38, 선조 26년 5월 을해.

아니라 비양반층이 納粟品職을 취득했더라도 그 다음 세대인 아들은 취득이전의 신분·직역을 세습하고 있으므로 양반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55) 따라서 비양반 납속품직자들은 그 혜택이 당대에 그쳐 납속만으로는 신분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임란기 납속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었던 신분변동은 비양반층의 양반화보다는 천인의 양인화라는 면이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56)

임란중의 납속논상을 통한 신분상승 조처는 전란이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선조 26년 2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었던 납속정책은 휴전이성립된 뒤에도 飢民의 구제를 위해 다시 확대실시되었다가 정유재란이 끝나가는 선조 31년에 와서는 대체로 완화·정리단계로 들어갔다. 즉 납속인들에게 주었던 특전을 회수하고 募粟官을 줄여 나갔다. 그러다가 선조 33년 10월에는 드디어 미발급 空名告身을 수거하여 태우도록 한 결과 1만장 이상의許通·免賤·免役等帖을 소각함으로써 임란중의 납속정책이 일단락되었던 것이다.57) 그러나 임란이 종식된 이후에도 전후 복구나 진휼을 위해 발급하던 공명첩은 효종대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현종대 이후에도 납속책의 일환으로 계속 발급됨으로써 신분제 동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상 군공에 의한 논상과 원종공신 녹훈, 납속논상 등 일련의 제도적 조처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합법적 신분상승을 가능하게 하였고, 유공·유음의 혜택이 전망자 및 원종공신의 자손들에게 3대까지 미침으로써 한정된 범위내에서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신분의 혼효현상도 초래하였다. 그러나 전란중의 제도적 신분상승 조처에 의한 신분의 혼효는 전란의 종식과 함께 더 이상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그것은 전란이 종식되자 전란으로 인한 군공 및 납속 논상이 일단락되었고 그에 수반하던 제도적 신분상승 조처도 일단락됨으로써 이로 인한 하층민의 신분상승의 길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⁵⁵⁾ 李俊九,〈朝鮮後期 兩班身分 移動에 관한 研究(上)-丹城帳籍을 中心으로-〉 (《歷史學報》96, 1982), 151~152等.

⁵⁶⁾ 田炳喆, 앞의 글, 540쪽.

⁵⁷⁾ 田炳喆, 위의 글, 519~520쪽.

그러나 전쟁의 종식과 함께 제도적 신분상승 조처가 일단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진행되어 오던 신분의 혼효는 전란이 종식된 이후에도 신분제의 동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란을 치르면서 인구의 지역적 이동과 노비의 도망, 막대한 인명의 피해와 면역 인구의 증가 등은 民丁 파악의 곤란과 양역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양역 인구의 감소는 양역 담당자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양역의 과중한 부담은 有役下層民의 피역 시도를 유도하였다. 이는 결국 신분제의 혼효 내지 동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전란을 통해 혼효되었던 신분질서는 號牌法 실시, 奴婢推刷 등 국가의 대책과 아울러 재지사족의 향혼사회 재건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재정비되어 갔다. 광해군 때의 호패법은 외적에 대비하기 위한 軍籍의 정비를 목적으로 광해군 2년(1610) 9월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하다가 광해군 4년 7월에 혁파되었다.58) 그러나 反正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인조 초기에는 반정의 합리화를 위한 현시적 욕구와 亂政의 극복이라는 실제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개혁의 기운이 넘쳐 흘렀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實錄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訟事를 다투듯이 분분하게 개혁을 위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며, 이 가운데 호패법을 先行하기로 인조 3년(1625) 7월 20일에 의논이 모아졌다. 이러한 결정을 거쳐 인조 3년 7월 28일에는 號牌事目이 작성되었고 이는 그 이듬해인 인조 4년 정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민정의 총수 및 役의 유무의 파악과 闕額을 보충하는 것이 호패법 시행의 주된 목적인 만큼 이를 위하여는 먼저 신분직역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호패사목에는 품관으로부터 공사천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직역에 따라 역의 유무를 밝힐 수 있는 각양 호패의 佩持를 규정하고 있다.59) 이호패법은 서얼 및 하층민의 노골적인 신분노출에 대한 반발 때문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그 이듬해에 폐지되었지만, 임란을 통해 혼

⁵⁸⁾ 李光麟, 〈號弊法-그 實施變遷을 中心으로-〉(《白樂濬博士還甲紀念 國學論叢》, 1955), 586~595等.

⁵⁹⁾ 李俊九,〈朝鮮後期의'業儒'・'業武'와 그 地位〉(《震檀學報》60, 1985), 35~37쪽.

효되었던 신분은 호패법을 통해 일단 재정리되었으며, 그 이후 이를 바탕으로 신분직역제가 운용되어 갔다.

또한 양란으로 인해 나타난 신분의 혼효는 효종 6년(1655)의 노비추쇄를통해서도 재정비되어 갔다. 추쇄도감의 설치 목적은 노비에게서 신공을 거두어 재정에 보충하기 위해 먼저 노비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에서 나왔다.60) 그러나〈推刷事目〉과〈備忘記〉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隱漏奴婢를 밝혀내는동시에 賤籍에 속해 있다가 冒良하여 司馬에 등과한 자의 자식에 대한 양인처우, 노비의 군공・납속・納銀으로 인한 면천・면역・免責을 허가한 公文이없는 자는 還賤시킨다든지, 代口贖身에 대하여 연한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61)등은 양란으로 신분이 혼효되어 있었던 하층민에 대한 신분제의 재정비를수반하고 있다. 이같은 노비추쇄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더라도 양란을통해 나타난 신분의 혼효는 노비추쇄를 통해서도 일단 법제적으로 재정리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지사족의 향촌사회 재건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도 신분질서는 재정비되어 갔다. 재지사족은 난 후 이완된 신분질서를 재정비, 강화하고 동요된 향촌사회를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 향촌지배 조직과 규약을 복구 또는 새로이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직과 규약을 통해 재지사족 중심의 상하 신분질서와 지주·전호제의 안정적 유지 등이 추구되었으며,62) 종전의 족계나동계에 비해 새로 재정된 동규·동약에는 특히 하층민에 대한 규제조항이 강화되었다.63)

앞서 언급한 연기지방〈일향입법〉에 대한 조목별 검토를 통해 볼 때, 17세기 연기지방의 향촌사회는 '유향' 중심의 신분질서를 구상하고 그 밑에 한산층, 상한층, 천민층이 설정되고 있으며, 그러한 등급에 따라 하급계층이 상

⁶⁰⁾ 平木實, 앞의 책, 93~94쪽.

⁶¹⁾ 全炯澤,《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一潮閣, 1989), 127~132\.

⁶²⁾ 金仁杰,〈조선후기 鄕村社會 統制策의 위기-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震檀學報》58, 1984), 141쪽.

鄭震英, 앞의 글(1989), 106~107쪽.

⁶³⁾ 韓相權, 앞의 글, 61쪽.

李樹健,〈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朝社會史의 一研究〉(《韓國史學》9, 1987), 85쪽.

급계층을 침욕하거나 분외의 직임을 맡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이러한 향촌민의 분한 등급과 그에 따른 규제는 재지사족이 전란 후 혼효된 향촌사회 신분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한편 양란 이후 농업생산력의 향상, 상공업의 발전 등에 따라 피지배층의 자각과 사회경제적 기반의 확충은 유교적 신분제도하에서 강요되어 온 기득신분에의 속박에 대한 불만을 싹트게 하였고, 그것은 결국 신분을 상향이동시키려는 욕구로 표면화되었다. 이에는 물론 양란을 치르면서 인구의 지역적 이동과 군공·납속에 의한 제도적 신분상승 등으로 이미 신분계층의 혼효가 심화되었음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양역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야기된 유역하층민의 피역 시도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각 신분의 존재 양상

조선 중기의 각 신분은 향촌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조선왕조는 身分職役制를 포기한 적이 없이 존속하여 왔다. 조선시대의각 개인(남자)은 원칙적으로 屬處가 있어야 했고, 이 속처를 직역으로 하였으며, 신분적 지위에 걸맞는 직역이 제도권내에서 결정되거나 이를 확보하려고하였는데, 직역에 따른 권리·의무상의 차등이 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신분적 지위는 직역의 여하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소속한 직역의 신분개념이 곧 개인과 집단의 법제적·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역은 신분을 판정하는 유력한수단의 하나이므로, 帳籍에 기재된 직역을 통하여 신분구조를 이해할 수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존하고 있는《山陰帳籍》과《丹城帳籍》을 통하여 조선 중기 단성지역의 각 신분의 구성비를 보면〈표 3〉과 같다.⁶⁴⁾

⁶⁴⁾ 李俊九, 앞의 책, 212쪽의 〈표 7-1〉참조.

〈표 3〉 조선 중기 단성현의 호주 신분구성비

단위:%(호주수)

						<u> </u>	1 / 5 (- 1 / /
시기	신분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직역無記	계
선조	39년(1606)	43.5(93)	3.7(8)	29.4(63)	17.8(38)	5.6(12)	100.0(214)
숙종	4년(1678)	13.1(277)	4.4(94)	35.1(743)	46.8(991)	0.5(11)	99.0(2116)
숙종	43년(1717)	18.6(466)	8.6(216)	45.6(1145)	26.1(656)	1.1(28)	100.0(2511)

- 1) 선조 39년 호적은 《山陰帳籍》 6개 里 가운데 法勿也里의 호적이 파손되어 파악하지 못하였다.
- 2) 직역無記에는 일부 판독불명도 포함된 수치이다.

우선 각 신분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표 3〉의 수치가 시사하고 있는 바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선조 39년 호적에서 양반호가 전체의 43.5%를, 노비호가 17.8%를 각각 점하고 있어 그 구성비로볼 때 그 뒤의 式年호적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즉 선조 39년 호적에서 양반호와 노비호의 구성비는 그로부터 72년이 지난 숙종 4년 호적에서의 양반호가 13.1%를, 노비호가 46.8%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 현상과 크게 비교된다. 이는 그 동안에 양반호의 격감과 노비호의 격증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선조 39년 장적에서 양반호의 구성비가 높고 노비호의 구성비가 낮은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으리라 여겨진다. 그것은 우선 선조 39년의《산음장적》6개里 가운데 같은 지역의 후대 호적과 비교하면 양반호가 적고 상민호가 가장 많았던 法勿也里의 호적이 파손되어 파악이 전혀 불가능한데, 이것이 양반호의 상대적 구성비를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 선조 39년의 양반호 가운데 군공및 납속에 의한 품직취득자의 구성비(17.3%)가 숙종 4년(1%)·숙종 43년(1.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과, 전란 과정에서 타처로 피신하였던 인구중족적·경제적 기반을 이곳에 두고 있었던 양반은 전후 본거지로 빨리 귀환한 반면에 그렇지 못한 常・賤은 서서히 귀환한 점 등이 양반호의 상대적구성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65)

⁶⁵⁾ 李俊九, 위의 책, 211~213쪽.

이처럼 불완전한 장적의 파악과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하였던 지역적 특성 등이 반영된 현상으로 인하여 선조 39년 호적에서는 양반호의 구성비가 높고 노비호의 구성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과 〈표 4〉에서 확인되는 광해군 원년(1609) 울산지역의 각 신분구성비를 감안한다면 임란 직후인 17세기 초반 단성지역의 신분구성비를 전국적인 보편현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표 4〉 조선 중기 각 지역의 호주 신분구성비

단위:%(호주수)

신분 구분	양반	상민(양인)	노비	계
蔚山戶籍(1609년)	10.5(115)	62.0(683)	27.5(303)	100.0(1,101)
北部戶籍(1663년)	16.6(113)	30.0(205)	53.3(363)	99.9(681)
金化戶籍(1672년)	14.2(34)	75.0(179)	10.8(25)	100.0(238)
大丘戶籍(1690년)	9.2(290)	53.7(1,694)	37.1(1,172)	100.0(3,156)

한편 임란 이후 격심했던 호구의 이동이 점차 안정되어 가던 17세기 후반의 경우, 단성지역의 신분구성비(1678년)는 〈표 3〉에서와 같이 양반이 13.1%, 중인이 4.4%, 상민이 35.1%, 노비가 46.8%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각 신분의 구성비는 〈표 4〉를 통해서 확인되는바,66) 서울 북부지역·금화지역 대구지역 등과 비교할 때, 특히 금화지역이 양인의 구성비(75.0%)가 대단히 높고노비의 구성비(10.8%)가 대단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7세기후반의 신분별 구성양상도 각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⁶⁶⁾ 본 표는 아래의 글 참조.

韓榮國,〈朝鮮 中葉의 奴婢結婚樣態(上·下)〉(《歷史學報》75·76, 77, 1977, 1978), 183~185쪽.

E. W. Wagner, 〈17세기 朝鮮의 社會階層-1663년의 서울 北部戸籍을 중심으로→〉(《朝鮮身分史研究》,梨花女大史學科研究室 編譯,法文社,1987),180~189쪽.

S. Shin, 〈17세기 金化地域의 社會構造〉(《朝鮮身分史研究》), 160쪽.

四方博、〈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朝鮮經濟の研究》3,京城帝國大學 法學論集 10,1938), 신분별 戸數를 참조하여 만든 표이다.

이는 물론 신분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고, 시기의 차이,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의 차이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나타난 수치만을 참조할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좌우간 〈표 3〉과〈표 4〉에서 확인되는 각 신분의 구성비 가운데 시기적·지역적 특수성이 강하게 반영된 단성지역(1606년)과 금화지역(1672년)을 제외한다면, 17세기의 각 신분은 대체로 양반호가 9.2%~16.6%, 중인호가 3.7%~4.4%, 상민호가 30.0%~62.0%, 노비호가 27.5%~53.3%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던 양반·중인·상민·노비 등 각 신분은 그들이 향촌사회에서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었을까.

우선 재지사족의 존재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재지사족은 科學, 蔭敍, 代加의 혜택을 입어 實職 또는 散職을 얻음으로써 관직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중에는 無職・無蔭의 양반인 幼學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조선 중기의 향안 등재자의 직역별 통계에서 실직・산직과 有蔭인 忠義・忠贊・忠順衛 등 직역에 비해 무음・무직인 유학(學生)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즉 安東향안 등재자의 경우 유학이 선조 22년(1589)에는 전체의 61.6%, 숙종 33년(1707)에는 전체의 75.2%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尚州향안 등재자의경우 유학이 16세기에는 전체의 43.8%, 17세기에는 전체의 76.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67) 또한 1621년부터 1707년까지 작성된 丹城향안 등재자의 경우유학(149)이 전체(303)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불과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유학을 직역으로 가진 자들이등재되어 있다.68) 이처럼 재지사족 가운데는 무음・무직의 유학과 微官, 散職, 生進의 직함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해당 읍의 향안에 등재하여 재지사족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음으로써 그들의 신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각 고을의 전직관료·생원·진사·유학 등을 중심으로 한 재지사족들은 그들이 향촌지배 조직과 규약을 통하여 신분·계급적 이해를 관철시켜 나갔

⁶⁷⁾ 李樹健, 앞의 글, 15쪽의 〈表 2〉와 16쪽의 〈表 3〉 참조.

⁶⁸⁾ 가와시마 후지야, 〈「丹城鄕案」에 대하여〉(《淸溪史學》4, 1987), 203쪽의 〈표 4〉참조.

으며, 피지배층에 대해 배타적으로 제특권을 누리면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은 留鄕所・鄕案・鄕約・洞約・洞契 등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는 재지사족들이 군현 단위에서 관권과의 일정한 양보와 타협 아래 향권을 장악하고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조직과 규약을 통해 그들은 신분적인 상하관계와 경제적인 지주・전호제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부세운영에서 양반으로서의 신분적인 특권의 확보라는 사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원) 또한 서원과 향교는 성리학을 보급함으로써 지배이념을 전파하였고 아울러 사족이 자연스럽게 결집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족의 향혼지배를 보완하였는데, 이의교육적 기능과 族契에서의 자제교육의 강조를 통해 재지사족들은 향혼지배층으로서의 위치를 재생산하고 있었다.(인)

그리고 재지사족들은 조상 전래의 토지와 노비, 가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에다 매득·개간·증여 등의 수단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었다. 그들의 田民(토지와 노비) 증식 방법은 다양한 형태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첫째로 父·母·妻邊에서 전래되는, 즉 상속과 분배 및 기타 친척으로부터 受贖하는 경우, 둘째로 새 터전(卜居)을 잡거나 개간에 의한 새 가사와 전답의 확보, 셋째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매득하거나 증식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형태였다.71) 특히 그들은 그들 소유의 노비들을 良賤交婚시켜 노비를 증식시키는 것도 노비증식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였다.

재지사족들은 이러한 형태에 의해 취득되어진 토지와 노비를 경영하면서 대체로 중소지주로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나 한미한 처지의 재지 사족도 많았다. 그들이 보유한 토지와 노비의 규모를 보면 다양하다. 16세기 의 分財記에서 확인되는 그들의 토지보유 규모는 최대 2,312두락에 이르기까

⁶⁹⁾ 金仁杰, 앞의 글(1984), 141쪽.

韓相權, 앞의 글(1984), 66쪽.

鄭震英, 〈16·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성격〉(《民族文化論叢》10, 1989), 107쪽.

⁷⁰⁾ 金武鎭, 〈조선중기 士族層의 동향과 鄕約의 성격〉(《韓國史研究》 55, 1986), 23쪽.

⁷¹⁾ 李樹健, 앞의 글(1987), 65쪽.

^{----,〈}嶺南士林派의 在地的 基盤〉(《新羅伽倻文化》12, 1981), 53\.

지 그 규모가 다양한데, 그 적은 규모에서조차도 양인이나 노비들보다 월등한 크기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노비보유 규모에 있어서도 757미를 보유한 월등한 재지사족의 경우도 있었지만,72 17세기《山陰帳籍》에 나타난 양반의 노비보유는 영세한 규모이다. 즉 노비를 보유한 양반 가운데 55%가 1~2구의 미소한 규모였고 86%가 5구 이하의 규모였다. 2%의 양반만이 21구 이상의 보유규모를 보이고 있었다.73 이와 같이 같은 재지사족의 위치에 있더라도 단지 몇 명의 노비만을 보유한 한미한 처지의 재지사족도 많았던 것이다.

재지사족들이 보유한 토지와 노비는 대규모의 경우 전국 각처에 분포되어 있었으나, 주로 거주지를 중심하여 부근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혼인으로 인한 妻邊·外邊의 전민과 買得·別得·墓所·移居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효율적인 토지경영을 위해 外地田畓을 점차 거주지 중심으로 집적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17세기부터는 부재지주에서 재지지주로 전환되어 갔다. 또한 그들은 17세기 전반까지는 자녀균분을 원칙으로 하여 토지와 노비를 상속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자녀에게 분할주의를 지켜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74)

그들의 거주지는 邑治의 외곽지대에 있었다. 그들은 川防과 이앙법이 보급되는 16세기부터 川流와 계곡을 따라 사족집거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17세기 전반까지는 자녀균분상속제와 자녀윤회봉사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촌락주민의 구성도 자연히 異姓集居村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17세기 후반부터 자녀균분제의 해소와 함께 점차 부계 중심의 동성동본이집거하는 동족부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75) 그들의 주거형태는 豪大한 瓦家를 중심으로 주변에 奴家들이 밀집해 있는 소집락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대규모의 노비와 토지의 보유는 田宅을 단위구성으로 하여 분산적으로

⁷²⁾ 李榮薰,〈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前期 奴婢의 經濟的 性格〉(《韓國史學》9, 1987), 107~108等.

⁷³⁾ 崔在錫、〈朝鮮前期의 家族形態〉(《震檀學報》37, 1974), 145쪽의〈表 6〉 참조.

⁷⁴⁾ 李樹健, 앞의 글(1987), 70~71쪽.

^{——,〈}朝鮮前期의 社會移動과 相續制度〉(《歷史學報》129, 1991), 50~57쪽. 李榮薫, 앞의 글, 124~129쪽.

⁷⁵⁾ 李樹健、〈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朝社會史의 一研究〉(《韓國史學》9, 1987), 82~83等.

배치된 형태를 취하였는데, 그들의 가사와 토지가 결합된 전택으로서의 존재 형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노비를 포섭하였고, 노비의 노동력을 기초 로 직영적 농업경영을 영위하였으며, 또 直營分 이외의 토지는 그 노비를 포 함한 소작농들에게 소작지로 대여하였다.76) 이러한 각 전택은 主家의 직영적 농업경영과 여분의 토지를 소작지로 방출하는 지주제의 결합으로 공통의 구 조를 지니고 있었다.

재지사족들은 身分內婚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양반사족의 신분내혼은 17세기의 장적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즉 당시 부녀자의 호칭 가운데 '氏'호 칭은 양반부녀자를 지칭하였다. 그런데 부녀자의 호칭은 夫職(남편)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친가의 姓에 결합되어 '親父'의 신분과 庶孽從母의 원칙에 준하였다. 그러므로 양반의 처가 '씨'를 호칭한다는 것은 신분내혼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반의 처가 '씨'를 호칭한 비율을 보면, 선조 39년(1606)의 《산음장적》에는 89.1%, 숙종 4년(1678)의 《단성장적》에는 94.3%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77) 이는 곧 양반의 신분내혼이 보편화된 사회였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음으로 사족의 배타적 차별화 과정에서 형성된 중인층은 '庶族有職者'・ '庶孽'・'鄕孫'・'技術官'・'錄事'・'閑散人' 등이었다. 그러나 향춘사회에 있어 서의 중인층으로는 고급 기술관과 녹사가 제외된 서족유직자・한산인・서얼 ・향리 등이 주로 존재하고 있었다. 서족의 유직자는 校生・忠贊衛・別侍衛 와 같은 부류들이었으며, 한산인은 직역이 없는 閑遊者로서 한량과 같은 의 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들 교생・충찬위・별시위・한량 이외에도 서족의 유직자로는 忠義衛를 제외한 忠順衛・忠翊衛・忠壯衛・定虜衛 등 衛屬과 武 學・(常)出身・軍官 등이 17세기의 장적상에서 확인된다.

17세기 이후 서족의 유직자 또는 한산층 가운데, 교생은 주로 평민의 상 층부·서얼·납속수첩자들이 각각 교생이 되고 있었다.78) 그리고 충순위는 유음자손이 입속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상한 출신 및 그 子枝가 주로 입속

⁷⁶⁾ 李榮薰, 앞의 글, 152쪽.

⁷⁷⁾ 李俊九, 앞의 책, 235~236쪽.

⁷⁸⁾ 尹熙勉,《朝鮮後期 鄉校研究》(一潮閣, 1990), 74\.

하였고, 충찬위는 주로 원종공신의 支派 내지 庶派가, 충익위는 주로 원종공 신 및 그 長派가, 충장위는 주로 戰亡者 및 납속수첩자가 각각 입속하였으 며, 정로위는 주로 한량이 입속하거나 正兵을 시취하여 升屬시켰다. 무학은 원래 양반의 자제들이 입속하였으나 인조대에는 落講校生을 降屬시키기도 하였으며, 주로 中人輩가 입속하다가 상민층도 모속하였다. 한량은 본래 군 안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입록하지 않은 漏籍閑遊者로서 弓術과 같은 무예를 익히는 무리였으며, 武科擧子들이 과시에서 한량을 錄名하였는데 그 수가 인 조・효종대에는 2천이 넘었다.79) 군관은 한량・납속수첩자・千摠・把摠・出 身 등이 兵房軍官·禮房軍官이 되고 있었다.80) 이러한 직역을 가진 자들 가 운데는 원래 사족인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중인층이었다. 그들은 有蔭이거나 아니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그들에게 알맞는 직역을 제도권내에서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곧 중인직역이었으며 넓은 의미의 한산층이기 도 하였다. 이러한 한산층에 대해서 17세기 중엽의 鄕規는 관속들과 함께 재 지사족들의 향촌사회 지배권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지목하고 이 를 규제하는 조목들을 설정하고 있었으며,81) 이미 그들은 16세기 후반부터 향안입록에서 배제되거나 會時의 좌차에서 차별을 받거나 향약적 지배기구 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중인직역을 확보한 자들은 향촌사회에서 일시적 면역 및 歇役 으로 한유하면서 존재하고 있었다. 교생은 군역을 면제받는 대신 향교나 군 현에서 각종의 일을 담당해야 하는 일종의 역담당자였으며, 校生考講에서 再 落하면 定軍하였던 것이다.82) 충익위・충장위・업유・업무・무학 등은 인조 대에 規外免軍者였으며、83) 효종년간에도 한량・출신・업무・무학 등은 身役 이 없는 직역으로 파악되었다.84) 그러나 현종대에는 충순위 · 충익위 · 충찬위

⁷⁹⁾ 충순위·충찬위·충익위·충장위·무학·한량·업유·업무 등 직역에 대해서는 李俊九, 앞의 책 참조.

⁸⁰⁾ 李勛相、〈朝鮮後期 吏胥集團과 武任集團의 組織運營과 그 特性-全羅道 南原의 各種 先生案->(《韓國學論集》17, 啓明大 韓國學研究院, 1990)「附錄」B, 《軍官 廳先生案》 참조.

⁸¹⁾ 김현영, 앞의 글, 143~144쪽.

⁸²⁾ 尹熙勉, 앞의 책, 60 · 139쪽.

^{83) 《}仁祖實錄》 권 19, 인조 6년 12월 신묘.

·정로위·무학 등 諸衛의 역이 종년토록 한유하고 겨우 正木 2필만을 부담하여 실역을 부담하는 水·陸·砲保에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85)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한때 군역이 면제되기도 하였으나 혈역을 부담하면서 한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산 즉 한량은 그 소수가 17세기 말부터 호적에 입록되기로 하였지만, 본래 役賦課의 기본대장인 군안과 호적에 입록하지 않고 無役閑遊하고 있던 부류였고, 그 수 또한 대단히 많았다. 이 때문에 양역 부족의 한 요인이 되었던 만큼, 조정은 이를 막기위하여 한량을 양역에 충정하라는 원칙적인 명령을 내리곤 하였다. 이로 인해 한량들이 전혀 속처없이 한유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들은 군관에 투속하였는데, 당시의 군관은 1년에 한두 차례 관청에 얼굴을 내비치고는 종신토록 군역을 면제받은 혈역이었다.86) 이와 같은 직역들은 그 역이 혈역이었기 때문에 有役下層民들의 모속을 유도하게 되었고, 따라서 하층민들의 신분상승의 階梯的 역할도 하고 있었다.

서얼은 장적상에서 庶子・良妾子・許通 등으로 등재되다가 원래 양반직역의 하나였던 業儒・業武가 숙종 22년부터 서얼의 문무를 지칭하는 직역으로 규정되면서 업유・업무로 등재하고 있었다.87) 서얼도 사족 지배하의 향혼사회에 있어서 서족의 유직자와 마찬가지로 향안입록에서 배제되거나 회시의 좌차에서 순수 사족과 변별되었고, 洞案 작성시 사족안인 上契案에 기재되더라도 嫡子와는 달리 南行으로 구별되고 있었으며,88) 향교의 額內校生으로도 입학하고 있었으나 東齋儒生과는 달리 西齋校生이라 하여 사족과 구별되고 있었다.89) 한편 허통한 서얼은 문무과 및 소과에도 응시할 수 있었다.90) 임진왜란 이후 허통한 서얼이 과거에 응시할 때에는 '허통'을 錄名해야 하였으나, 숙종 22년(1696)부터 완전 허통이 이루어지면서 문과 및 소과에서는 '업

^{84) 《}備邊司謄錄》 18책, 효종 7년 9월 2일.

^{85) 《}承政院日記》 186책, 현종 5년 11월 8일.

⁸⁶⁾ 李俊九, 앞의 글(1989), 162~165쪽.

⁸⁷⁾ 李俊九, 앞의 글(1985), 참조.

⁸⁸⁾ 金仁杰, 앞의 글(1984), 121쪽.

⁸⁹⁾ 尹熙勉, 앞의 책, 47쪽.

⁹⁰⁾ 裵在弘, 〈조선후기 서얼 과거합격자의 成分과 官歷〉(《朝鮮史研究》2, 1993), 190~192쪽.

유'로, 무과에서는 '업무'로 녹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서얼의 직역인 업유·업무는 군역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한유하였기 때문에 유역하층민들의 피역을 위한 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鄕吏는《단성장적》각 式年 말미의 직역통계에서 戶長·記官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貢生·醫生·律生 등도 상급 관속에 포함된다.의)호장과 기관층을 세습하면서 한 읍의 향리세계를 영도해 갔던 유력한 재지이족들은 사족과 더불어 16세기 초의 향안에도 참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 이후 사족 지배체제하의 향안에서는 완전 배제되고 있었으며, 각종 향규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들은 吏族案인 壇案과 집무소인 邑司를 중심으로作廳・將官廳・使令廳 등 다양한 조직과 체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각 房任別로 읍리들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었으며, 上計吏・貢吏(進捧吏)・京邸吏・營吏 등의 조직을 통해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향리집단이나 武任집단의 퇴임자들로 구성된 養老堂이 있었는데, 그들은 관속의인사에 관여하거나 군현 단위의 제례 및 신앙과 관련한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것에는 社稷壇이나 城隍堂, 임란 이후 숭배대상이 된 關王廟등의 제례집행 등이 있다. 이는 읍치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동시에 관속을 구심점으로 운영된 제례였다.

이와 같이 서족의 유직자와 서얼, 상급 관속으로서의 향리와 무임을 포함한 중인층이 각 신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단성현의 경우 〈표 3〉과 같이 선조 39년(1606)에 3.7%, 숙종 4년(1678)에 4.4%, 숙종 43년에 8.6%로 점차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상민층은 장적상에 있어서 각종의 軍兵·徭役·保人·匠人·下級衙前·驛屬人과 기타 役名이 없는 良人·居士·病人 등으로 나타나 있다.

⁹¹⁾ 향리·武任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鄭震英, 앞의 글(1989).

李勛相,《朝鮮後期의 鄉吏》(一潮閣, 1990).

^{---,} 앞의 글.

李羲權,〈朝鮮後期 邑吏의 地方統治 行政機能〉(《全北史學》15, 1992).

이러한 직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상민층은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로든 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 상민층은 비록 역명이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능력에 따라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농민들이었다. 이는 16세기 장인의 경우 전답을 放賣하거나 品官과 土民에게 전지를 侵占당했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92)

그들 상민층은 국가의 각종 수취 대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전세, 양인 장정의 인신을 대상으로 하는 군역,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하는 요역, 다시 토지·호구의 복합 기준에다 分定하는 호역으로서의 공물, 그리고 원래는 농민에 대한 진휼제도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강제적 고리대로 변질해 간 환곡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16세기 이래로 토호의 겸병과고리대 운영, 그리고 전세를 제외한 군역·요역·공물 등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어 갔고, 군현별로 定額制에 따라 야기되는 족정·인정이라는 분외의 수탈 등이 상민층에게 집중 부과되면서 상민층은 과중한 국역부담을 견디지못하여 점차 파산해 갔다. 이로 인해 가난한 상민들은 '富家의 長利'로 연명하다가 전답으로 상환하거나 放賣하기도 했으며 전호·협호가 되거나 노비화의 길을 걷기도 하는 한편 피역·유망·代立 등의 저항형태로 나타나기도하였다.93) 그래서 그들은 노비와 함께 그들의 안정을 바탕으로 존립하고 있던 재지사족들에 의해 교화와 부세운영의 직접적인 지배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상민들은 16세기 이래 임란 이후에도 파산과 저항, 그리고 유망이급증하는 등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移居·移入의 빈도가 높아, 한 촌락에서 여러 대를 지속하며 머무를 정도의 안정된 주거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⁹⁴⁾ 그러나 상민층의 일부는 임란 후 황폐한 농토를 다시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복구했으며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방법을 개선하

⁹²⁾ 鄭震英, 〈16세기 郷村問題와 在地士族의 대응〉(《民族文化論叢》7, 1986), 109~110쪽.

⁹³⁾ 金泰永, 〈朝鮮時代 農民의 社會的 地位〉(《韓國史市民講座》6, 一潮閣, 1990), 63 ~68\.

鄭震英, 앞의 글(1986), 94쪽.

鄭勝謨,〈朝鮮後期 丹城縣의 身分構成比變化와 그 動因〉(《泰東古典研究》9, 1992), 93等.

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면서 부농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민의 경영자립도가 점차 높아지고 전호농민에 대한 신분적수탈이 어렵게 되어가면서 농가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그에 따라 장시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상업이 발달하였다. 상민들은 생산물의 일부를 장시에 내다 팔았는데, 쌀과 베가 거래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성장과 정부의 제도적 조처에 편승한 일부 상민층은 군공·납속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신분직역의 상승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도 상민층은 주로 신분내혼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婢'와의 양천 교혼도 하면서 존재하고 있었다. 《단성장적》에서 확인되는 상민층의 妻의 호칭은 선조 39년(1606)의 경우 '姓+氏'가 14.0%, '姓+召史'가 55.8%, '良女+名'이 14.0%, '婢+名'이 16.3%로 나타나 있다. 숙종 4년(1678)의 경우 '姓+召史'가 27.8%, '良女+姓+召史'가 16.5%, '良女+名'이 32.8%, '驛女+名'이 2.4%, '婢+名'이 20.4%로 나타나 있다. ⁹⁵⁾ 이것으로 볼 때 17세기의 상민층은 상민부녀자를 지칭하는 '소사' 내지 이름 앞에 '양녀'・'역녀' 등의 단서를 붙일 수 있는 상민층 집안과 신분내혼을 주로 행하고 있었으나 한편 '婢'와의 양천교혼도하면서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끝으로 노비는 일반적으로 그 소유주가 국가기관이면 公奴婢, 개인이면 私奴婢로 구별된다. 또한 공노비는 그 소속된 관청에 따라 寺奴婢・官奴婢・內奴婢・驛奴婢・校奴婢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노비는 그 존재형태에 따라率居노비와 外居노비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들 공사노비는 국가기관과 주가에 대한 부담 형태로써 직접 勞役에 종사하거나 身貢을 바치게 되어 있었다.96)

사노비는 종래 金錫亨으로 대표되는 통설이 그들의 존재형태를 단순히 주가와의 거주지역의 원근에 따라 솔거와 외거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노비의 존재형태를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주가의 家內使喚과 농업 경영에 사역되는 노비를 '솔거노비=仰役노비', 신공만을 바치는 노비를 '외거노비=納貢노비'로 파악하고 있다.97) 또한 주가에 직접 신역을 바치는 솔거노

⁹⁵⁾ 李俊九, 앞의 책, 〈附表 1〉・〈附表 3〉 참조.

⁹⁶⁾ 李成茂, 〈朝鮮時代 奴婢의 身分的 地位〉(《韓國史學》9, 1987), 216쪽.

비와 현물의 형태로 된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로 구분하고, 솔거노비를 다시 '가내사환노비'와 '率下노비'로 나누고 있는데,980 전자는 주로 주가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존재들이었으며, 후자는 주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주가의 농장경영에 주로 부역노동의 형태로 사역되는 존재들이었다.

이와 같이 근래에는 주가에 대한 부담형태인 사역과 납공의 여부에 따라 사노비의 존재형태를 솔거와 외거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솔거노 비는 그 주거형태에 있어서 주가에 포섭되거나 직접적으로 연접해 있는 형 태였음이 그 전형이었으며, 古文書에서 확인되는바 솔거노비의 비중이 16세 기에는 대개 73~86%의 압도적 다수였음에 비해 17세기에는 20~50%의 분 포를 보이고 있으며, 17세기 초(1609) 울산호적에서는 사노비의 52.5%가 솔거 노비였다. 그들 중 소수는 가족구성과 농업경영이 결여된 채 주가에 의한 각 종 사역과 직접적 급양하에 놓여 있었으나, 나머지 다수의 경우 독자적인 가 족구성과 소농민경영의 담당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외거노비는 그 대부분의 경우 주가의 토지경작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自己經理를 보유하면서 존재하 고 있었다. 그들은 정상적인 형태의 가족구성으로 존재하였으며, 또한 주가 의 것이 아닌 가사와 토지, 나아가 노비조차 소유하고 있었다. 주가의 토지 경작과 무관하게 존재했던 그들이 주가에 대해 부담했던 것은 노비신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신공과 선물이었다. 해남윤씨가문의 경우 布納인 元貢 은 공노비의 예에 따라 수납되었는데, 대체로 16세기에는 노와 비를 불문하 고 각각 常木 1필이었던 것이 16세기 말~17세기 초에는 노비 공히 平木 2 필로 수납되다가 17세기 중반에는 노 2필, 비 1필반으로, 17세기 말에는 다 시 무명(綿布) 2필로 환원되었다. 餘貢인 선물은 上典家의 자의대로 백미・참 깨·신발·미역·전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품목이 수취되었으며, 광해군 13 년(1621) 신공문기에는 放役된 老奴婢에게까지도 이 선물을 거둬들이고 있 었다.99)

⁹⁷⁾ 李榮薰, 앞의 글, 166쪽.

^{———,〈}朝鮮社會 率居·外居奴婢區分再考〉(《韓國近代經濟史研究의 成果》, 螢 雪出版社, 1989).

⁹⁸⁾ 李鎬澈, 《朝鮮前期農業經濟史》(한길사, 1986), 445쪽.

⁹⁹⁾ 安承俊、〈16~18세기 海南尹氏家門의 土地・奴婢所有實態와 經營〉(《清溪史學》

사노비 가운데 특히 사환노비는 상전의 사치노비로 존재하였다. 그들의역할은 상전의 일체 노동을 대신하는 것으로 祠堂屬, 墓直, 薪水, 炊事, 春精, 轎前奴, 편지나 서책 등 전달, 농기구 제작, 청소, 세탁, 유모, 여행·仕宦· 귀양시 수행, 婢妾, 매매·收貢 대행 등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幹奴·舍音 奴·首奴 등은 상전의 지시를 받아 집 안팎의 대소사를 총괄하고 있었다.1000 그리고 私奴는 원래 군역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束伍軍・縫燧軍・牙兵・禁衛保 등 帶役者들이 17세기 후반의 장적상에서 확인된다.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노비는 그 속처에 따라 부담형태가 달랐다. 공노비 가운데 內·寺노비는 정기적인 選上立役과 납공을 교대로 강요당했으며, 관 노비는 郡縣·鎭營 등 지방관아에, 역노비는 驛站에, 교노비는 향교에 각각 입역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노비의 선상 · 입역제는 16세기 이래 양역 과 마찬가지로 대립·납포제가 널리 시행되다가 17세기 이후 전면 폐지되었 다. 이에 따라 이제 그들은 국가에 대한 노동력 제공의 의무에서 벗어나 신 공납부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소속 官司의 有土와는 무관하 게 거주하고 있었다.101) 광해군 원년(1609)의 울산호적에서 확인되는바 공노 비는 그 구성비가 전체(3,226명)의 8.9%(287명)를 점하고 있다.102) 숙종 4년 (1678)의 《단성호적》에서 확인되는바 공노비는 그 구성비가 전체의 2.7%를 점하고 있으며, 가족수는 평균 3.46구였다. 공노비의 보충은 재생산과 이동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역의 납부에 따라 거주형태에 차이가 있었 다. 내ㆍ시노비는 납공노비였기 때문에 그들의 거주지는 제한이 없었다. 이 와는 달리 관노비는 邑司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교노비 와 역노비도 향교 부근과 역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속처 에 직접 입역하였던 데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103)

공사노비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상민들과 마찬가지로 조세를 부담

^{6, 1989).}

¹⁰⁰⁾ 金容晚、〈朝鮮時代 私奴婢의 存在形態 一研究〉(《民族文化論叢》11, 1990), 126 ~127等.

¹⁰¹⁾ 全炯澤,《朝鮮後期 奴婢身分研究》(一潮閣, 1989), 86~94쪽.

¹⁰²⁾ 韓榮國, 앞의 글(하), 115쪽.

¹⁰³⁾ 金相煥, 〈朝鮮後期 公奴婢의 身分變動〉(《慶北史學》12, 1989), 50쪽.

해야 했으며, 그들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었으나 자녀 없이 죽은 그들의 재산은 本主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사노비는 양천교 혼이 국법으로 금지되고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노비끼리만 혼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천교혼이 불법적으로 널리 유행하고 있었다. 16세기 경북지방의 분재기에서 확인되는 奴良妻 소생의 비중이 1/3~1/4에 달하는 수준이었다.104) 17세기 초(1609) 울산호적에서는 사노비의 경우 기혼인구의 60% 정도가, 공노비의 경우 기혼인구의 27% 정도가 양천교혼하고 있으며,105) 17세기말(1678) 단성호적에서는 公奴의 경우 32.9%가, 公婢의 경우 33.3%가 양천교혼하고 있었다.106) 사노비의 양천교혼율이 높았던 것은 교혼이 주가의 재산 중식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노비노동력을 확보하여 농업경영과 개간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며, 공노비는 원래 賤賤相婚의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양천교혼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李俊九〉

¹⁰⁴⁾ 李榮薰, 앞의 글, 107쪽.

¹⁰⁵⁾ 韓榮國, 앞의 글(하), 123쪽.

¹⁰⁶⁾ 金相煥, 앞의 글, 77쪽.